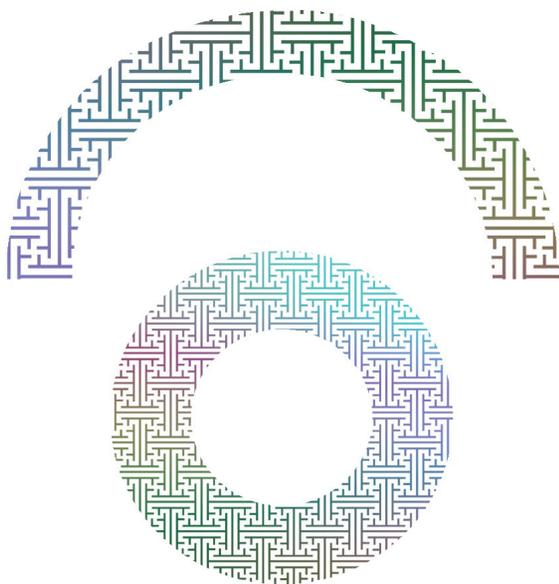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 개선



## 연구진

이 효(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태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연구 요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재정운영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함
- 세입부족과 지방채무와 복지지출 증대에 따른 지방재정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함
- 현행 지방재정분석의 문제점과 제약요인을 진단하는 가운데,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분야 등 새로운 시각에서의 지표 보완·개발 및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 2016년 지방재정분석에 활용할 분석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2. 지방재정분석제도의 현황분석

#### 재정분석 개요

- 재정분석제도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재정·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평가하는 종합적 점검시스템이며,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재원확충 및 예산절감노력을 진작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 재정분석결과에 따라 재정운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포상하고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진단체에 대해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재정여건개선 지원기능 수행

□ 현행 재정분석 지표체계

- 2015년도 재정분석지표체계는 건전성·효율성 분야를 중심으로 하되, 정책 유도 분야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건전성 광역 8개(기초 7개), 효율성 13개, 정책유도 3개 지표 등 총 24개(기초 23개)의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건전성 분야 : 재정수지, 채무관리, 공기업 관련 지표
    - 효율성 분야 : 세입관리 효율, 세출관리 효율 관련 지표
    - 정책유도 분야 : 자치단체 재정의 준법운영 관련 지표
- \* 재정통계 관리목적의 참고지표 20개 선정

<2015년 지방재정분석 지표구성 및 배점>

분 야	세부지표(광역24, 기초23개)	배점(1,000점)
① 재정건전성 (8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li> <li>■ 관리채무비율, 실질채무비율,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li> <li>■ 공기업부채비율,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li> </ul>	500
② 재정효율성 (13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세입비율,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경상세의수입비율,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탄력세율적용노력도</li> <li>■ 민간이전경비비율, 출연출자금비율,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인건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li> </ul>	500
③ 정책유도 (3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위탁금편성 후 보조금집행</li> </ul>	페널티(감점)

□ 문제점 및 제약요인

-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 환경변화와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위험관리와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부채(채무) 관련 지표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함

- 거시적 지표와 미시적 지표를 구분하고 양자 간의 연계분석을 통해 문제요인의 진단과 보다 적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의한 재정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원인 식별 및 설명이 필요함(예: 자체세입감소가 지방세제 변화, 취득세 인하 등 국가 정책에 의한 요인인지, 자치단체 내 재정운영에 의해 야기된 것인지의 구분 필요)
- 자치단체의 실태와 관련된 지표 개선이 필요함. 예컨대, 2년~3년 주기의 행사축제에 대한 점수화 방법 개발, 도서지역의 경우 선박요금을 이원화하거나 이용료·수수료 감면실태를 반영한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중점시책 노력도 및 투명도 관련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재정분석 결과물을 활용하여 문제요인을 발견하고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결과분석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특히, 재정진단시스템에서 “잘못된 신호(wrong signal)”를 주지 않도록 심층진단에서 무엇을,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를 세심하게 파악하여야 함

### 3. 2016년 재정분석 지표체계 마련

#### 기본방향

- 2015년도에 개편한 3개 분야의 지표체계를 유지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되, 정책유도 분야는 재정책임성 분야로 명칭을 변경함
- 각 분야별로 기존지표에 대한 검증을 통해 명칭 변경, 지표항목의 조정 등을 통해 수정·보완
- 통합부채와 민간위탁금 관리강화, 재정운영에 있어서 법령의무사항의 이행력 강화 등 최근 환경변화 및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신규지표를 추가함

□ 기존지표의 수정·보완 및 신규지표 추가

○ 기존지표의 수정·보완

- 공기업 지표와 관련하여 공기업부채비율,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지표에서 지방공단을 포함
- 행사축제경비 효율화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시도 시책에 협조하여 개최하는 전국규모 순회행사(박람회 등), 시도규모 순회행사(도민체육대회 등) 등은 행사축제 산정 상 예외로 인정(예: 부산ITU전권회의(미래부 주관), 부산아세안특별정상회의(외교부 주관), 강원도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환경부 주관))
  - ※ 2016년 결산부터는 금년도에 도입예정인 행사축제 총액한도제와 연계하여 기재부, 문체부에서 인정한 행사축제 이외에 전국규모 순회행사(박람회 등), 시도규모 순회행사(도민체육대회 등) 등은 행자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하여 총액한도에서 제외
- 지표명칭 변경
  - 민간이전경비비율 → 지방보조금비율
  - 출연출자금비율 → 출자출연전출금비율

○ 신규지표 추가

- 통합유동부채비율(건전성 분야)
-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효율성 분야)
- 재정법령준수, 재정공시노력도, 재정분석대응도(책임성 분야)

□ 2016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책임성 분야에 대해 총 28개(기초 27개) 지표를 선정하여 재정분석 지표체계를 구성함
  - 재정건전성 분야 :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등 9개 지표
    - \* 실질채무비율은 광역자치단체(시·도)에만 해당
  - 재정효율성 분야 : 자체세입비율, 지방보조금비율 등 14개 지표
  - 재정책임성 분야 : 재정법령준수 등 5개 지표

<2016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분야	부문	지표	비고
재정건전성 (9개)	수지 관리	통합재정수지비율	국제기준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복식부기
	채무(부채) 관리	관리채무비율	BTL지급액 포함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복식부기
		통합유동부채비율	신규 지표
		실질채무비율	광역만 해당
	공기업 관리	공기업부채비율	공단 포함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공단 포함
재정효율성 (14개)	세입효율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세출효율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명칭 변경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명칭 변경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인건비 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제외대상 확대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신규 지표
재정책임성 (5개)	법령준수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재정법령준수	신규지표
	투명성	재정공시 노력도	신규지표
	대응성	재정분석 대응도	신규지표
※ 재정책임성 분야 지표는 분야별, 총점에서 가점/감점			

□ 지표별 가중치 조정

- 신규지표 도입 등에 따라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하고 재정책임성 분야 지표는 지표의 성격에 따라 각 분야 및 총점에서 가점/감점 부여
- 지표별 가중치는 전문가그룹, 실무자의견 및 지표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

<2016년도 재정분석지표 가중치 조정(안)>

분야	부문	지표	2015 가중치	2016 조정	비고	
재정 건전성	수지 관리	통합재정수지비율	15%	15%		
		실질수지비율	10%	10%		
		경상수지비율	10%	10%		
	채무(부채) 관리	관리채무비율	20%(광역), 30%(기초)	18%(광역) 27%(기초)	-2%p -3%p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5%	14%	-1%p	
		통합유동부채비율		4%	신규	
	공기업 관리	실질채무비율	10%(광역만)	9%(광역)	-1%p	
		공기업부채비율	10%	10%		
	재정 효율성	세입효율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0%	10%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8%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8%	8%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7%	7%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7%	7%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7%	7%		
세출효율		탄력세율적용노력도	8%	6%	-2%p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2%	10%	-2%p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8%	8%		
		인건비 절감노력도	7%	7%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6%	6%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7%	7%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7%	7%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4%	신규	
		재정 책임성	법령준수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5점	-5점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5점			-5점		
재정법령준수				-45점	신규	
투명성	재정공시노력도			+15점	신규	
대응성	재정분석대응도			-10점	신규	

※ 재정책임성 분야 지표는 분야별, 총점에서 가점/감점

# 차 례

<b>제1장 서론</b>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1. 연구범위 .....	4
2. 연구방법 .....	5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 .....	6
<b>제2장 지방재정분석제도의 현황 분석</b> .....	9
제1절 재정분석 개요 .....	11
1. 현행 제도 목적과 역할 .....	11
2. 현행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	11
3. 재정분석 제도운영 및 분석 절차 .....	13
제2절 재정분석의 지표체계 .....	14
1. 지표 분류기준 .....	14
2. 재정분석 지표체계 .....	15
제3절 제약요인 및 개선방향 .....	16
<b>제3장 지방재정분석 지표 보완·개선</b> .....	19
제1절 재정 건전성 지표의 검토 .....	21
1. 기본방향 .....	21
2. 건전성 개선 노력도 검토 .....	21
3. 부채 관련 지표 개발 .....	22
4. 공기업 관련 지표 검토 .....	32



제2절 재정 효율성 지표의 검토 .....	33
1. 기본방향 .....	33
2. 행사축제경비 제외 대상 검토 .....	34
3. 민간이전경비비율 검토 .....	35
4. 민간위탁금비율 및 비율증감률 .....	35
5. 지방보조금 절감비율 .....	37
제3절 정책유도 지표의 검토 .....	38
1. 기본방향 .....	38
2. 정책유도 지표 도입방안 .....	39
<b>제4장 2016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b>	<b>45</b>
제1절 지표체계 대안 .....	47
1. 기본방향 .....	47
2. 대안 검토 .....	47
제2절 2016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	49
1. 2016년 지표체계(안) .....	49
2. 2015년도와 비교 .....	51
제3절 분야별, 지표별 가중치 조정 .....	54
1. 분야별 배점 검토 .....	54
2. 지표별 가중치 검토 .....	55
제4절 평가방식 검토 .....	57
1. 현황 및 문제점 .....	57
2. 자치단체 건의(안) .....	58





3.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 59

〈부록 1〉 지방재정 관련 법령위반 규정 ..... 73

〈부록 2〉 건전성/효율성 배점 조정 시뮬레이션 .... 76

〈부록 3〉 2016년도 지방재정분석지표(안) ..... 81

# 표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 2-1> 지방재정분석 지표구성 및 배점(2015년) ……	15
<표 2-2>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2015년) ……	15
<표 3-1> 기초통계량 분석 결과 ……	23
<표 3-2> 채무 및 부채관련 지자체 유형별 순위변화	28
<표 3-3>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민간위탁금비율 및 증감률의 추이 ……	36
<표 3-4> 정책유도 분야 신규지표 구성(안) ……	38
<표 3-5>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체크리스트 ……	39
<표 3-6> 재정 관련 법령위반 주요 사례 ……	40
<표 3-7> 법령준수 대안 비교 ……	40
<표 3-8> 재정법령준수 체크리스트 ……	41
<표 3-9> 채무감축 노력도 체크리스트 ……	42
<표 3-10> 재정공시 노력도 체크리스트 ……	42
<표 3-11> 재정분석 대응도 체크리스트 ……	43
<표 4-1> 2016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	50
<표 4-2> 2015년도와 2016년도 지표체계 비교 ……	53
<표 4-3> 2016년도 재정분석지표 가중치 조정(안) ……	56
<표 4-4> 연도별 민간이전경비 비율(%) ……	58
<표 4-5> 자치단체 유형별 민간이전경비비율 평균(%) ……	59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흐름도 .....	5
<그림 2-1>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운영 .....	13
<그림 2-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절차 .....	13
<그림 3-1> 채무 및 부채관련 지표의 산포도 .....	25
<그림 4-1> 재정분석 지표체계 (제1안) .....	48
<그림 4-2> 재정분석 지표체계 (제2안) .....	48
<그림 4-3> 2016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안) .....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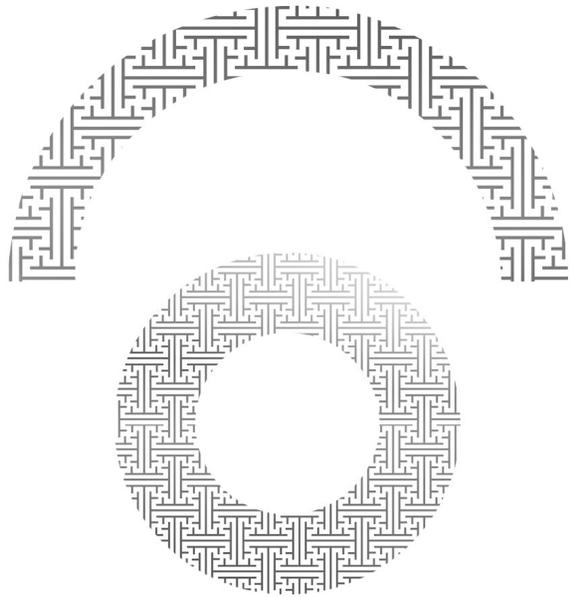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





## 제1장

##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세입부족에 대해 사회복지지출 등 법정·의무성 지출증대에 따른 수지불균형, 지방채무 확대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 강화 필요
  -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 전반적인 동향 및 현안 이슈 검토
    - 지방재정위기 대책과 재정분석진단제도 운용 강화
      - 2015년 긴급재정관리 도입(2016. 6월 시행)(지방재정법 개정)
      -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등
    - 재정운용실태 분석 및 지방재정통합정보 공개
      - 재정지출 비효율·낭비 사례
      - 재정투자사업과 민간보조금관리 강화 등
-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정책유도 분야 등 새로운 시각에서의 지표 보완·개발 및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 2016년도 지방재정분석에 활용할 분석체계 마련
  - 현행 지방재정분석의 문제점, 제약요인에 대한 보완·개선
    - 유사·중복 문제 검토 및 세부항목 조정을 통해 지표 적실성 강화
    - 행사축제경비 제외대상 사업 검토
      - 박람회 등 전국순회행사, 기재부·문체부 외 중앙행정기관 주관행사 등
    - 민간이전경비, 출연출자금비율 검토

-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신규 추가
- 통합부채(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포함) 관련지표 신규 추가
  - 통합유동부채비율,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 등 검토
- 현행 정량지표 분석 이외에 법령준수, 투명성 등 책임성 분야 지표를 개발하여 지표체계 개선
  - 재정법령준수, 지방보조금 관리 관련 지표 검토
  - 정보공개의 접근성·정확성·신속성 관련 지표 검토
  - 사전예고지표 :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2016년 참고지표)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범위

- 지방재정 환경변화 및 현안이슈와 연계하여 제도운영 방향 모색
- 2016년도 재정분석에 활용할 지표체계 마련
  - 건전성과 효율성 분야 지표 보완·개선
    - 통합부채, 민간위탁금 관련 신규 지표 개발
    - 자치단체 실정 등 지표 적실성 강화
      - \*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등
  - 재정 책임성 분야 지표 개발
    - 법령준수, 투명재정 운영 관련 지표 등 검토
- 평가방식 검토
  -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의 평가방식 검토
  - 세종시, 제주도(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경비 등) 사례 검토

## 2. 연구방법

### ○ 문헌연구

- 재정 건전성, 효율성 등에 관한 이론적 검토  
\* 법령, 제도, 정책, 선행연구
- 재정분석기법, 지표평가방법
- 추세모니터링, 종합지수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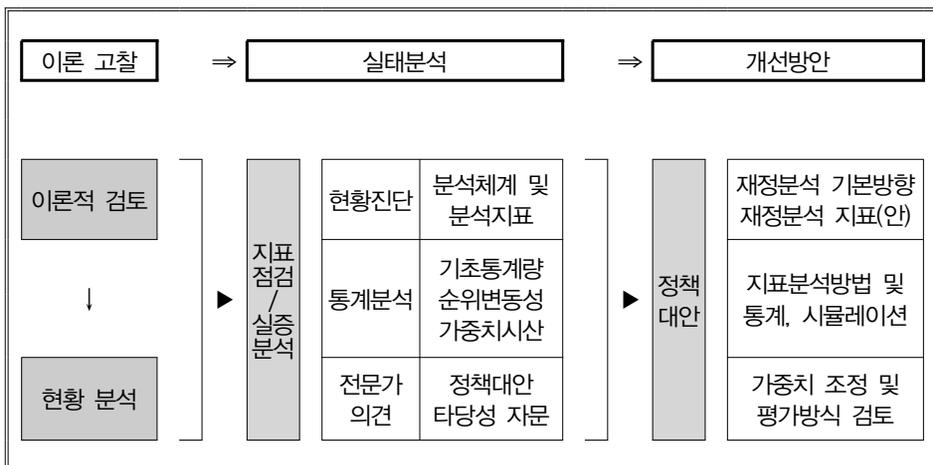
### ○ 분석지표 보완·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외부전문가 워크숍, 간담회, 자문회의 개최
- 이슈별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을 통해 정책대안 마련

### ○ 통계분석, 현장조사 등 실증적 분석

- 지방재정분석 관련 실무자 면담 및 현지조사에 의한 정책 타당성 검토
- 분석지표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시물레이션 결과 분석 등  
\* 재정전문가, 계량·통계전문가, 회계사, 공무원 참여

<그림 1-1> 연구 흐름도



###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

#### □ 지방재정분석 지표의 보완·개선

##### ○ 건전성 분야 지표 보완·개선

- 부채관련 지표 신규 추가
  - 통합부채(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포함) 관련 지표
    - \* 통합유동부채비율, 자산부채비율 등 검토
  -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
- 재정 건전성 노력도 지표화 검토
  - 수지 개선 노력, 채무감축 노력 등
- 공기업 관련 지표의 회계범위 : 지방공단 포함 여부
- 관리채무와 실질채무(광역자치단체) 관계 및 가중치 검토
  - \* 관리채무, 지역개발기금 기초단체융자액, 실질채무 분포도 및 차이 분석

##### ○ 효율성 분야 지표 보완·개선

- 지역여건, 지역실정을 반영한 분석지표 세부항목 조정 등 적실성 검토
- 행사축제경비 제외대상 사업 등 검토
  - 전국규모의 순회행사(박람회 등), 시도규모의 순회행사(도민체육대회)
  -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이외 중앙행정기관 주관행사
    - \* 부산 ITU전권회의(미래창조과학부), 부산아세안정상특별회의(외교부), 강원도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환경부) 등
- 민간이전경비비율 지표의 일부 광역단체 차이 검토
  - \*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세종, 제주)의 민간이전경비비율 과다 문제
- 민간위탁금 관련 지표
- 지표 세부항목 간 중복 제거 등

##### ○ 책임성 분야 신규지표 개발

- 법령준수, 채무감축노력, 재정분석 대응도 등 지표

- 투명재정 운영 관련 지표 개발
  - 정보공개접근성, 정확성, 신속성 등 지표개발 및 평가방법
- 기존 지표 검토
  -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지표 검토
  - 위탁금편성 후 보조금집행 지표 검토
- 사전예고지표 검토
  -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자체사업보조금 절감노력

□ 2016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도출

-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마련
  - 정량지표 추가 보완
  - 정책유도 지표
  - 사전예고지표 등 검토
- 종합평가방법 연구
  - 분야별, 지표별 가중치 조정 : 시뮬레이션 결과 검토
  -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의 평가방식 검토
    - 민간이전, 행사축제 관련 지표(세종시, 제주도)
- 2016년도 지방재정분석 매뉴얼(편람)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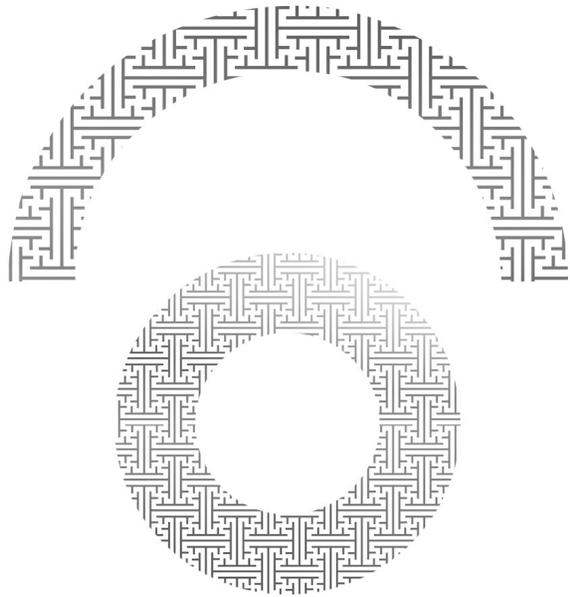
# 제2장

## 지방재정분석제도의 현황 분석

제1절 재정분석 개요

제2절 재정분석의 지표체계

제3절 제약요인 및 개선방향





## 제2장

## 지방재정분석제도의 현황 분석

## 제1절 재정분석 개요

## 1. 현행 제도 목적과 역할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운영 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재정·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평가하는 지방재정의 종합적 점검시스템
-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및 예산절감의 노력을 진작시키는 기능 수행
- 재정운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포상하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진단체에 대해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기능으로서 역할

## 2. 현행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 ◇ 지방재정법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개정일 2014.11.19.〉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최종 개정일 2014.11.19.>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① 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 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1.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 예산보고서
2.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의 결산승인보고서
3. 법 제11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
4. 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보고서
5. 법 제18조의 출자보고서
6.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7.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8.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9. 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10.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
11.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관리현황보고서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1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 재정보고서의 서식·보고기한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이하 "재정분석·진단"이라 한다)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재정분석·진단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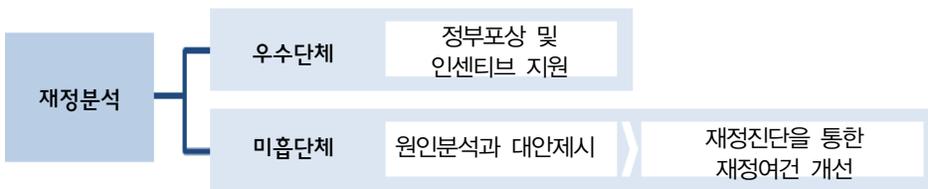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 잔액이 과다한 경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총당·사용한 경우

3. 인건비 등 경상비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보고서의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3. 재정분석 제도운영 및 분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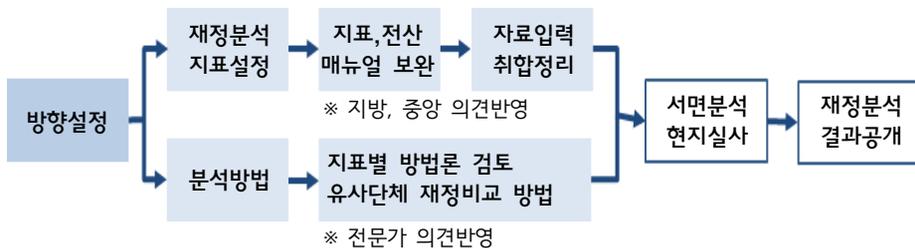
- 지방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정례적인 분석·공개를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책임성 확보
-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수단체에 정부포상 및 인센티브 지원
- 재정분석 결과가 미흡한 단체에 대하여 원인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재정진단을 통한 재정여건 개선 유도

<그림 2-1>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운영



- 분석 절차

<그림 2-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절차



## 제2절 재정분석의 지표체계

### 1. 지표 분류기준

- (지표구성) 지표는 분석 목적과 정보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건전성·효율성의 2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 및 평가하고 지자체 재정의 준법운영을 위한 정책 유도 지표 설정
  - 각 분야별로 분석내용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석요인을 체계화
  
- (재정건전성) 현재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입각한 재정상태의 건전성 여부를 재정수지, 채무관리, 공기업 관점에서 지표 구성
  - 재정수지 관점 : 통합재정수지, 실질수지, 경상수지
  - 채무관리 관점 : 관리채무규모, 채무상환능력
  - 공기업 관점 : 공기업부채, 공기업경영실적
  
- (재정효율성) 재원조달 및 재정지출 효과 관점에서 세입관리효율, 세출관리효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
  - 세입관리 : 세입조달능력, 체납액관리 등
  - 세출관리 : 민간이전지출, 출자출연금, 인건비 절감노력 등
  
- (정책유도) 지자체 재정의 준법운영을 위한 것으로 페널티 지표와 인센티브 지표로 구분
  -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 위탁금 편성 후 보조금 집행

## 2. 재정분석 지표체계

-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광역 24개, 기초 23개의 핵심지표 선정
  - 지표의 중요도와 변별력, 정보특성 등 고려
  - 건전성 광역 8개(기초 7개), 효율성 13개, 정책유도 3개
    - ※ 이와 별도로 재정통계 관리목적의 참고지표 20개 선정

<표 2-1> 지방재정분석 지표구성 및 배점(2015년)

분 야	세부지표(광역24, 기초23개)	배점 (1,000점)
① 재정건전성 (8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재정수지 3개 지표</li> <li>■ 관리채무비율, 실질채무비율 등 채무관리 2(+1)개 지표</li> <li>■ 공기업부채 등 공기업관리 2개 지표</li> </ul>	500
② 재정효율성 (13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등 세입효율 6개 지표</li> <li>■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등 세출효율 7개 지표</li> </ul>	500 ※ 보통교부세 연계
③ 정책유도 (3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등 3개 지표</li> </ul>	최대 15점 감점 ※ 페널티 지표

<표 2-2>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2015년)

1차 분류	2차 분류	재정분석지표	가중치
건전성 (500점)	수지 관리	통합재정수지비율	15%
		실질수지비율	10%
		경상수지비율	10%
	채무 관리	관리채무비율	20%(광역), 30%(기초)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5%
		실질채무비율	10%(광역만)
	공기업 관리	공기업부채비율	10%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0%

1차 분류	2차 분류	재정분석지표	가중치
효율성 (500점)	세입 효율 (45%)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8%
		지방세채납액관리비율(증감률)	7%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7%
		세외수입채납액관리비율(증감률)	7%
		탄력세율적용노력도	8%
	세출 효율 (55%)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8%
		인건비 절감노력도	7%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6%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7%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7%
정책유도	페널티 (감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5점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5점
		위탁금 편성 후 보조금 집행	-5점
20(21)개	1,000점	※ 정책유도의 페널티지표는 총점(1,000점)에서 감점	

### 제3절 제약요인 및 개선방향

#### ○ 부채(채무) 관련 지표 보완

- 최근 환경변화와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위험관리와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부채(채무) 관련 지표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공사·공단, 제3섹터까지 각 범주별로 구분하여 부채(채무)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관리 개선 필요성 강조

- 아울러 복식부기 재무회계, 원가회계, 성과예산제도 도입 등 새로운 지방재정제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재정분석 지표의 추가 검토 및 분석방식의 개선에 대한 종합적 연구 필요
  - 거시적 지표와 미시적 지표를 구분하여 양자 간의 연계분석 등 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 예를 들면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출연출자금비율 등 구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 유도
-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의 정확한 진단과 원인 식별 및 설명 필요
  - 2013년도의 자체세입비율 전국평균은 26.35%로 2012년도에 비해 1.60%p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자체세입 감소는 부동산 경기위축 등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취득세 인하 등 국가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것임
  - 반면 2014년도의 자체세입비율 전국평균은 27.96%로 2013년도에 비해 1.61%p 상승하였는데, 이는 2014년 지방세제의 변화라는 국가정책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임
  - 추후 재정분석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정부의 재정정책과 자치단체 내 재정운영에 의해 야기된 것을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원인과 문제요인에 대한 진단결과를 통해 건설적인 재정진단이 가능할 것임
- 자치단체의 실태와 관련된 지표 개선
  - 자치단체 행사축제, 민간이전경비의 특성과 실태를 반영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매년이 아니라 2년마다 혹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행사축제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점수화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함
  - 자치단체 중에서 도서지역의 경우, 도서지역을 운행하는 선박요금을 이원화하거나 이용료와 수수료를 감면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 이러한 실태를 반영한 지표 검토

- 정부중점시책 노력도 및 투명도 지표 개발
  - 정책유도 지표 추가 : 정부중점시책 추진 노력도 지표 등
  - 재정 투명성 지표 : 정보공개 접근성·정확성·신속성 관련지표 개발
    - ※ 가/감점부여 검토
- 재정분석 결과물을 활용하여 문제요인을 발견하고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결과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도출
  - 재정운영 상황과 문제요인을 재정진단으로 해결
  - 재정진단시스템에서 “잘못된 신호(wrong signal)”를 주지 않도록 심층진단에서 무엇을,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를 세심하게 파악하여야 함

#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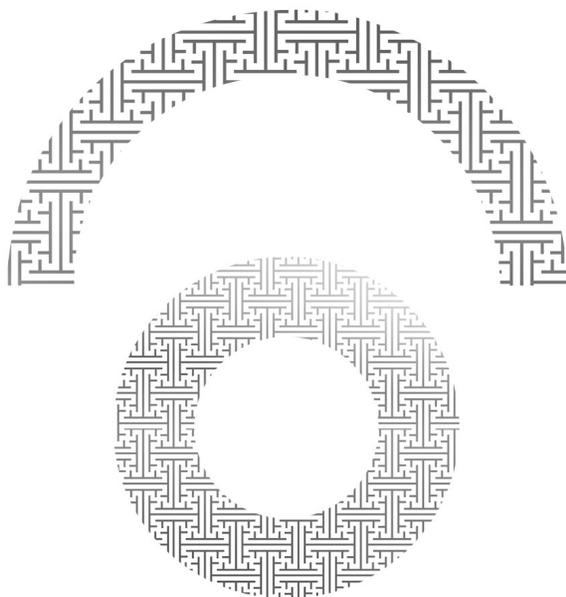
## 지방재정분석

### 지표 보완·개선

제1절 재정 건전성 지표의 검토

제2절 재정 효율성 지표의 검토

제3절 정책유도 지표의 검토





## 제3장

## 지방재정분석 지표 보완·개선

## 제1절 재정 건전성 지표의 검토

## 1. 기본방향

- 건전성 개선 노력도 검토
- 자치단체 채무 및 부채 재정관리지표 개선 검토
  - 예산 관련 채무지표와 복식부기 관련 부채지표의 검토
  - 통합부채 도입에 따른 재정분석지표로의 적용 가능성 분석
- 공기업부채 지표 보완 검토
- 재정 건전성 지표 검토사항

구분	요소	주요 내용
(1) 건전성 개선 노력도 검토	수지 안정(균형) 노력	재정수지 개선
	채무 관리 노력	채무감축 노력
(2) 부채관련 지표개발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신규)	시산 결과 검토
	유동부채비율(신규)	시산 결과 검토
(3) 공기업 지표 검토	공기업부채비율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측정대상에 지방공단 포함여부

## 2. 건전성 개선 노력도 검토

- 재정 건전성 분야에 있어서 수지 안정(균형), 적정 채무관리 등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 필요
  - 재정수지 균형, 안정화  
(예) 재정수지 개선 노력

- 적정 채무관리 노력  
(예) 채무감축 노력도

### 3. 부채 관련 지표 개발

#### 1) 부채 관련 지표 검토

##### (1)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 : 신규 추가 검토

- 부채의 적정 관리를 위해 채무에서 부채 개념으로 전환하고 객관적인 지표 산출을 위해 결산금액을 사용
- 부채감축 등 관리가능성을 고려하여 현금지출의무인 금융부채로 범위를 설정  
\* 금융부채 : 지방채발행잔액 + 미지급금(BTL지급액 및 재정지원금 미지급금 등) + 채무 부담행위(발생) + 보증채무부담(확정액)

##### ○ 산식

-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 = (금융부채/세입결산액)×100

##### (2) 통합부채 관련 유동부채비율 : 신규 추가 검토

- 유동부채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의 유동성 위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표임

##### ○ 산식

- 유동부채비율(%) = (유동부채/유동자산)×100  
\* 유동자산 : 현금·예금,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등 1년 내에 자 회수가 가능한 자산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일반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의 등 1년 내에 만기가 도래되는 부채

## 2) 지표 검토 내용

## □ 기초통계량

- 전국 단위에서 유동부채비율(변이계수: 2.137)이 자치단체 간에 상대적으로 편차가 가장 크고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변이계수: 1.114)이 편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 광역단체 : 유동부채비율(변이계수: 0.577)이 상대적으로 편차가 크고 관리채무비율(변이계수: 0.382)이 상대적으로 편차가 작음
  - 시 단위 : 유동부채비율(변이계수: 2.266)의 상대적 편차가 가장 크고 관리채무비율(0.666)과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0.657)은 상대적으로 편차가 작음
  - 군 단위 : 관리채무비율(변이계수: 0.988)과 유동부채비율(0.984)이 군 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고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0.937)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 자치구 : 관리채무비율의 구 간 편차(변이계수 : 1.868)가 상대적으로 크고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의 편차(0.984)가 상대적으로 작음

&lt;표 3-1&gt; 기초통계량 분석 결과

- 관리채무비율, 유동부채비율,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 -

전국 (243)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최소값	최대값
관리채무비율	5.58	6.60	1.183	0.00	37.73
유동부채비율	6.62	14.15	2.137	0.05	194.95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10.04	11.18	1.114	0.48	69.67
광역 (17)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최소값	최대값
관리채무비율	18.57	7.09	0.382	9.35	37.73
유동부채비율	16.96	9.78	0.577	2.53	45.52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27.88	14.14	0.507	12.96	6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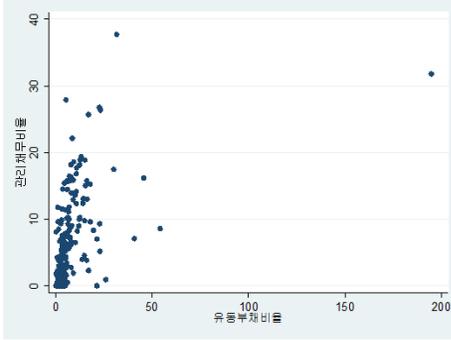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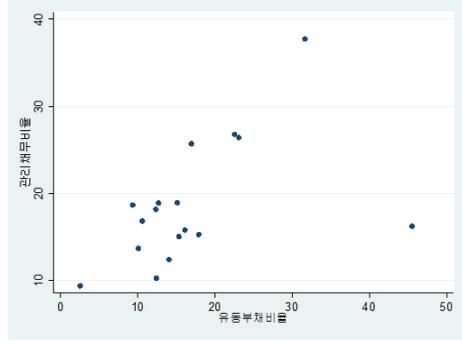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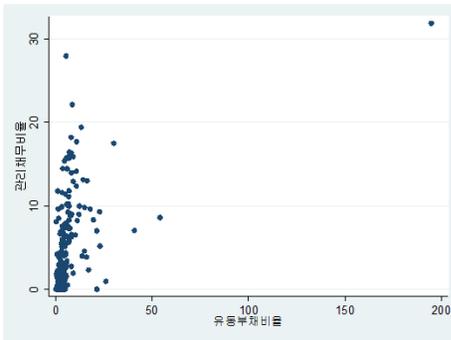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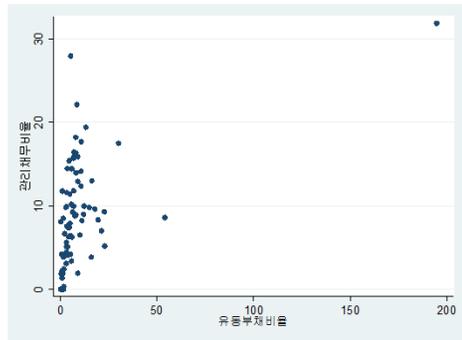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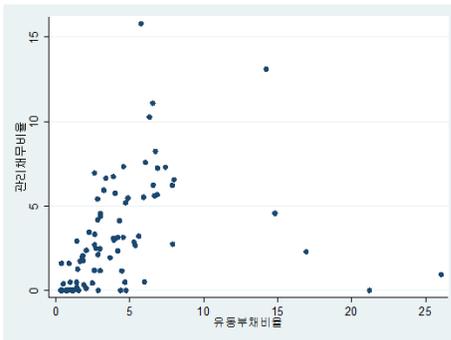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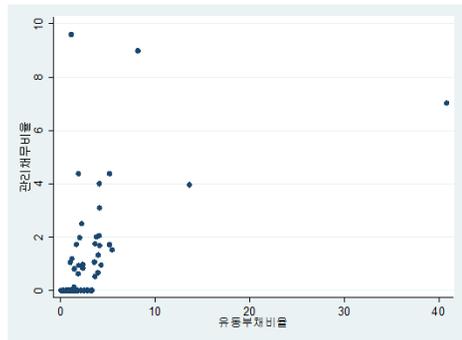
시 (75)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최소값	최대값
관리채무비율	9.34	6.22	0.666	0.00	31.82
유동부채비율	10.19	23.09	2.266	0.16	194.95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17.27	11.34	0.657	0.49	48.56
군 (82)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최소값	최대값
관리채무비율	3.26	3.22	0.988	0.00	15.78
유동부채비율	4.40	4.33	0.984	0.31	26.05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6.07	5.69	0.937	0.48	24.63
자치구 (69)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최소값	최대값
관리채무비율	1.06	1.98	1.868	0.00	9.60
유동부채비율	2.82	5.09	1.805	0.05	40.80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2.52	2.48	0.984	0.63	13.34

□ 지표 간 산포도

○ 관리채무비율 vs. 유동부채비율

- 두 지표 간 상관관계가 높지 않음
- 특히 군 유형의 상관관계가 0.2 정도로 낮게 나타남
- 관리채무비율은 채무규모의 적정수준, 유동부채비율은 유동성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상호 보완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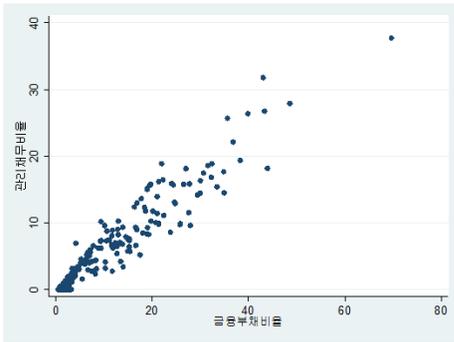
&lt;그림 3-1&gt; 채무 및 부채관련 지표의 산포도

(1) 전국 ( $r=0.49$ )(2) 광역자치단체 ( $r=0.49$ )(3) 기초자치단체 ( $r=0.47$ )(4) 시 ( $r=0.47$ )(5) 군 ( $r=0.28$ )(6) 자치구 ( $r=0.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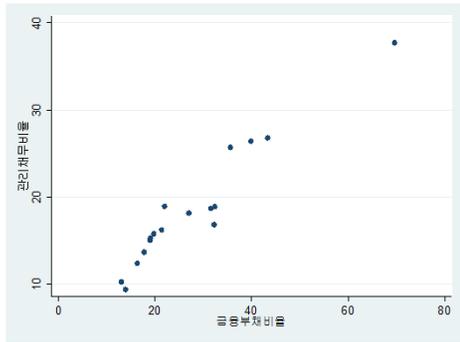
○ 관리채무비율 vs.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

- 상관관계, 산포도 분석 결과 관리채무비율과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관리채무비율 대신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을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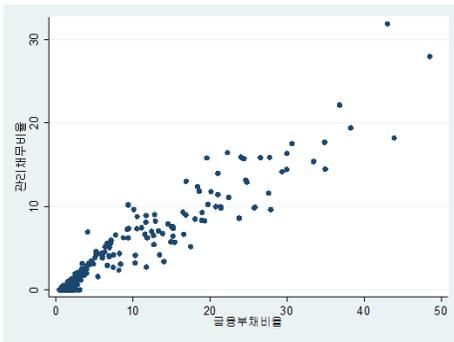
(1) 전국 (r=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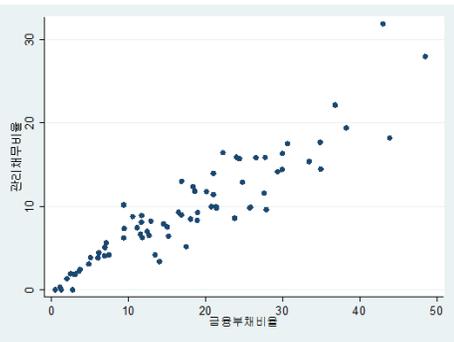
(2) 광역자치단체 (r=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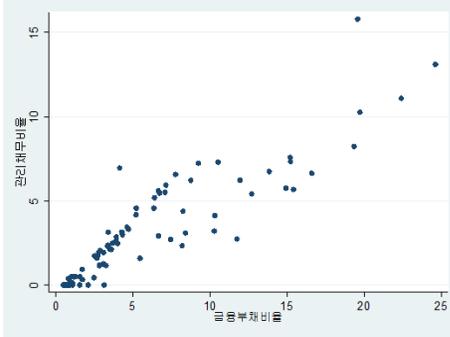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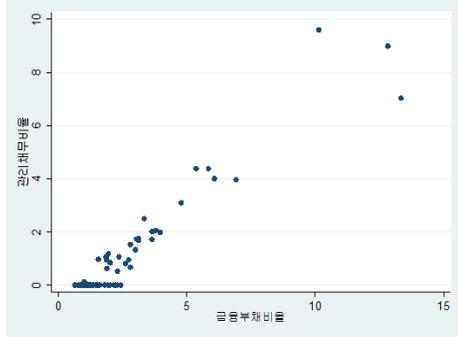


(3) 기초자치단체 (r=0.92)



(4) 시 (r=0.92)



(5) 군 ( $r=0.89$ )(6) 자치구 ( $r=0.95$ )

□ 지표 간 순위비교 (자치단체 유형별)

○ 관리채무비율을 기초로 하여 자치단체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하위 25% 자치단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관리채무비율 순위와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의 순위가 거의 일치함
- 관리채무비율과 유동부채비율 간에는 전반적으로 순위 변동이 나타나며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순위 변동이 현저하게 나타남

(예) 경기 본청 : 관리채무비율 9위, 유동부채비율 3위,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 8위

경기 안산시 : 관리채무비율 8위, 유동부채비율 54위

경남 진주시 : 관리채무비율 61위, 유동부채비율 25위

전남 영광군 : 관리채무비율 1위, 유동부채비율 81위

경북 울진군 : 관리채무비율 73위, 유동부채비율 29위

<표 3-2> 채무 및 부채관련 지자체 유형별 순위변화

○ 특별·광역시

채무비율 순위	자치단체명	관리채무비율	유동부채비율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1	세종 본청	9.35	2.53 (#1)	13.93 (#1)
2	대전 본청	18.62	9.35 (#2)	31.57 (#3)
3	울산 본청	18.84	12.69 (#3)	32.43 (#4)
4	서울 본청	18.88	15.11 (#4)	21.96 (#2)
5	광주 본청	25.70	16.95 (#5)	35.63 (#5)
6	부산 본청	26.39	23.1 (#7)	39.89 (#6)
7	대구 본청	26.78	22.52 (#6)	43.34 (#7)
8	인천 본청	37.73	31.67 (#8)	69.67 (#8)

○ 도

채무비율 순위	자치단체명	관리채무비율	유동부채비율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1	경남 본청	10.22	12.43 (#4)	12.96 (#1)
2	경북 본청	12.34	14.03 (#5)	16.31 (#2)
3	전북 본청	13.64	10.09 (#1)	17.75 (#3)
4	충남 본청	15.02	15.33 (#6)	18.96 (#4)
5	전남 본청	15.23	17.94 (#8)	19.08 (#5)
6	충북 본청	15.77	16.13 (#7)	19.78 (#6)
7	강원 본청	16.20	45.52 (#9)	21.39 (#7)
8	제주 본청	16.81	10.6 (#2)	32.26 (#9)
9	경기 본청	18.15	12.36 (#3)	27.02 (#8)

○ 시 (상하 25%)

채무비율 순위	자치단체명	관리채무비율	유동부채비율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상위 25%				
1	경기 과천시	0.00	1.52 (#12)	2.75 (#6)
1	경기 여주시	0.00	1.22 (#9)	1.30 (#3)
1	강원 삼척시	0.00	0.17 (#2)	0.49 (#1)

채무비율 순위	자치단체명	관리채무비율	유동부채비율	결산대비금융부채 비율
4	경남 밀양시	0.30	1.65 (#13)	1.12 (#2)
5	전남 광양시	1.30	0.81 (#5)	2.02 (#4)
6	전남 순천시	1.87	0.25 (#3)	2.98 (#7)
7	경기 수원시	1.88	1.10 (#8)	3.12 (#8)
8	경기 안산시	1.92	9.06 (#54)	2.46 (#5)
9	경기 광명시	2.22	0.84 (#6)	3.58 (#9)
10	충남 공주시	2.42	1.88 (#15)	3.75 (#10)
11	경기 군포시	3.06	2.97 (#18)	4.84 (#11)
12	경기 안성시	3.39	5.69 (#37)	14.00 (#34)
13	경기 구리시	3.80	1.49 (#11)	6.02 (#13)
14	경기 하남시	3.82	15.91 (#66)	6.06 (#14)
15	전북 남원시	3.86	1.82 (#14)	5.10 (#12)
16	경기 부천시	4.07	3.83 (#27)	6.90 (#16)
17	경기 동두천시	4.19	5.37 (#36)	13.47 (#33)
18	경기 성남시	4.20	0.72 (#4)	7.47 (#20)
19	경기 오산시	4.44	3.00 (#19)	6.14 (#15)
하위 25%				
57	강원 동해시	12.99	16.21 (#67)	16.87 (#40)
58	충남 아산시	13.92	7.98 (#52)	21.01 (#50)
59	강원 원주시	14.14	10.60 (#59)	29.36 (#64)
60	경기 김포시	14.42	5.95 (#40)	29.97 (#65)
61	경남 진주시	14.47	3.63 (#25)	34.96 (#70)
62	경남 김해시	15.38	4.39 (#30)	33.44 (#68)
63	전북 전주시	15.68	6.60 (#42)	24.43 (#56)
64	경남 양산시	15.82	6.85 (#44)	26.55 (#60)
65	경북 경주시	15.85	7.92 (#50)	27.77 (#62)
66	경기 광주시	15.88	9.11 (#56)	24.04 (#55)
67	경북 문경시	16.32	7.96 (#51)	30.01 (#66)
68	강원 속초시	16.42	7.08 (#46)	22.29 (#53)
69	경기 용인시	17.47	30.04 (#73)	30.64 (#67)
70	경북 포항시	17.68	10.70 (#60)	34.89 (#69)
71	전남 목포시	18.17	7.86 (#49)	43.89 (#74)
72	충남 천안시	19.39	13.18 (#64)	38.27 (#72)
73	전북 익산시	22.14	8.42 (#53)	36.81 (#71)
74	충남 계룡시	27.93	5.34 (#35)	48.56 (#75)
75	강원 태백시	31.82	194.95 (#75)	43.06 (#73)

\* 유동부채비율 최저 시 (#1)는 경기 의정부시 (0.16%)

○ 군 (상하 25%)

채무비율 순위	자치단체명	관리채무비율	유동부채비율	결산대비금융부채 비율
상위 25%				
1	부산 기장군	0.00	0.68 (#6)	0.80 (#6)
1	울산 울주군	0.00	0.78 (#7)	0.70 (#5)
1	충북 단양군	0.00	0.41 (#3)	0.93 (#12)
1	충남 태안군	0.00	2.87 (#36)	2.10 (#22)
1	전북 무주군	0.00	0.45 (#4)	0.59 (#4)
1	전북 장수군	0.00	4.75 (#58)	3.13 (#33)
1	전북 순창군	0.00	0.31 (#1)	0.50 (#2)
1	전남 보성군	0.00	4.37 (#52)	1.55 (#18)
1	전남 영광군	0.00	21.21 (#81)	1.09 (#15)
1	경남 하동군	0.00	1.20 (#13)	0.82 (#8)
1	경남 함양군	0.00	1.08 (#12)	0.83 (#9)
1	경남 합천군	0.00	1.53 (#18)	0.48 (#1)
13	대구 달성군	0.04	1.03 (#11)	0.88 (#10)
14	경북 청도군	0.04	0.82 (#8)	0.57 (#3)
15	경남 산청군	0.12	2.04 (#24)	1.07 (#14)
16	경남 창녕군	0.18	1.42 (#15)	0.92 (#11)
17	전남 해남군	0.31	1.88 (#23)	1.73 (#21)
18	강원 양구군	0.38	0.51 (#5)	0.80 (#6)
19	전남 고흥군	0.44	2.47 (#27)	2.48 (#23)
20	인천 강화군	0.49	4.66 (#56)	1.58 (#19)
하위 25%				
63	경북 예천군	5.52	5.93 (#64)	7.07 (#57)
64	전남 신안군	5.59	6.67 (#70)	6.64 (#54)
65	충남 서천군	5.67	6.85 (#72)	15.42 (#76)
66	충북 증평군	5.75	4.00 (#48)	14.92 (#73)
67	강원 고성군	5.93	3.24 (#42)	7.15 (#58)
68	충남 부여군	6.21	7.87 (#75)	8.77 (#64)
69	전남 장흥군	6.23	6.57 (#69)	11.94 (#70)
70	전북 고창군	6.55	7.99 (#77)	7.76 (#60)
71	전북 완주군	6.64	3.38 (#43)	16.61 (#77)
72	충남 금산군	6.74	3.89 (#45)	13.85 (#72)
73	경북 울진군	6.93	2.62 (#29)	4.14 (#44)
74	강원 양양군	7.24	6.86 (#73)	9.25 (#65)
75	전남 화순군	7.29	7.41 (#74)	10.52 (#68)
76	충북 보은군	7.33	4.58 (#55)	15.24 (#75)

채무비율 순위	자치단체명	관리채무비율	유동부채비율	결산대비금융부채 비율
77	경북 영덕군	7.58	6.06 (#66)	15.21 (#74)
78	충북 진천군	8.23	6.74 (#71)	19.34 (#78)
79	충남 홍성군	10.25	6.33 (#67)	19.73 (#80)
80	전남 강진군	11.07	6.55 (#68)	22.42 (#81)
81	경북 칠곡군	13.10	14.23 (#78)	24.63 (#82)
82	경북 성주군	15.78	5.76 (#63)	19.58 (#79)

\* 유동부채비율 최고 군 (#82)은 강원 영월군 (26.05%)

### ○ 자치구 (상하 25%)

채무비율 순위	자치단체명	관리채무비율	유동부채비율	결산대비금융부채 비율
상위 25%				
1	서울 서초구	0.00	0.05 (#1)	0.63 (#1)
1	서울 중구	0.00	0.30 (#4)	1.11 (#16)
1	서울 용산구	0.00	0.52 (#7)	1.22 (#23)
1	서울 성동구	0.00	2.46 (#45)	2.02 (#42)
1	서울 광진구	0.00	0.34 (#5)	0.90 (#6)
1	서울 동대문구	0.00	0.77 (#16)	0.94 (#11)
1	서울 중랑구	0.00	0.83 (#18)	0.76 (#3)
1	서울 성북구	0.00	1.61 (#33)	1.28 (#26)
1	서울 강북구	0.00	0.71 (#14)	0.92 (#7)
1	서울 도봉구	0.00	2.92 (#50)	1.60 (#34)
1	서울 노원구	0.00	2.79 (#48)	1.37 (#28)
1	서울 은평구	0.00	1.84 (#36)	1.48 (#30)
1	서울 서대문구	0.00	0.79 (#17)	1.07 (#15)
1	서울 마포구	0.00	0.36 (#6)	1.13 (#18)
1	서울 양천구	0.00	0.72 (#15)	1.11 (#16)
1	서울 강서구	0.00	3.18 (#51)	2.42 (#48)
하위 25%				
54	대구 북구	1.68	4.12 (#61)	3.11 (#55)
55	대구 동구	1.71	5.19 (#64)	3.64 (#58)
56	대구 중구	1.72	1.66 (#34)	3.04 (#54)
57	대전 대덕구	1.74	3.65 (#54)	3.11 (#55)
58	부산 해운대구	1.97	2.03 (#40)	3.95 (#61)
59	부산 영도구	2.01	3.80 (#56)	3.64 (#58)
60	대전 중구	2.05	4.10 (#59)	3.78 (#60)

채무비율 순위	자치단체명	관리채무비율	유동부채비율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61	인천 계양구	2.49	2.25 (#42)	3.34 (#57)
62	부산 서구	3.09	4.14 (#62)	4.77 (#62)
63	인천 남구	3.96	13.63 (#68)	6.92 (#66)
64	부산 동구	4.00	4.10 (#59)	6.08 (#65)
65	광주 서구	4.37	5.19 (#64)	5.84 (#64)
66	인천 서구	4.37	1.89 (#38)	5.36 (#63)
67	대전 동구	7.03	40.80 (#69)	13.34 (#69)
68	인천 부평구	9.00	8.17 (#67)	12.83 (#68)
69	서울 강남구	9.60	1.14 (#24)	10.14 (#67)

### 3) 종합적 검토

- 현행 관리채무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은 관리채무비율과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음
- 유동부채비율은 관리채무비율,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과 상관성이 낮고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순위 변동이 현저하게 나타남
- 따라서 재정 건전성 지표에서 관리채무비율은 채무 관점에서,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은 부채 관점에서 지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유동부채비율은 지표 간에 상호 보완성(유동성 위험 노출)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통합유동부채비율로 하여 신규지표 추가 필요

## 4. 공기업 관련 지표 검토

### 1) 검토사항

- 공기업부채비율과 총자본대비 영업이익익률에서 지방공단 포함 여부
- 기존 지표(직영기업, 지방공사)에서 지방공단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

## 2) 검토 내용

- 현재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지방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이 대부분으로 주로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은 위탁대행사업비로 운영되어 자체이익을 창출하지는 않으며, 부채의 경우도 일부 미지급금이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임
- 이에 따라 공기업 지표 산정 시에 지방공단을 제외한 것으로 생각됨

## 3) 종합적 검토

- 대안 검토
  - 현행 지방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기업 관련 지표에서 공단 제외
  - 위탁형 공단 이외에 사업형 공단의 설립·운영을 고려하여 공단 포함
- 검토결과
  - 지방공단의 경우에도 영업이익이나 부채 발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기업 지표에서 지방공단을 포함하여 산정 필요

## 제2절 재정 효율성 지표의 검토

### 1. 기본방향

- 자치단체 실정 및 지역여건 반영을 통한 지표의 적실성 강화
  - 전국(시도)규모 순회행사, 국도비지원행사의 행사축제경비 제외대상 검토
  - 민간이전경비, 민간위탁금 관련 지표의 적실성 보완
- 명칭 변경 : 출연출자금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검토

○ 재정 효율성 지표 검토사항

구분	검토사항	비고
(1) 행사축제경비 제외 대상 검토	전국(시도)규모 순회행사, 국·도비지원행사	제외 대상 타당성 여부
	기재부, 문체부 이외 중앙행정기관 주관행사	
(2) 민간이전경비비율 검토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세종시, 제주도)의 민간이전경비비율 과다 문제 검토	평가방법 개선 검토
(3) 민간위탁금 관련 지표 검토	민간위탁금비율,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지표의 타당성 검토	신규 지표 적용 여부
(4) 명칭 변경 검토	출연출자금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2. 행사축제경비 제외 대상 검토

(1) 검토 대상 행사축제

- 전국(시도)규모 순회행사(박람회, 도민체전 등), 국·도비지원행사
- 기재부, 문체부 이외 중앙행정기관 주관행사
  - (예) 부산 ITU 전권회의(미래부 주관)  
부산 아세안특별정상회의(외교부 주관)  
강원도 생물다양성 협약당사국회의(환경부 주관)
- 문체부에 선정된 축제(예: 강진청자축제 등)는 제외되나, 민간이전경비는 포함되어 일관성이 없음

(2) 검토 내용

- 전국(시도)규모 순회행사(박람회, 도민체전 등), 국·도비지원행사
  - 시·도별 및 기초단체 간에 행사규모가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일률적 적용에 애로 발생 가능
- 기재부, 문체부 이외 중앙행정기관 주관행사의 경우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되지만 수익성, 지역과급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재정분석에서는 전국단위(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체전)로 제외 대상을 제한하고 있음

-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는 세출의 성질별 과목분류(경비)에 기초하여 세출내역을 분석하는 것임. 따라서 재정분석에서 이들 특성을 충분하게 반영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행정자치부 승인 범위 내에서 행사축제경비에서 제외

### 3. 민간이전경비비율 검토

- 지표 명칭 변경 : 민간이전경비비율 → 지방보조금비율

※ 지방재정법 개정(2014.5)에 따라 민간이전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2015.1.1. 시행)

- 세출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지표산정 대상과목을 아래와 같이 조정

<현행>	<변경>
－ 민간경상보조금(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사회단체보조금(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 민간행사보조금(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사회복지보조(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민간자본보조(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4. 민간위탁금비율 및 비율증감률

#### 현황

-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은 2016년 재정분석에 도입 예정

－ 민간위탁사업 : 시설물청소,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도서관사업, 인터넷수능방송, 아동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교육 및 복지사업 집행

- 2014회계연도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전국평균 : -1.37%
- 특별·광역시 : 5.36%
- 시 : 7.11%
- 군 : 8.90%
- 도 : -3.83%
- 자치구 : -7.24%

<표 3-3>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민간위탁금비율 및 증감률의 추이

구분	민간위탁금비율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3	2014	2014
전국평균	5.36%	5.28%	-1.37%
특별·광역시 평균	6.51%	6.23%	5.36%
도 평균	3.81%	3.74%	-3.83%
시 평균	5.34%	5.59%	7.11%
군 평균	2.84%	3.03%	8.90%
자치구 평균	8.23%	7.01%	-7.24%

□ 검토 내용 및 결과

- 필수 민간위탁사업(혹은 법정민간위탁사업)과 부가적인 민간위탁사업을 판단한 후 분석지표로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법정위탁 등 의무위탁은 사회복지보조액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움
  - 조례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위탁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평가 필요
- ⇒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2016년도부터 평가에 반영

## 5. 지방보조금 절감비율

### ○ 검토 배경

- 2015년부터 자치단체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사업 보조금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 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지방보조금 총액이 줄어든 경우 재정분석에서 가점을 부여 필요
- 자체사업 보조금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여 2016년 사전예고지표로 선정함

### ○ 검토 내용

- 100% 지방비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국비와 비율이 섞여 있는 경우 관행적인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예) 국비 50%, 지방비 50%의 지방보조금사업의 경우
  - ① 모든 금액을 자체사업으로 지정하는 단체
  - 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50%만 자체사업으로 지정하는 단체
  - ③ 국고가 섞여 있으므로 보조사업(자체사업에 표기하지 않음)으로 지정하는 단체의 3가지 유형이 나타남
- ②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지자체가 입력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지만,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는 보조금 집행으로 인해 세부 지방보조사업이 얼마나 지방비가 투입되었고 얼마가 중앙으로부터 왔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음
  - \* 재정분석담당자가 모든 지방보조금사업 및 내역을 파악하지 못함

### ○ 검토 결과

- 자체재원 입력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행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상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표를 수정(보조금예산 대비 실제사용예산)하거나,
- 삭제(민간이전경비와 일부 중복) 필요

### 제3절 정책유도 지표의 검토

#### 1. 기본방향

- 정책유도 지표 도입은 재정관리 개선, 재정투명성, 재정분석 대응성 관련 지표에 대해 검토
  - (1차) 정책유도 분야 지표의 배점 확정
    - \* 지표 성격을 고려하여 가점/감점 부여
  - (2차) 재정관리 개선(지방보조금관리강화, 법령준수, 채무감축노력), 재정투명성지표, 재정분석대응도 등 평가항목별로 가점이나 감점 적용
- 정책유도 지표는 체크리스트(checklist)에 의해 있음·없음(yes, no) 방식으로 점검하고 각 항목별로 일정한 점수를 부여(가점/감점)
  -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법령준수, 채무감축 노력도, 재정분석 대응도 지표는 법령준수 성격의 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감점 부여
  - 재정공시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공시 노력도는 가점 부여
    - \* 점수는 5점 기준으로 실적결과를 토대로 척도지표로 채점
    - \* 가/감점은 정책유도 분야에 일괄 포함시키거나 해당 분야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표 3-4> 정책유도 분야 신규지표 구성(안)

분야	부문	지표	평가분야	가/감점
정책 유도	재정관리 개선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건전성 분야에 반영	-10
		재정법령준수	건전성 분야에 반영	-45
		채무감축 노력도	효율성 분야에 반영	-10
	재정투명성	재정공시 노력도	효율성 분야에 반영	+15
	재정분석 대응	재정분석 대응도	총점에 반영	-10

## 2. 정책유도 지표 도입방안

### 1) 재정상황 관리개선

- 지표특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운영과 관련된 재정법령준수 및 채무감축 노력도는 감점부여 방식으로 운영

〈 지표별 배점 〉

- 지방보조금 관리강화(감점 10점)
- 재정법령준수(감점 45점)
- 채무감축 노력도(감점 10점)

####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10점)/(건전성 분야)

-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한 노력 및 결과에 대한 평가

<표 3-5>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적용노력 (-5점)	1. 지방보조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5 (0) (-5)
적용결과 (-5점)	2.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미흡 이하인 경우 다음연도 예산을 10% 삭감하였는가? - 예 - 아니오	-5 (0) (-5)

#### 재정법령준수 (-45점)/(건전성 분야)

- 검토배경
  -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앙행정기관과 사전협의 의무화 규정을 미이행한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여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법규정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무미이행에 따른 이행명령, 벌칙

부과 등 제재규정 필요

\* 사안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 등 제기

<표 3-6> 재정 관련 법령위반 주요 사례

관련 법령	주요 사례
지방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 부적정</li> <li>·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등</li> </ul>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보조금 목적외 사용</li> <li>·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집행 및 관리부적정 등</li> </ul>
사회보장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조정 의무위반 등</li> </ul>

주 : 재정 관련 법령위반 주요 사례에 대한 법령사항은 <부록 1> 참조

○ 대안 검토

- 법령위반의 주요 내용, 적용에 따른 근거 및 실효성을 기준으로 2가지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제1안) :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
- (제2안)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징수를 게을리한 경우

<표 3-7> 법령준수 대안 비교

구분	제1안	제2안
주요 내용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지출과 무관)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법령 위반
법령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위반(예산편성 부적정, 세출예산집행 부적정 등)</li> <li>•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li> <li>•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조정 의무 위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위반(예산편성 부적정, 세출예산집행 부적정 등)</li> <li>•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li> <li>•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조정 의무 위반 등)</li> </ul>

구분	제1안	제2안
근거 및 자료	객관적이고 명확함	객관적이고 명확함
위법성 판단절차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종합감사에서 법령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교부세 반환/감액 단체 및 금액 확인
자료입수	감사원, 행정자치부(감사관실)	행정자치부(교부세과)
수용성/실효성	소송제기 시 법령해석상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정부합동감사 등을 통해 객관성이 보장되어 수용성이 높으며, 준법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유도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음	법령위반과 함께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여 교부세 감액이 확정된 지자체가 대상이므로 수용성은 높으나, 지출을 수반하지 않고 법령만 위반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어 실효성이 낮음
※ 비고	법령위반 자치단체는 재정분석결과 우수단체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	

○ 검토 결과 : 제1안이 적절함

- 지방재정 관련 법령의무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여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1안이 바람직함

\*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판결이 확정된 해당연도의 재정분석 지표값에 반영

○ 법령을 위반한 지자체 대상

- 정부정책에 대한 법령위반을 기준으로 평가(현년도 기준)

<표 3-8> 재정법령준수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재정법령 준수 (-45점)	1.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위반 사례*가 있는가? - 지방재정법 위반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 위반하지 않음 * 지방재정법 위반(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 부적정, 세출예산집행 부적정 등),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조정 의무위반 등)	-45 (-15) (-15) (-15) (0)

□ 채무감축 노력도(-10점)/(효율성 분야)

○ 채무관리계획 대비 채무상환 실적 평가

<표 3-9> 채무감축 노력도 체크리스트

지표	항목	평가내용	배점
채무감축 노력도 (-10점)	적용노력 (-5점)	1. 지방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하였는가? - 예 - 아니오	-5 (0) (-5)
	적용결과 (-5점)	2. 지방채무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였는가? - 예 - 아니오	-5 (0) (-5)

2) 재정 투명성

○ 지방재정 공시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활동을 평가

<표 3-10> 재정공시 노력도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재정공시 노력도 (15점)	1.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 4개 이상 (10) - 3개 (8) - 2개 (6) - 1개 (2) * 보도자료 배포, 일간지, 리플릿, 공보,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홍보실적	10 (10) (8) (6) (2)
	2.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 문서 가공이 가능한 한글, 엑셀 파일 등으로 제공 (2) - 홈페이지 상 재정공시 질의답변 코너 설치 또는 국민신문고 등 연계 (2) - 홈페이지 상 용어해설 제공 (1)	5 (2) (2) (1)

## 3) 재정분석 대응도

○ 재정분석 시 자치단체의 자료입력의 신속성·정확성 등 대응도에 대한 평가

<표 3-11> 재정분석 대응도 체크리스트

지표	항목	평가내용	배점
재정분석 대응성 (-10점)	자료입력의 신속성 (-5점)	1. 자료입력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 준수 - 미준수	-5 (0) (-5)
	자료입력의 정확성 (-5점)	2. 입력된 자료가 누락, 오류* 없이 정확한가? - 예 - 아니오 * 의회경비오류, 직접입력지표통계누락, 세출결산액 누락, 입력기한 외 수정요청 등	-5 (0) (-5)

## 4) 정책유도 지표의 적용

(1) 대안 1 : 5개 신규지표 모두 사용

○ 분석방법

• 재정법령준수	: -45점 (건전성)
•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 -10점 (건전성)
• 채무감축 노력도	: -10점 (효율성)
• 재정공시 노력도	: 15점 (효율성)
• 재정분석 대응도	: -10점 (총점)

○ 분석 결과

- 특별·광역시, 도의 경우 총점, 건전성 및 효율성에서 점수 및 순위의 변화가 발생하나 등급변화는 발생하지 않음  
예) 서울 : 총점(5위→7위), 건전성(6위→7위), 효율성(5위→4위)
- 불교부단체(경기)의 경우 일부 등급변화 발생  
예) 수원 : 총점(14위,나→32위,다), 건전성(17위,나→33위,다), 효율성(35위→38위)

화성 : 총점( 6위,가→18위,나), 건전성( 4위,가→16위,나), 효율성(34위→39위)

성남 : 총점(2위→3위), 건전성(1위→7위), 효율성(11위→17위)

고양 : 총점(26위,다→59위,라), 건전성(24위,다→58위,라), 효율성(51위→44위)

- 기초자치단체(법령위반 상위단체)의 경우 총점, 건전성 및 효율성에서 등급변화가 일어남

예) 총점과 건전성 등급변화 : 경기 광주시, 충주시, 제천시, 전주시, 순천시, 대구 달성군, 옥천군, 담양군,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예) 총점, 건전성 및 효율성 모두 등급변화 : 순창군, 부산 중구

## (2) 대안 2 : 3개 정책유도 지표 사용

### ○ 분석방법

- |                              |              |
|------------------------------|--------------|
| • 재정법령준수                     | : -45점 (건전성) |
| • 재정공시 노력도                   | : 15점 (효율성)  |
| • 재정분석 대응도                   | : -10점 (총점)  |
| *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채무감축 노력도 지표 제외 |              |

- 분석결과 : (대안 1)과 동일함

## (3) 검토 결과

- 정책유도 분야 5개 지표를 적용한 대안 1의 적용결과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10점)와 채무감축노력도(-10점) 지표를 제외한 3개 지표를 적용한 대안 2의 적용결과가 동일하게 분석됨
- 따라서, 지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책유도 분야 지표의 간소화에 해당되는 3개 신규지표 적용안인 대안 2를 채택함

#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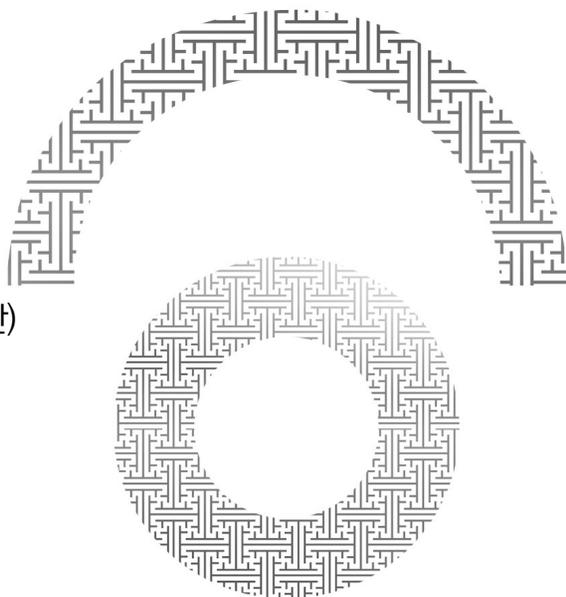
## 2016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제1절 지표체계 대안

제2절 2016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제3절 분야별, 지표별 가중치 조정

제4절 평가방식 검토





## 제4장

## 2016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 제1절 지표체계 대안

## 1. 기본방향

- 2015년도에 개편한 3개 분야 지표체계를 유지
  - 분야 :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책임성 분야
    - \* 정책유도 분야는 재정책임성 분야로 명칭 변경
- 정량지표 신규 도입
  - 통합유동부채비율(건전성 분야)
  -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효율성 분야)(사전예고지표임)
- 재정책임성 분야 지표 신규 도입
  - 재정법령준수(-45점)
  - 재정공시 노력도(+15점)
  - 재정분석 대응도(-10점)

## 2. 대안 검토

## 1) (제1안) 3개 분야 지표체계 유지

- 전년도에 개편한 건전성과 효율성 및 책임성 분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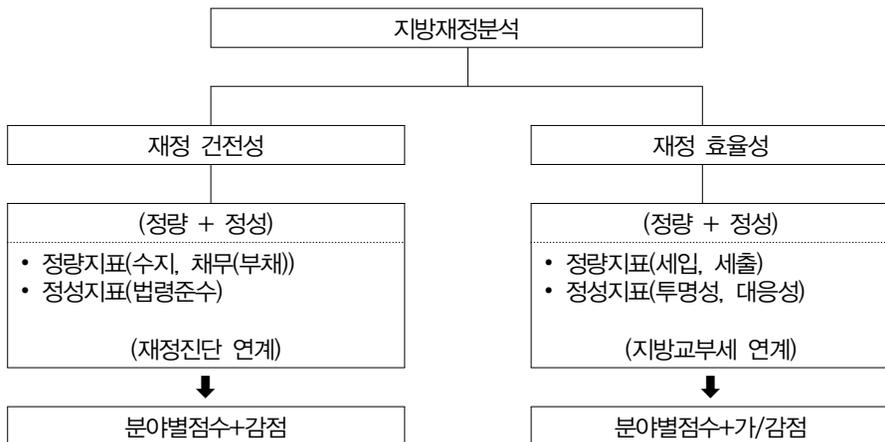
<그림 4-1> 재정분석 지표체계 (제1안)



2) (제2안) 2개 분야 지표체계

- 건전성과 효율성 분야로 구성

<그림 4-2> 재정분석 지표체계 (제2안)



## 3) 대안 비교

구분	제1안	제2안
지표체계	- 재정건전성·재정효율성 및 재정 책임성 분야 지표로 구성	-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분야로 구성
장점	- 기존 지표체계를 유지하여 안정성 확보 - 책임성 분야의 지표를 별도로 분류함으로써 지표의 체계적 관리 및 지표 변경 시 유연한 대처 가능	- 건전성·효율성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재정분석의 취지에 부합
단점	- 건전성·효율성 분야 점수와 종합 점수가 다른 신호를 줄 수 있어 혼란 우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책임성분야는 지표특성 별 각 건전성, 효율성 및 총점에서 가(감)점	- 기존 지표체계가 변동되어 안정성 미흡 - 지표가 혼재하여 지표관리 복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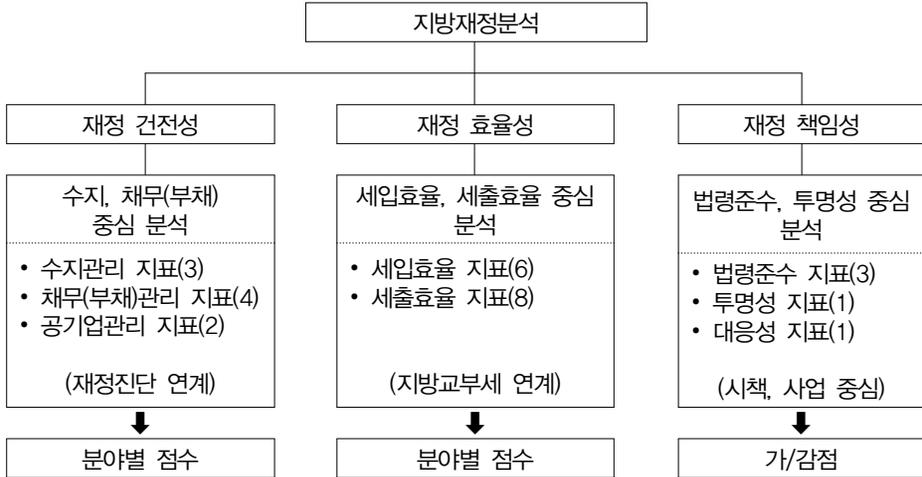
- 지표체계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정성지표의 특성과 관리 측면을 감안하여 별도 분류하는 제1안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제2절 2016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 1. 2016년 지표체계(안)

- 전년도에 개편한 3개 분야(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책임성)의 지표체계를 유지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신규지표 추가
- 통합부채 정보 중 유동성 평가를 위해 통합유동부채비율 신규 추가
  - 효율성 관련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지표 추가
  - 재정책임성 분야에서 재정법령준수 지표 등 신규 추가

<그림 4-3> 2016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안)



<표 4-1> 2016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분야	부문	재정분석지표	비고
재정 건전성 (9개)	수지 관리	통합재정수지비율	국제기준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복식부기
	채무(부채) 관리	관리채무비율	BTL지급액 포함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복식부기
		통합유동부채비율	신규 지표
		실질채무비율	광역만 해당
	공기업 관리	공기업부채비율	공단 포함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공단 포함
재정 효율성 (14개)	세입효율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세출효율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명칭 변경

분야	부문	재정분석지표	비고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명칭 변경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인건비 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제외대상 확대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신규 지표
재정 책임성 (5개)	법령준수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5점)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5점)	
		재정법령준수 (-45점)	신규지표
	투명성	재정공시 노력도 (15점)	신규지표
대응성	재정분석 대응도 (-10점)	신규지표	
※ 재정책임성 분야 지표는 가점/감점			

## 2. 2015년도와 비교

### 1) 지표체계

-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전년도에 개편한 3개 분야(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책임성) 체계를 유지

### 2) 재정책임성 분야 지표 신규 도입

- 재정책임성 분야 지표는 재정법령준수, 재정투명성, 재정분석 대응성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여 신규 도입

분야	지표	가/감점	적용
재정 책임성	재정법령준수	페널티(-45점)	건전성에 반영
	재정공시노력도	인센티브(+15점)	효율성에 반영
	재정분석대응도	페널티(-10점)	총점에 반영

\* 기존 지표 :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 3) 건전성, 효율성 지표 개선

- (부채관련 신규지표) 자치단체 통합부채관리를 위한 정책기조와 연계하여 통합유동부채비율을 개발하여 분석
- (공기업관련 개선) 공기업부채비율,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지표에서 지방공단을 포함
- (행사·축제경비 효율화 추진)
  - 2015년 결산은 정부 또는 시·도 시책에 협조하여 개최하는 전국규모 순회행사\*(박람회 등), 시도규모 순회행사(도민체육대회 등) 등은 행사·축제 산정 상 예외로 인정
    - \* 부산 ITU 전권회의(미래부 주관), 부산 아세안특별정상회의(외교부 주관), 강원도 생물 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환경부 주관) 등
    - ※ 2016년 결산부터는 금년도에 도입예정인 행사축제 총액한도제와 연계하여 기재부, 문체부에서 인정한 행사·축제 이외 전국규모 순회행사(박람회 등), 시도규모 순회행사(도민체육대회 등) 등은 행사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하여 총액한도에서 제외
- (민간위탁금관련)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15년 사전예고지표) 지표를 신규 도입하여 효율성 분야에 포함하여 분석
  -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법정위탁 등 의무위탁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움
  -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자체 위탁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분석
- (지표명칭 변경)
  - 민간이전경비비율 → 지방보조금비율
  - 출연출자금비율 → 출자출연전출금비율

### 4) 자치단체 법령준수 및 재정운영노력 유도 개선

- 인센티브 및 페널티 성격의 법령준수 및 재정운영노력 관련 지표를 추가하여 분석

- 재정법령준수(-45점), 재정공시노력도(+15점), 재정분석대응도(-10점)

#### 5) 평가지표의 운용 방향 왜곡 개선

- 재정분석 지표로 인해 재정운용방향이 왜곡되는 부분을 파악하여 개선(행사 축제경비, 민간위탁금관련)

#### 6) 현지실사 개선

- 재정책임성 분야 지표의 도입과 관련하여 재정법령준수 등 현지실사 후 위법적인 재정운용사례 발견 시 점수를 차감하는 페널티 제도 도입

<표 4-2> 2015년도와 2016년도 지표체계 비교

2015년 지표		2016년 지표(안)	
분야	지표	분야	지표
I.재 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I.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실질수지비율		2. 실질수지비율
	3. 경상수지비율		3. 경상수지비율
	4. 관리채무비율		4. 관리채무비율
	5. 현금자산대비부채비율		5. 현금자산대비부채비율
	6. 실질채무비율		6. 실질채무비율
	7. 공기업부채비율		7. (신규)통합유동부채비율
	8.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8. 공기업부채비율(공단 포함)
II.재 정 효율성	9.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II.재정 효율성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공단 포함)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2.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3.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3.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14. 탄력세율적용노력도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5.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16.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16.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명칭변경)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명칭변경)		

2015년 지표		2016년 지표(안)	
분야	지표	분야	지표
	17.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18. 인건비 절감노력도		19. 인건비 절감노력도
	19.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20.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20.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21.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21.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22.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b>23. (신규)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b>
Ⅲ.정 책유도	22.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Ⅲ.재정 책임성	24.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23.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25.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24. 위탁금편성후 보조금집행		<b>26. (신규)재정법령준수</b>
			<b>27. (신규)재정공시노력도</b>
			<b>28. (신규)재정분석대응도</b>

### 제3절 분야별, 지표별 가중치 조정

#### 1. 분야별 배점 검토

##### (1) 검토사항

- 효율성 분야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
  - 현행 : 건전성 대 효율성 : 500점 : 500점
  - 조정 : 건전성 대 효율성 : 400점 : 600점

##### (2) 시뮬레이션 결과

- 특별·광역시
  - 총점 및 건전성 분야에서 순위 변화가 일부 있으나 등급 변화는 없음

## ○ 도

- 총점 기준으로 강원과 경기도 서로 순위와 등급이 바뀜
  - 강원 (7→8, 나→다), 경기 (8→7, 다→나)
- 건전성 및 효율성 분야 변화는 없음

## ○ 시

- 총점 기준으로 순위변화가 일부 있으나 등급 변화는 없음
- 건전성 및 효율성 분야 변화는 없음

## ○ 군

- 총점 기준으로 일부 순위와 등급 변화 있음
  - 충북 단양군 (8위→12위, 가→나)
- 건전성 및 효율성 분야는 변화 없음

## ○ 자치구

- 총점 기준으로 일부 순위와 등급 변화 있음
  - 서울 종로 (6위→8위, 가→나)
- 건전성 및 효율성 분야는 변화 없음
  - ▷ 현행대로 유지 : 건전성 대 효율성 : 500점 : 500점

## 2. 지표별 가중치 검토

- 신규 지표 도입으로 인한 지표 간 가중치 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재정분석의 실효성 개선을 위해 기존 지표들의 가중치 조정이 필요
- 전문가(학계, 실무) 의견조사 및 2015년도 시뮬레이션 결과에 기초하여 가중치 조정(안) 마련
  - (건전성 분야)
    - 관리채무비율 감소(광역:20%→18%)(기초:30%→27%)
    - 현금자산대비 부채비율 감소 (15%→14%)

- 실질채무비율 감소 (10%→9%)
- 통합유동부채비율 4% (신규)
- (효율성 분야)
  - 탄력세율적용노력도 감소 (8%→6%)
  -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감소 (12%→10%)
  -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4% (신규)
- 재정책임성 분야 지표 포함
  - 재정법령준수 (-45점)
  - 재정공시노력도 (+15점)
  - 재정분석대응도 (-10점)

<표 4-3> 2016년도 재정분석지표 가중치 조정(안)

분야	부분	재정분석지표	2015년 가중치	2016년 조정(안)	비고
재정 진전성	수지 관리	통합재정수지비율	15%	15%	
		실질수지비율	10%	10%	
		경상수지비율	10%	10%	
	채무(부채) 관리	관리채무비율	20%(광역), 30%(기초)	18%(광역) 27%(기초)	-2%p -3%p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5%	14%	-1%p
		통합유동부채비율		4%	신규
		실질채무비율	10%(광역만)	9%(광역)	-1%p
	공기업 관리	공기업부채비율	10%	10%	
총자산대비영업이익률		10%	10%		
재정 효율성	세입 효율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8%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8%	8%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7%	7%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7%	7%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7%	7%	
		탄력세율적용노력도	8%	6%	-2%p

분야	부문	재정분석지표	2015년 가중치	2016년 조정(안)	비고
	세출 효율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2%	10%	-2%p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8%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8%	8%	
		인건비 절감노력도	7%	7%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6%	6%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7%	7%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7%	7%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4%	신규
재정 책임성	법령준수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5점	-5점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5점	-5점	
		재정법령준수		-45점	신규
	투명성	재정공시노력도		+15점	신규
	대응성	재정분석대응도		-10점	신규
※ 재정책임성 지표는 분야별, 총점에서 가점/감점					

## 제4절 평가방식 검토

### 1. 현황 및 문제점

-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세종시, 제주도)의 경우 민간이전경비, 행사 축제경비, 통합재정수지 관련 지표의 평가방법 개선 요청
- 현황 : 세종시와 제주도의 지표 값은 동종자치단체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표 4-4> 연도별 민간이전경비 비율(%)

구 분	2012	2013	2014
세종시	13.35	12.44	11.24
특별·광역시평균	4.59	3.13	4.04
제주도	14.61	14.31	15.38
도평균	3.67	3.66	3.78

\* 세종시와 제주도의 경우 민간이전경비율 이외에 행사축제경비비율, 통합재정수지비율 등도 특별·광역시 평균, 도 평균과 비교하여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문제점

-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일자치단체 구조상 타 광역단체와 달리, 직접 집행하는 민간이전경비 및 행사축제경비 예산액이 과다
- 현행 평가는 동종단체 상대평가로 실시되고 있어 불리하게 적용됨

2. 자치단체 건의(안)

○ 현행

- 동종자치단체별 상대적 등급제\*를 기준으로 등급 부여
  - \* 최대값 ~ 최소값의 범위를 3등급 구간으로 구분하여 점수부여
- 현재 상태(민간이전경비비율, 60%)와 개선도(증감률, 40%) 동시 반영

○ 건의 내용

- 지표 평균 산정시 제외하고, 별도 평가지표 신설 건의
- (1안) 민간이전경비비율 제외, 민간이전경비증감률 전액 반영
  - \* 현재 상태는 미반영, 전년대비 개선도만 반영하여 노력지표 중심 평가
- (2안) 민간이전경비비율은 절대평가, 증감률은 상대평가 기준 반영
  - \* 현행 제도와 같이 현재 상태와 개선도를 동시에 반영하되, 동종단체 상대평가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절대평가 구간 마련
  - \* ex) 11 ~ 13% 미만 1등급, 13 ~ 15% 미만 2등급, 15 ~ 17% 3등급 등

&lt;표 4-5&gt; 자치단체 유형별 민간이전경비비율 평균(%)

구분	민간이전경비비율					증감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전국평균	4.30	4.88	8.18	8.37	8.54	13.81	9.86	6.09
특별광역시 평균	2.49	2.13	4.59	3.13	3.01	2.97	4.73	-3.05
도 평균	1.81	2.07	3.67	3.66	3.78	6.62	7.12	2.69
시 평균	6.29	7.79	12.58	12.83	12.87	9.84	10.42	2.67
군 평균	4.93	5.17	12.76	13.11	12.93	9.21	11.30	-0.15
자치구 평균	9.15	13.34	17.69	18.21	18.99	101.89	28.93	15.19

### 3.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 1)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 관련 지표

현행: 비율지표(60%): 증감률지표(40%)

개선안

– 제1안: 비율지표(50%): 증감률지표(50%)

제2안: 비율지표(40%): 증감률지표(60%)

제3안: 비율지표(30%): 증감률지표(70%)

제4안: 증감률지표(100%)

분석방법

○ 2015년 재정분석 지표 자료 및 가중치를 이용하여 민간이전경비와 행사축제경비 지표의 비율 : 증감률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시

– 재정건전성 500점, 재정효율성 500점 재정책임성 감점 -10점

○ 제1안 (비율지표 : 증감률지표: 50:50)

자치단체	2015년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총점		건전성		효율성		총점		건전성		효율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서울본청	5	나	6	나	5	나	5	나	6	나	4	나

자치 단체	2015년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총점		건전성		효율성		총점		건전성		효율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부산 본청	7	나	7	나	6	나	7	나	7	나	7	나
대구 본청	4	나	4	나	3	나	4	나	4	나	3	나
인천 본청	8	다	8	다	4	나	8	다	8	다	5	나
광주 본청	6	나	5	나	7	나	6	나	5	나	6	나
대전 본청	2	나	3	나	2	나	2	나	3	나	2	나
울산 본청	1	가	1	가	1	가	1	가	1	가	1	가
세종 본청	3	나	2	나	8	다	3	나	2	나	8	다
경기 본청	8	다	9	다	1	가	8	다	9	다	1	가
강원 본청	7	나	5	나	8	다	7	나	5	나	8	다
충북 본청	5	나	5	나	6	나	4	나	5	나	6	나
충남 본청	3	나	3	나	3	나	3	나	3	나	3	나
전북 본청	6	나	7	나	4	나	6	나	7	나	4	나
전남 본청	4	나	4	나	7	나	5	나	4	나	7	나
경북 본청	2	가	2	가	5	나	2	가	2	가	5	나
경남 본청	1	가	1	가	2	가	1	가	1	가	2	가
제주 본청	9	다	8	다	9	다	9	다	8	다	9	다

## ○ 제2안 (비율지표 : 증감률지표: 40:60)

자치 단체	2015년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총점		건전성		효율성		총점		건전성		효율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서울 본청	5	나	6	나	5	나	5	나	6	나	4	나
부산 본청	7	나	7	나	6	나	7	나	7	나	8	다
대구 본청	4	나	4	나	3	나	4	나	4	나	3	나
인천 본청	8	다	8	다	4	나	8	다	8	다	5	나
광주 본청	6	나	5	나	7	나	6	나	5	나	6	나
대전 본청	2	나	3	나	2	나	2	나	3	나	2	나
울산 본청	1	가	1	가	1	가	1	가	1	가	1	가
세종 본청	3	나	2	나	8	다	3	나	2	나	7	나
경기 본청	8	다	9	다	1	가	8	다	9	다	1	가
강원 본청	7	나	5	나	8	다	7	나	5	나	8	다
충북 본청	5	나	5	나	6	나	4	나	5	나	6	나
충남 본청	3	나	3	나	3	나	3	나	3	나	3	나
전북 본청	6	나	7	나	4	나	6	나	7	나	4	나
전남 본청	4	나	4	나	7	나	5	나	4	나	7	나
경북 본청	2	가	2	가	5	나	2	가	2	가	5	나
경남 본청	1	가	1	가	2	가	1	가	1	가	2	가
제주 본청	9	다	8	다	9	다	9	다	8	다	9	다

○ 제3안 (비율지표 : 증감률지표: 30:70)

자치 단체	2015년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총점		건전성		효율성		총점		건전성		효율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서울 본청	5	나	6	나	5	나	5	나	6	나	4	나
부산 본청	7	나	7	나	6	나	7	나	7	나	8	다
대구 본청	4	나	4	나	3	나	4	나	4	나	3	나
인천 본청	8	다	8	다	4	나	8	다	8	다	5	나
광주 본청	6	나	5	나	7	나	6	나	5	나	7	나
대전 본청	2	나	3	나	2	나	2	나	3	나	2	나
울산 본청	1	가	1	가	1	가	1	가	1	가	1	가
세종 본청	3	나	2	나	8	다	3	나	2	나	6	나
경기 본청	8	다	9	다	1	가	8	다	9	다	1	가
강원 본청	7	나	5	나	8	다	7	나	5	나	8	다
충북 본청	5	나	5	나	6	나	4	나	5	나	4	나
충남 본청	3	나	3	나	3	나	3	나	3	나	3	나
전북 본청	6	나	7	나	4	나	6	나	7	나	5	나
전남 본청	4	나	4	나	7	나	5	나	4	나	7	나
경북 본청	2	가	2	가	5	나	2	가	2	가	6	나
경남 본청	1	가	1	가	2	가	1	가	1	가	2	가
제주 본청	9	다	8	다	9	다	9	다	8	다	9	다

## ○ 제4안 (증감률지표: 100%)

자치 단체	2015년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총점		건전성		효율성		총점		건전성		효율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서울 본청	5	나	6	나	5	나	6	나	6	나	4	나
부산 본청	7	나	7	나	6	나	7	나	7	나	8	다
대구 본청	4	나	4	나	3	나	4	나	4	나	3	나
인천 본청	8	다	8	다	4	나	8	다	8	다	5	나
광주 본청	6	나	5	나	7	나	5	나	5	나	7	나
대전 본청	2	나	3	나	2	나	2	나	3	나	2	나
울산 본청	1	가	1	가	1	가	1	가	1	가	1	가
세종 본청	3	나	2	나	8	다	3	나	2	나	6	나
경기 본청	8	다	9	다	1	가	8	다	9	다	1	가
강원 본청	7	나	5	나	8	다	7	나	5	나	8	다
충북 본청	5	나	5	나	6	나	4	나	5	나	3	나
충남 본청	3	나	3	나	3	나	3	나	3	나	6	나
전북 본청	6	나	7	나	4	나	5	나	7	나	5	나
전남 본청	4	나	4	나	7	나	6	나	4	나	7	나
경북 본청	2	가	2	가	5	나	2	가	2	가	4	나
경남 본청	1	가	1	가	2	가	1	가	1	가	2	가
제주 본청	9	다	8	다	9	다	9	다	8	다	9	다

분석결과

- 민간이전경비비율 지표와 행사축제경비비율 지표의 비율과 증감률의 비율을 바꿔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비율 : 증감률을 기존 60:40에서 50:50, 40:60, 30:70으로 변경하여 분석한 결과 40:60, 30:70으로 변경했을 경우 세종시의 효율성 순위 및 등급변화가 나타남
    - 40:60 세종시 효율성 (8위 다 등급 → 7위 나 등급)
    - 30:70 세종시 효율성 (8위 다 등급 → 6위 나 등급)
  - 제주도의 경우 순위와 등급 변화가 없음
- 증감률 지표의 가중치를 비율 지표보다 높게 했을 경우에 세종시의 경우에만 효율성 순위 및 등급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증감률 지표의 가중치를 비율 지표보다 높게 하는 것은 분석지표 구성 취지에 맞지 않음
  - 세종시 효율성 분야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어서 지표 변경의 실효성이 적음
- 증감률을 100% 적용했을 시 세종시 효율성 분야에만 영향을 미침
  - 세종시 효율성 (8위 다 등급 → 6위 나 등급)
-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두 개의 광역단체만을 위해 지표체계 변경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2) 수지 관련 지표

현행

- 수지 관련 지표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의 경우 비율 지표만을 이용하여 분석

개선안 : 비율지표와 증감률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

- 제1안: 비율 60% 증감률 40%

- 제2안: 비율 50% 증감률 50%
- 제3안: 비율 40% 증감률 60%
- 제4안: 증감률 100%

분석방법

- 2015년 재정분석 지표 자료 및 가중치를 이용하여 수지관련 지표에 대한 개선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시
  - 재정건전성 500점, 재정효율성 500점 재정책임성 감점 -10점
- 제1안 (비율지표 : 증감률지표: 60:40)

자치 단체	2015년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총점		건전성		효율성		총점		건전성		효율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서울 본청	5	나	6	나	5	나	5	나	5	나	5	나
부산 본청	7	나	7	나	6	나	7	나	7	나	6	나
대구 본청	4	나	4	나	3	나	4	나	4	나	3	나
인천 본청	8	다	8	다	4	나	8	다	8	다	4	나
광주 본청	6	나	5	나	7	나	6	나	6	나	7	나
대전 본청	2	나	3	나	2	나	2	나	3	나	2	나
울산 본청	1	가	1	가	1	가	1	가	1	가	1	가
세종 본청	3	나	2	나	8	다	3	나	2	나	8	다
경기 본청	8	다	9	다	1	가	6	나	8	다	1	가
강원 본청	7	나	5	나	8	다	8	다	6	나	8	다
충북 본청	5	나	5	나	6	나	7	나	7	나	6	나

자치 단체	2015년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총점		건전성		효율성		총점		건전성		효율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충남 본청	3	나	3	나	3	나	3	나	3	나	3	나
전북 본청	6	나	7	나	4	나	4	나	4	나	4	나
전남 본청	4	나	4	나	7	나	5	나	5	나	7	나
경북 본청	2	가	2	가	5	나	2	가	2	가	5	나
경남 본청	1	가	1	가	2	가	1	가	1	가	2	가
제주 본청	9	다	8	다	9	다	9	다	9	다	9	다

○ 제2안 (비율지표 : 증감률지표: 50:50)

자치 단체	2015년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총점		건전성		효율성		총점		건전성		효율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서울 본청	5	나	6	나	5	나	5	나	5	나	5	나
부산 본청	7	나	7	나	6	나	7	나	7	나	6	나
대구 본청	4	나	4	나	3	나	4	나	4	나	3	나
인천 본청	8	다	8	다	4	나	8	다	8	다	4	나
광주 본청	6	나	5	나	7	나	6	나	6	나	7	나
대전 본청	2	나	3	나	2	나	2	나	3	나	2	나
울산 본청	1	가	1	가	1	가	1	가	1	가	1	가
세종 본청	3	나	2	나	8	다	3	나	2	나	8	다

자치 단체	2015년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총점		건전성		효율성		총점		건전성		효율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경기 본청	8	다	9	다	1	가	5	나	7	나	1	가
강원 본청	7	나	5	나	8	다	8	다	5	나	8	다
충북 본청	5	나	5	나	6	나	7	나	7	나	6	나
충남 본청	3	나	3	나	3	나	3	나	3	나	3	나
전북 본청	6	나	7	나	4	나	4	나	4	나	4	나
전남 본청	4	나	4	나	7	나	6	나	5	나	7	나
경북 본청	2	가	2	가	5	나	2	가	1	가	5	나
경남 본청	1	가	1	가	2	가	1	가	2	가	2	가
제주 본청	9	다	8	다	9	다	9	다	9	다	9	다

## ○ 제3안 (비율지표 : 증감률지표: 40:60)

자치 단체	2015년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총점		건전성		효율성		총점		건전성		효율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서울 본청	5	나	6	나	5	나	5	나	4	나	5	나
부산 본청	7	나	7	나	6	나	7	나	7	나	6	나
대구 본청	4	나	4	나	3	나	4	나	4	나	3	나
인천 본청	8	다	8	다	4	나	8	다	8	다	4	나
광주 본청	6	나	5	나	7	나	6	나	6	나	7	나

자치 단체	2015년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총점		건전성		효율성		총점		건전성		효율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대전 본청	2	나	3	나	2	나	2	나	2	나	2	나
울산 본청	1	가	1	가	1	가	1	가	1	가	1	가
세종 본청	3	나	2	나	8	다	3	나	3	나	8	다
경기 본청	8	다	9	다	1	가	5	나	5	나	1	가
강원 본청	7	나	5	나	8	다	8	다	6	나	8	다
충북 본청	5	나	5	나	6	나	7	나	8	다	6	나
충남 본청	3	나	3	나	3	나	3	나	3	나	3	나
전북 본청	6	나	7	나	4	나	4	나	4	나	4	나
전남 본청	4	나	4	나	7	나	6	나	7	나	7	나
경북 본청	2	가	2	가	5	나	2	가	1	가	5	나
경남 본청	1	가	1	가	2	가	1	가	2	가	2	가
제주 본청	9	다	8	다	9	다	9	다	9	다	9	다

○ 제4안 (증감률지표: 100%)

자치 단체	2015년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총점		건전성		효율성		총점		건전성		효율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서울 본청	5	나	6	나	5	나	3	나	4	나	5	나
부산 본청	7	나	7	나	6	나	8	다	7	나	6	나

자치 단체	2015년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총점		건전성		효율성		총점		건전성		효율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대구 본청	4	나	4	나	3	나	5	나	5	나	3	나
인천 본청	8	다	8	다	4	나	7	나	8	다	4	나
광주 본청	6	나	5	나	7	나	6	나	6	나	7	나
대전 본청	2	나	3	나	2	나	2	나	1	가	2	나
울산 본청	1	가	1	가	1	가	1	가	1	가	1	가
세종 본청	3	나	2	나	8	다	4	나	3	나	8	다
경기 본청	8	다	9	다	1	가	4	나	4	나	1	가
강원 본청	7	나	5	나	8	다	8	다	6	나	8	다
충북 본청	5	나	5	나	6	나	7	나	8	다	6	나
충남 본청	3	나	3	나	3	나	3	나	3	나	3	나
전북 본청	6	나	7	나	4	나	5	나	5	나	4	나
전남 본청	4	나	4	나	7	나	6	나	7	나	7	나
경북 본청	2	가	2	가	5	나	1	가	1	가	5	나
경남 본청	1	가	1	가	2	가	2	가	2	가	2	가
제주 본청	9	다	8	다	9	다	9	다	9	다	9	다

□ 분석결과

- 수지 지표 (통합재정수지, 실질수지, 경상수지)에 증감률 지표를 더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비율 : 증감률을 60:40으로 구성할 경우 제주도 건전성에서 순위 변화가 나타남
    - 제주도 건전성 (8위 다 등급 → 9위 다 등급)
  - 증감률을 50:50으로 적용할 경우 제주도 건전성에서 순위 변화가 나타남
    - 제주도 건전성 (8위 다 등급 → 9위 다 등급)
  - 증감률을 40:60으로 적용할 경우 제주도, 세종시 건전성에서 순위 변화가 나타남
    - 세종시 건전성 (2위 나 등급 → 3위 나 등급)
    - 제주도 건전성 (8위 다 등급 → 9위 다 등급)
  - 증감률 100%로 적용할 경우, 세종시 총점, 건전성과 제주도 건전성에서 순위 변화가 나타남
    - 세종시 총점 (총점 3위 나 등급 → 4위 나 등급) 건전성 (2위 나 등급 → 3위 나 등급)
    - 제주도 건전성 (8위 다 등급 → 9위 다 등급)
- 수지 지표에 증감률을 더하여 분석한 결과, 세종시와 제주도의 건전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수지 지표에 증감률을 더하여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3) 수지 관련 지표 및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00% 적용 시

□ 현행

- 수지 관련 지표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의 경우 비율 지표만을 이용
-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경비 비율과 증감률을 60:40 적용

개선안 : 증감률 지표만을 적용

- 통합재정수지증감률 100%
- 실질수지증감률 100%
- 경상수지증감률 100%
- 민간이전경비증감률 100%
- 행사축제경비증감률 100%

분석방법

- 2015년 재정분석 지표 자료 및 가중치를 이용하여 개선안 지표에 대한 시물레이션 실시
  - 재정건전성 500점, 재정효율성 500점 재정책임성 감점 -10점
- 증감률지표: 100% 적용 시

자치 단체	2015년 결과						시물레이션 결과					
	총점		건전성		효율성		총점		건전성		효율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서울 본청	5	나	6	나	5	나	4	나	4	나	4	나
부산 본청	7	나	7	나	6	나	8	다	7	나	8	다
대구 본청	4	나	4	나	3	나	5	나	5	나	3	나
인천 본청	8	다	8	다	4	나	7	나	8	다	5	나
광주 본청	6	나	5	나	7	나	6	나	6	나	7	나
대전 본청	2	나	3	나	2	나	2	나	1	가	2	나
울산 본청	1	가	1	가	1	가	1	가	1	가	1	가
세종 본청	3	나	2	나	8	다	3	나	3	나	6	나

자치 단체	2015년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총점		건전성		효율성		총점		건전성		효율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경기 본청	8	다	9	다	1	가	3	나	4	나	1	가
강원 본청	7	나	5	나	8	다	8	다	6	나	8	다
충북 본청	5	나	5	나	6	나	6	나	8	다	3	나
충남 본청	3	나	3	나	3	나	4	나	3	나	6	나
전북 본청	6	나	7	나	4	나	5	나	5	나	5	나
전남 본청	4	나	4	나	7	나	7	나	7	나	7	나
경북 본청	2	가	2	가	5	나	1	가	1	가	4	나
경남 본청	1	가	1	가	2	가	2	가	2	가	2	가
제주 본청	9	다	8	다	9	다	9	다	9	다	9	다

분석결과

- 수지 지표 및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경비에서 증감률만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세종시 건전성 (2위 나 등급 → 3위 나 등급) 효율성 (8위 다 등급 → 6위 나 등급)
  - 제주도 건전성 (8위 다 등급 → 9위 다 등급)
- 증감률만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세종시와 제주도의 건전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증감률만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 〈부록 1〉 지방재정 관련 법령위반 규정

### (사례 1) 사회보장기본법 사전협의 이행규정 위반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26호, 2015.7.24]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사례 2) 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 사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5.12.10.>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방채 발행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 1의2.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한 경우: 같은 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한 금액 이내
- 1의3.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경우: 같은 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금액 이내
- 1의4.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출한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 1의5.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의무에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경우: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금액 이내
- 1의6.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 이내
- 1의7.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한 금액 이내
- 1의8.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 명령 또는 초과액의 발생에 따른 반환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또는 그 초과액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심사 결과를

- 따르지 아니하고 재정투자사업에 지출한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 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 2의2.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5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한 경우: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3.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4.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경비를 서로 이용한 경우: 예산의 이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5.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전용(轉用) 범위를 위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예산의 전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금액 이내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반환 명령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초과액 반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 명령을 한 금액 이내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수령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하는 금액 이내
- 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0. 그 밖에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지방자치법」 제16조 또는 제171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 〈부록 2〉 건전성/효율성 배점 조정 시뮬레이션

### ○ 특별·광역시

건전성 500 효율성 500 책임성 (재난관리기금+상생발전기금)							건전성 400 효율성 600 책임성 (재난관리기금+상생발전기금)						
자치 단체명	총점		건전성		효율성		자치 단체명	총점		건전성		효율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울산 본청	1	가	1	가	1	가	울산 본청	1	가	1	가	1	가
대전 본청	2	나	3	나	2	나	대전 본청	2	나	3	나	2	나
세종 본청	3	나	2	나	8	다	세종 본청	4	나	2	나	8	다
대구 본청	4	나	4	나	3	나	대구 본청	3	나	4	나	3	나
광주 본청	5	나	5	나	7	나	광주 본청	5	나	5	나	7	나
부산 본청	6	나	6	나	6	나	부산 본청	7	나	7	나	6	나
서울 본청	7	나	7	나	5	나	서울 본청	6	나	6	나	5	나
인천 본청	8	다	8	다	4	나	인천 본청	8	다	8	다	4	나

#### 총점기준

- 세종 (순위 3→4, 등급 변화 없음) 대구 (순위 4→3 등급 변화 없음) 서울 (순위 7→6 등급 변화 없음) 부산 (순위 6→7 등급 변화 없음)

#### 건전성 기준

- 부산 (순위 6→7 등급변화 없음) 서울 (순위 7→6 등급변화 없음)

#### 효율성 기준

- 순위변화 없음 등급변화 없음

○ 도

건전성 500 효율성 500 책임성 (재난관리기금+상생발전기금)							건전성 400 효율성 600 책임성 (재난관리기금+상생발전기금)						
자치 단체명	총점		건전성		효율성		자치 단체명	총점		건전성		효율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경남 본청	1	가	1	가	2	가	경남 본청	1	가	1	가	2	가
경북 본청	2	가	2	가	5	나	경북 본청	2	가	2	가	5	나
충남 본청	3	나	3	나	3	나	충남 본청	3	나	3	나	3	나
전남 본청	4	나	4	나	7	나	전남 본청	4	나	4	나	7	나
충북 본청	5	나	5	나	6	나	충북 본청	6	나	5	나	6	나
전북 본청	6	나	7	나	4	나	전북 본청	5	나	7	나	4	나
강원 본청	7	나	5	나	8	다	강원 본청	8	다	5	나	8	다
경기 본청	8	다	8	다	1	가	경기 본청	7	나	8	다	1	가
제주 본청	9	다	9	다	9	다	제주 본청	9	다	9	다	9	다

**총점기준**

- 충북 (순위 5→6 등급변화 없음) 전북 (6→5 등급변화 없음) 강원 (7→8 나→다) 경기 (8→7 다→나)

**건전성 기준**

- 변화 없음

**효율성 기준**

- 변화 없음

○ 시

건전성 500 효율성 500 책임성 (재난관리기금+상생발전기금)							건전성 400 효율성 600 책임성 (재난관리기금+상생발전기금)						
자치 단체명	총점		건전성		효율성		자치 단체명	총점		건전성		효율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경기 과천시	1	가	2	가	1	가	경기 과천시	1	가	2	가	1	가
경기 성남시	2	가	1	가	11	나	경기 성남시	2	가	1	가	11	나
경기 하남시	3	가	3	가	12	나	경기 하남시	4	가	3	가	12	나
경기 오산시	4	가	7	가	4	가	경기 오산시	3	가	7	가	4	가
경기 의왕시	5	가	13	나	13	나	경기 의왕시	5	가	13	나	13	나
경기 화성시	6	가	4	가	34	다	경기 화성시	6	가	4	가	34	다
경기 군포시	7	가	16	나	20	나	경기 군포시	8	가	16	나	20	나
전남 나주시	8	가	22	나	14	나	전남 나주시	7	가	22	나	14	나
경북 포항시	69	마	72	마	28	다	경북 포항시	68	라	72	마	28	다
경북 문경시	70	마	71	마	37	다	경북 문경시	70	마	71	마	37	다
전북 익산시	71	마	68	라	70	마	전북 익산시	71	마	68	라	70	마
강원 속초시	72	마	70	마	74	마	강원 속초시	73	마	70	마	74	마
충남 계룡시	73	마	73	마	48	다	충남 계룡시	72	마	73	마	48	다
강원 태백시	74	마	74	마	44	다	강원 태백시	74	마	74	마	44	다

총점기준

- 하남 (3→4) 오산 (4→3) 군포 (7→8) 나주 (8→7) 포항 (69→68) 속초 (72→73) 계룡 (73→72)

건전성 기준: 변화 없음    효율성 기준: 변화 없음

## ○ 군

건전성 500 효율성 500 책임성 (재난관리기금+상생발전기금)							건전성 400 효율성 600 책임성 (재난관리기금+상생발전기금)						
자치 단체명	총점		건전성		효율성		자치 단체명	총점		건전성		효율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대구 달성군	1	가	2	가	2	가	대구 달성군	1	가	2	가	2	가
부산 기장군	2	가	3	가	3	가	부산 기장군	2	가	3	가	3	가
전남 무안군	3	가	1	가	38	다	전남 무안군	4	가	1	가	38	다
전남 장성군	4	가	10	나	6	가	전남 장성군	5	가	10	나	6	가
강원 정선군	5	가	29	다	1	가	강원 정선군	3	가	29	다	1	가
충남 태안군	6	가	4	가	24	나	충남 태안군	6	가	4	가	24	나
경남 의령군	7	가	5	가	34	다	경남 의령군	8	가	5	가	34	다
충북 단양군	8	가	8	가	35	다	충북 단양군	12	나	8	가	35	다
인천 옹진군	76	마	61	라	79	마	인천 옹진군	79	마	61	라	79	마
전남 영암군	77	마	68	라	69	라	전남 영암군	78	마	68	라	69	라
경북 성주군	78	마	79	마	40	다	경북 성주군	77	마	79	마	40	다
충북 진천군	79	마	81	마	13	나	충북 진천군	76	마	81	마	13	나
경북 영덕군	80	마	72	라	80	마	경북 영덕군	80	마	72	라	80	마
경북 칠곡군	81	마	82	마	27	다	경북 칠곡군	81	마	82	마	27	다
전남 강진군	82	마	80	마	81	마	전남 강진군	82	마	80	마	81	마

## 총점기준

- 무안 (3→4) 장성 (4→5) 의령 (7→8) 단양 (8→12 가→나) 옹진 (76→79) 영암 (77→78) 성주 (78→77) 진천 (79→76)

건전성 기준: 변화 없음 효율성 기준: 변화 없음

○ 자치구

건전성 500 효율성 500 책임성 (재난관리기금+상생발전기금)							건전성 400 효율성 600 책임성 (재난관리기금+상생발전기금)						
자치 단체명	총점		건전성		효율성		자치 단체명	총점		건전성		효율성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순위	등급
서울 서초구	1	가	1	가	2	가	서울 서초구	1	가	1	가	2	가
서울 금천구	2	가	15	나	3	가	서울 금천구	2	가	15	나	3	가
부산 동래구	3	가	6	가	10	나	부산 동래구	5	가	6	가	10	나
서울 강서구	4	가	8	나	8	나	서울 강서구	4	가	8	나	8	나
서울 송파구	5	가	27	다	1	가	서울 송파구	3	가	27	다	1	가
서울 종로구	6	가	4	가	41	다	서울 종로구	8	나	4	가	41	다
서울 양천구	7	가	17	나	6	가	서울 양천구	6	가	17	나	6	가
광주 광산구	63	마	58	라	63	마	광주 광산구	65	마	58	라	63	마
광주 서구	64	마	64	마	50	라	광주 서구	63	마	64	마	50	라
광주 북구	65	마	57	라	67	마	광주 북구	66	마	57	라	67	마
부산 동구	66	마	65	마	45	다	부산 동구	64	마	65	마	45	다
대전 동구	67	마	69	마	4	가	대전 동구	67	마	69	마	4	가
인천 남구	68	마	67	마	69	마	인천 남구	69	마	67	마	69	마
인천 부평구	69	마	68	마	56	라	인천 부평구	68	마	68	마	56	라

총점기준

- 부산 동래 (3→5) 서울 송파 (5→3) 서울종로 (6→8 가→나) 서울 양천 (7→6)  
광주 광산 (63→65) 광주 서구 (64→63) 광주 북구 (65→66) 부산 동구 (66→  
64) 인천 남구 (68→69) 인천 부평구 (69→68)

건전성 기준: 변화 없음 효율성 기준: 변화 없음

### 〈부록 3〉 2016년도 지방재정분석지표(안)

분야	분석지표	분석기간	대상회계	지표성격	비고
I. 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상향지표	국제기준
	2. 실질수지비율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3. 경상수지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복식부기
	4. 관리채무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5. 실질채무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광역단체
	6.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복식부기
	7. 통합유동부채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공사공 단, 출자출연	하향지표	통합부채
	8. 공기업부채비율	단년도	공기업회계	하향지표	공기업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단년도	공기업회계	상향지표	공기업
II. 재정 효율성	10. 차제세입비율(비율증감률)	5년 경향	일반회계	상향지표	
	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율)	2년	일반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13.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율)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율)	2년	일반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15.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16.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2년	통합회계	하향지표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2년	통합회계	하향지표	복식부기
19. 인건비 절감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분야	분석지표	분석기간	대상회계	지표성격	비고
	20.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21.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22. 행사추세경비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Ⅲ. 재정책임성	24. 재물관리기금전출금 확보	단년도	일반회계	페널티	
	25.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단년도	일반회계	페널티	
	26. 재정법령준수	2년	일반회계	페널티	
	27. 재정공시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인센티브	
	28. 재정분석 대응도	단년도	일반회계	페널티	

주 :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참고지표 : 21개

①지방채무잔액지수, ②지방채무상환비율, ③장래세대부담비율, ④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⑤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⑥예산집행률, ⑦정책사업투자비율, ⑧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⑨유동비율, ⑩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⑪경상재원비율, ⑫총예산대비 자체수입증가율, ⑬지방세수입 대비 인건비비율, ⑭부채증가액(증감률), ⑮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⑯관리채무부담비율, ⑰관리채무상환비율, ⑱의무지출비율, ⑲자본시설지출비율, ⑳지방보조금절감노력도, ㉑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

## □ 2016년 재정분석 지표 배점(가중치)

1차 분류	2차 분류	지표	비중(안)		
재정건전성 (500점)	수지 관리	통합재정수지비율	15%		
		실질수지비율	10%		
		경상수지비율	10%		
	채무 관리	관리채무비율	18%(광역) 27%(기초)		
		실질채무비율	9%(광역만)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4%		
		통합유동부채비율	4%	신규	
	공기업 관리	공기업부채비율	10%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0%		
재정효율성 (500점)	세입 효율 (45%)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8%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7%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7%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7%		
		탄력세율적용노력도	6%		
	세출 효율 (55%)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0%	명칭변경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8%	명칭변경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8%		
		인건비 절감노력도	7%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6%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7%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7%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4%	신규	
재정책임성	법령준수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5점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5점		
		재정법령준수	-45점	신규	
	대응성	재정분석 대응도	-10점	신규	
	투명성	재정공시 노력도	15점	신규	

※ 재정책임성 분야 지표는 분야별/총점에서 가/감점 부여

**별첨**

**지표별 정의표**

재정건전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합재정수지비율</li> <li>2. 실질수지비율</li> <li>3. 경상수지비율</li> <li>4. 관리채무비율</li> <li>5. 실질채무비율</li> <li>6.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li> <li>7. 통합유동부채비율</li> <li>8. 공기업부채비율</li> <li>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li> </ol>
재정효율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li> <li>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li> <li>12. 지방세채납액관리비율(증감률)</li> <li>13.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li> <li>14. 세외수입채납액관리비율(증감률)</li> <li>15.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li> <li>16.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li> <li>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li> <li>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li> <li>19. 인건비 절감 노력도</li> <li>20.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li> <li>21.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li> <li>22.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li> <li>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li> </ol>
재정책임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4. 재정법령 준수</li> <li>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li> <li>26.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li> <li>27. 재정공시 노력도</li> <li>28. 재정분석 대응도</li> </ol>

### 1. 통합재정수지비율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내용	재정수지							
개요(정의)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재정의 성과 및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산정공식	$\text{통합재정수지비율} = (\text{세입} - \text{지출 및 순융자}) / \text{통합재정규모} \times 100$ ※ 정부(행정자치부) 통합재정수지 기준에 의함 $(\text{경상수입} + \text{이전수입} + \text{자본수입}) - (\text{경상지출} + \text{자본지출}) + (\text{융자회수} - \text{융자지출}) / \text{통합재정규모}$									
측정시점(기간)	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을수록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b>통합재정수지비율</b>							(단위 : 원)		
	회계구분	세입액(A)	세입액+순세계잉여금(D)	지출 및 순융자 (B)			통합재정규모 (C)	순세계잉여금 (d)	통합재정수지 비율 (A-B)/C × 100	순세계잉여금포함 통합재정수지 비율 (D-B)/C × 100
				소계 (B=a+b)	지출액 (a)	순융자 (b)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통합재정규모 = 지출 및 순융자										
검증자료	e호조상의 통합재정수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 통합재정 수지 작성 근거 및 내용〉

구 분	국 가	지 방
근거법령	국가재정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59조
시작연도	'79년	'05년('04년 시범)
작성기준	정부 재정통계 지침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분석 요령
주요내용	예산·결산 모두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 「지방재정365」에 전체 규모 공표, 기재부에 통보, 기재부에서 국제기구(IMF) 통계 제공</li> <li>• (예산) '13년 처음으로 「재정고」에 공표</li> </ul>

- **(총수입·총지출)** 예산과 기금을 통합한 순계기준의 규모로서, 회계 간 내부거래와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를 제외한 규모 (보전재원은 포함)
- **(통합재정수입)** 총수입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
  - \*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 +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 자본수입 (재산매각수입) + 융자회수(융자·출자금회수)
  - \* (보전수입)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회수 등
- **(통합재정지출)**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
  - \* 경상지출(인건비, 물건비, 이자지급, 기타경상이전 지출) + 자본지출 (고정자산취득, 자본이전 등) + 융자지출 (융자·출자금 지출)
  - \* (보전지출) 지방채 원금상환, 예치금, 적립금,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
- **(통합재정규모)** 자치단체의 1년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 통합재정규모 = 세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융자금 회수는 재정활동의 감소요인이 되므로 융자지출에서 차감한 순융자만 계상
-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 지출  
 = (세입+융자회수) - (세출+융자지출)  
 = 세입 - 세출 및 순융자 (융자지출 - 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통합재정규모 × 100

## 2. 실질수지비율

지표분류	건전성	지표내용	재정수지																									
개요(정의)	자치단체의 재정적자 여부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수지균형성을 측정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측정하는 분석지표로 그 비율이 사회적 용인 수준에 근접할수록 건전한 것으로 판단됨																											
산정공식	$\text{실질수지비율} = \frac{\text{실질수지액}}{\text{일반재원결산액}} \times 100(\%)$ <p>※ 실질수지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이월금 - 보조금집행잔액                      * 이월금 :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 일반재원 : 결산서상 세입 결산부문의 실제수납액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                      ⇒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부동산교부세를 모두 포함                      * 재정자주도 작성 시 분자에 해당하는 일반재원과 동일한 범위를 포괄</p>																											
측정시점(기간)	2015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주민관심지표, 자치단체 자기학습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p><b>실질수지비율</b>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계 (A=a-b-c-d)</th> <th colspan="4">실질수지액(A)</th> <th rowspan="2">일반재원 결산액 (B)</th> <th rowspan="2">지표값(%) (A/B)×100</th> </tr> <tr> <th>세입결산액 (a)</th> <th>세출결산액 (b)</th> <th>이월금 (c)</th> <th>보조금집행 잔액(d)</th> </tr> </thead> <tbody> <tr> <td>일반회계</td> <td></td> <td></td> <td>직접입력</td> <td>직접입력</td> <td>직접입력</td> <td></td> </tr> <tr> <td>기타특별회계</td> <td></td> <td></td> <td>직접입력</td> <td>직접입력</td> <td>직접입력</td> <td></td> </tr> </tbody> </table>			계 (A=a-b-c-d)	실질수지액(A)				일반재원 결산액 (B)	지표값(%) (A/B)×100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이월금 (c)	보조금집행 잔액(d)	일반회계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타특별회계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계 (A=a-b-c-d)	실질수지액(A)				일반재원 결산액 (B)	지표값(%) (A/B)×100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이월금 (c)	보조금집행 잔액(d)																								
일반회계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타특별회계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결산, 세출결산, 이월금, 보조금집행잔액 등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3. 경상수지비율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내용	재정수지																																																																																																							
개요(정의)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의 경상적 수지와 비용 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 수록 경상수익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건전성이 낮음																																																																																																									
산정공식	$\text{경상수지비율} = \frac{\text{경상비용}}{\text{경상수익}} \times 100(\%)$ <p>※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시군조정교부금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부동산 교부세만 합산(특별교부세 제외)</p>																																																																																																									
측정시점(기간)	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복식부기 재무제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경상수지비율 (단위 :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경상비용(A)</th> <th colspan="4">경상수익(B)</th> <th rowspan="2">지표값 (A/B) ×100</th> </tr> <tr> <th>계 (①+②+③+ ④+⑤)</th> <th>인건비 ①</th> <th>운영비 ②</th> <th>자치구 조정 교부금 (③광역)</th> <th>계 (⑥+⑦+⑧+ ⑨+⑩-⑪)</th> <th>지방세 수익 (⑥)</th> <th>경상 세외 수익 (⑦)</th> <th>지방 교부세 수익 (⑧)</th> </tr> </thead> <tbody> <tr> <td>일반회계</td> <td></td> <td></td> <td></td> <td>일반회계</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특별</td> <td></td> <td></td> <td></td> <td>기타특별</td> <td></td> <td></td> <td></td> </tr> <tr> <td>공기업특별</td> <td></td> <td></td> <td></td> <td>공기업특별</td> <td></td> <td></td> <td></td> </tr> <tr> <td>기금회계</td> <td></td> <td></td> <td></td> <td>기금회계</td> <td></td> <td></td> <td></td> </tr> <tr> <td>내부거래</td> <td></td> <td></td> <td></td> <td>내부거래</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⑤광역)</td> <td>시군 조정교부금 (④광역)</td> <td>특별 교부세 수익(⑪)</td> <td>자치구 조정교부 금수익 (⑨기초)</td> <td>시군 조정교부금 수익 (⑩기초)</td> <td></td> <td></td> </tr> <tr> <td>일반회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특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공기업특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금회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내부거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경상비용(A)			경상수익(B)				지표값 (A/B) ×100	계 (①+②+③+ ④+⑤)	인건비 ①	운영비 ②	자치구 조정 교부금 (③광역)	계 (⑥+⑦+⑧+ ⑨+⑩-⑪)	지방세 수익 (⑥)	경상 세외 수익 (⑦)	지방 교부세 수익 (⑧)	일반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공기업특별				기금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내부거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⑤광역)	시군 조정교부금 (④광역)	특별 교부세 수익(⑪)	자치구 조정교부 금수익 (⑨기초)	시군 조정교부금 수익 (⑩기초)			일반회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기금회계								내부거래							
경상비용(A)			경상수익(B)				지표값 (A/B) ×100																																																																																																			
계 (①+②+③+ ④+⑤)	인건비 ①	운영비 ②	자치구 조정 교부금 (③광역)	계 (⑥+⑦+⑧+ ⑨+⑩-⑪)	지방세 수익 (⑥)	경상 세외 수익 (⑦)		지방 교부세 수익 (⑧)																																																																																																		
일반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공기업특별																																																																																																						
기금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내부거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⑤광역)	시군 조정교부금 (④광역)	특별 교부세 수익(⑪)	자치구 조정교부 금수익 (⑨기초)	시군 조정교부금 수익 (⑩기초)																																																																																																					
일반회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기금회계																																																																																																										
내부거래																																																																																																										
검증자료	2015회계연도 복식부기 결산서 (성질별 재정운영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의 경상비용과 경상수익 내역을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4. 관리채무비율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내용	채무관리																																																													
개요(정의)	세입결산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저장(stock) 지표																																																															
해석및특징	지방채무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구조가 건전한 것을 의미																																																															
산정공식	$\text{관리채무비율} = \frac{\text{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text{세입결산액}} \times 100(\%)$ <p>※ 지방채무잔액은 2016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산정시 적용하는 지방채무잔액 적용                  ※ 지방채무 잔액                  ⇒ 지방채 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 지급액                  ⇒ 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기금이 그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상환하는 금액은 제외                  ⇒ 지방채무 잔액은 원금기준으로 작성                  ※ BTL 지급액                  ⇒ 준공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p>																																																															
측정시점(기간)	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채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p><b>관리채무비율</b> (단위: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5">2015 지방채무 잔액(A)</th> <th rowspan="2">2015 세입 결산액 (B)</th> <th rowspan="2">지표값 (%) (A/B)×100</th> </tr> <tr> <th>계(A = a+b+c+d)</th> <th>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a</th> <th>채무 부담 행위 b</th> <th>보증 채무 이행액 c</th> <th>BTL 지급액 d</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회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 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공 기 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특별회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 금</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2015 지방채무 잔액(A)					2015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 (A/B)×100	계(A = a+b+c+d)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a	채무 부담 행위 b	보증 채무 이행액 c	BTL 지급액 d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공 기 업								특별회계								기 금							
구 분	2015 지방채무 잔액(A)					2015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 (A/B)×100																																																									
	계(A = a+b+c+d)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a	채무 부담 행위 b	보증 채무 이행액 c	BTL 지급액 d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공 기 업																																																																
특별회계																																																																
기 금																																																																
검증자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채무결산보고서의 채무현황과 일치여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5. 실질채무비율(광역)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내용	채무관리				
개요(정의)	광역자치단체 관리채무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중 기초자치단체 융자금 부분을 제외하고 본청에서 사용하는 융자금만을 포함하는 경우, 세입결산 대비 실질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량(stock) 지표						
해석및특징	광역지방채무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을 의미						
산정공식	$\text{광역실질채무비율} = \frac{\text{관리채무} - \text{기초자치단체 융자금}}{\text{세입결산액}} \times 100(\%)$ <p>※ 관리채무는 4. 관리채무비율에서 사용한 BTL 지급액을 포함한 지방채무잔액을 의미함                  ※ 지방채무 잔액                  ⇒ 지방채 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 지급액                  ⇒ 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기금이 그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상환하는 금액은 제외                  ⇒ 지방채무 잔액은 원금기준으로 작성                  ※ BTL 지급액                  ⇒ 준공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p>						
측정시점(기간)	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채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b>실질채무비율</b> (단위 : 원)						
	구 분	2015 지방채무 잔액(A)				2015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 (A/B)×100
		계(A = a+b+c +d-e)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 (a)	채무 부담 행위 (b)	보증 채무 이행액 (c)	BTL 지급액 (d)	기초자치 단체 융자금 (e)
	합 계						
	일반회계					-	
	기 타 특별회계					-	
공 기 업 특별회계							
기 금					-		
검증자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채무결산보고서의 채무현황과 일치여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6.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내용	부채관리																																																																															
개요(정의)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로 채무부담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및특징	환금자산 대비 총부채의 비율을 측정하는 재정 건전성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text{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계}}{\text{환금자산}} \times 100(\%)$ <p>※ 환금자산 : (유동자산 - 기타유동자산 + 일반미수금*) + 장기금융상품 + (장기대여금* - 학자금위탁대여금) + 기타 투자자산                      * 일반미수금 및 장기대여금은 해당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                      ※ 부채총계 : 복식부기 재정상태표 상의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기타비유동부채                      ※ 유동자산 : 고정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1년 이내에 환급할 수 있는 자산 또는 전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현금, 예금 등)                      ※ 기타유동자산 : 선급금과 선급비용                      ※ 일반미수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을 제외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확정 채권                      ※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단기금융상품, 단기대여금을 제외한 부분                      ※ 유동부채: 1년 이내 갚아야 하는 부채                      ※ 장기차입부채: 기한이 1년 이상인 차입부채                      ※ 기타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서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격의 부채를 모두 통합한 금액으로 장기미지급금, 장기선수금, 장기선수수익 등</p>																																																																																	
측정시점(기간)	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복식부기 결산서 (재정상태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p><b>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b> (단위: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4">부채총액(A)</th> <th colspan="4">환금자산(B)</th> <th rowspan="2">지표값 (A/B)× 100</th> </tr> <tr> <th>계 (A=a+b+c)</th> <th>유동부채 (a)</th> <th>장기차입부채 (b)</th> <th>기타비유동부채 (c)</th> <th>계 (B=d+e+f+g)</th> <th>유동자산 (d)</th> <th>장기금융상품 (e)</th> <th>장기대여금 (f)</th> <th>기타투자자산 (g)</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회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특별회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공기업특별회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금회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내부거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부채총액(A)				환금자산(B)				지표값 (A/B)× 100	계 (A=a+b+c)	유동부채 (a)	장기차입부채 (b)	기타비유동부채 (c)	계 (B=d+e+f+g)	유동자산 (d)	장기금융상품 (e)	장기대여금 (f)	기타투자자산 (g)	합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구분	부채총액(A)				환금자산(B)				지표값 (A/B)× 100																																																																									
	계 (A=a+b+c)	유동부채 (a)	장기차입부채 (b)	기타비유동부채 (c)	계 (B=d+e+f+g)	유동자산 (d)	장기금융상품 (e)	장기대여금 (f)		기타투자자산 (g)																																																																								
합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검증자료	2015회계연도 복식부기 결산서(재정상태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재정상태표의 유동성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7. 통합유동부채비율 <신규>

지표분류	건전성	지표내용	부채관리																										
개요(정의)	통합부채 작성에 따른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의 비율																												
해석 및 특징	통합부채 관점에서 유동부채(1년 내에 만기도래하는 부채)에 대한 유동자산(1년 내에 자금회수가 가능한 자산)의 총당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며, 부채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의 유동성 위험을 검증하기 위한 지표																												
산정공식	$\text{통합유동부채비율} = \frac{\text{유동부채}}{\text{유동자산}} \times 100(\%)$ <p>※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상의 유동부채와 유동자산                      - 세출결산액 : 결산서 통합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 결산총액(지출액)                      - 통합부채 기초자료 제출된 최종자료와 일치토록 작성 및 입력</p>																												
측정시점(기간)	2015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통합부채현황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자치단체 학습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 지방공사·공단 + 출자·출연기관 포함																												
제출서식	<p><b>통합유동부채비율</b>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유동부채</th> <th colspan="4">유동자산(B)</th> <th rowspan="2">지표값(%) (A/B) × 100</th> </tr> <tr> <th>계 (A)</th> <th>지자체 (직영기업포함)</th> <th>지방공사·공단</th> <th>출자·출연기관</th> <th>계 (B)</th> <th>지자체 (직영기업포함)</th> <th>지방공사·공단</th> <th>출자·출연기관</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직접 입력</td> <td>직접 입력</td> <td></td> <td></td> <td>직접 입력</td> <td>직접 입력</td> <td></td> </tr> </tbody> </table> <p>※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및 기관별 결산서상의 유동부채, 유동자산과 일치</p>			유동부채				유동자산(B)				지표값(%) (A/B) × 100	계 (A)	지자체 (직영기업포함)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계 (B)	지자체 (직영기업포함)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유동부채				유동자산(B)				지표값(%) (A/B) × 100																					
계 (A)	지자체 (직영기업포함)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계 (B)	지자체 (직영기업포함)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검증자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복식부기 재정상태표, 2015 회계연도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통합부채 상의 유동부채, 유동자산 항목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8. 공기업부채비율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내용	공기업
개요(정의)	지방공기업에 대해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공기업의 부채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및특징	자기자본 대비 부채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재정 건전성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text{공기업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액}}{\text{자기자본}}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상의 자본, 부채</li> <li>*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포함</li> </ul>			
측정시점(기간)	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지방공기업 재무제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출서식	<b>공기업부채비율</b> (단위: 원)			
	구분	부채총액(A)	자기자본(B)	지표값 (A/B)×100
	합 계			
	지방직영기업	직접입력	직접입력	
	지방공사	직접입력	직접입력	
지방공단	직접입력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재정상태표의 자기자본, 부채총액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내용	공기업																																	
개요(정의)	지방공기업에 대해 총자본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며 공기업 영업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및특징	총자본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을 측정하는 수익성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하고 재정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text{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총자본}}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이익 : 지방공기업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이익</li> <li>* 총자본 :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상의 총자본(자본+부채)</li> <li>*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포함</li> </ul>																																			
측정시점(기간)	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 개시스템 지방공기업 재무제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출서식	<b>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b> (단위: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영업이익(A)</th> <th colspan="3">총자본(B)</th> <th rowspan="2">지표값 (A/B)×100</th> </tr> <tr> <th>소계 (a+b)</th> <th>자기자본(a)</th> <th>부채(b)</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방직영기업</td> <td>직접입력</td> <td></td> <td>직접입력</td> <td>직접입력</td> <td></td> </tr> <tr> <td>지방공사</td> <td>직접입력</td> <td></td> <td>직접입력</td> <td>직접입력</td> <td></td> </tr> <tr> <td>지방공단</td> <td>직접입력</td> <td></td> <td>직접입력</td> <td>직접입력</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영업이익(A)	총자본(B)			지표값 (A/B)×100	소계 (a+b)	자기자본(a)	부채(b)	합 계						지방직영기업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지방공사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지방공단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구분	영업이익(A)	총자본(B)				지표값 (A/B)×100																														
		소계 (a+b)	자기자본(a)	부채(b)																																
합 계																																				
지방직영기업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지방공사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지방공단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재정상태표의 총자본(자본+부채), 영업이익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10.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지표유형	효율성	지표내용	세입
개요(정의)	자체세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세입의 연도간(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자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은 것을 의미		
산정공식	<p>1. 자체세입비율(%) =</p> $\frac{\text{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text{세입결산액}} \times 100(\%)$ <p>2. 자체세입비율증감률(%) =</p> $\frac{2015\text{년도 자체세입비율} - 2014\text{년도 자체세입비율}}{2014\text{년도 자체세입비율}} \times 100(\%)$ <p>※ 지방세 실제수납액 : 보통세(111) + 목적세(112) - 지방교육세(112-02) 및 과년도(지난년도 수입)분(113) 제외</p> <p>※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경상적 세외수입(210) - 임시적 세외수입(220) 제외</p>		
측정시점(기간)	2011~2015회계연도 결산 (5년간 비교)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세시스템(위택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상태)	지표 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b>제출서식</b>	<b>1. 자체세입비율</b>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원)</span>								
	연도	자체세입액(A) (실제수납액)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A/B) ×100	
		계 (A=d+e)	지방세(100)						세외수입 (200)
			지방세 총액 (110) (a)	지난년 도수입 (113) (b)	지방교 육세 (112-0 2) (c)	반영액 d=(a- b-c)			경상적세 외수입 (210) (e)
	2015								
	2014								
	2013								
2012									
2011									
<b>제출서식</b>	<b>2. 자체세입비율증감률</b>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원)</span>								
	현년도 자체세입비율(A)	전년도 자체세입비율(B)	지표값(%) {(A-B)/B} × 100						
<b>검증자료</b>	2011~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b>연락처</b>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실제수납액 확인 - 지난년도수입(113) 제외 - 지방교육세(112-02) 제외 ▶ 경상적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확인					<b>작성자 (작성부서)</b>			

### 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표유형	효율성	지표내용	세입																																																					
개요(정의)	지방세의 징수실적과 징수노력을 측정하는 비율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세 징수율의 연도간(또는 중·장기 추세)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산정공식	1. 지방세징수율 (%)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과년도분 및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실적은 제외 * 주행분 : 자동차세 중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 2015년도 지방세징수율 / 2014년도 지방세징수율 (단, 2년 연속 지방세징수율이 98%를 넘는 경우, 제고율 1이 넘는 자치단체들의 평균점을 부여함)																																																							
측정시점(기간)	2014~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세시스템(위택스)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연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1. 지방세징수율 (단위 :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10">2015년 지방세징수율</th> </tr> <tr> <th rowspan="2">계 A=(a/b) × 100</th> <th colspan="5">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a)</th> <th colspan="5">징수결정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징수결정액) (b)</th> </tr> <tr> <th>소계(a)</th> <th>실제 수납액</th> <th>과년 도분</th> <th>자동차세 (주 행분)</th> <th>지방 소비세</th> <th>소계(b)</th> <th>실제 수납액</th> <th>과년 도분</th> <th>자동차세 (주 행분)</th> <th>지방 소비세</th> </tr> </thead> <tbody> <tr>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직접입력</td> <td></td> <td></td> <td></td> <td></td> <td>직접입력</td> <td></td> </tr> </tbody> </table>			2015년 지방세징수율										계 A=(a/b) × 100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a)					징수결정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징수결정액) (b)					소계(a)	실제 수납액	과년 도분	자동차세 (주 행분)	지방 소비세	소계(b)	실제 수납액	과년 도분	자동차세 (주 행분)	지방 소비세																직접입력					직접입력	
2015년 지방세징수율																																																								
계 A=(a/b) × 100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a)					징수결정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징수결정액) (b)																																																		
	소계(a)	실제 수납액	과년 도분	자동차세 (주 행분)	지방 소비세	소계(b)	실제 수납액	과년 도분	자동차세 (주 행분)	지방 소비세																																														
				직접입력					직접입력																																															



##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표유형	효율성	지표내용	세입													
개요(정의)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실적과 관리노력을 측정하는 비율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세 체납액의 연도별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체납액 관리비율이 낮을수록, 증가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산정공식	<p>1.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 =  <math display="block">2015\text{년 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2015\text{년도 세입결산액} \times 100(\%)</math>                     ※ 2015년 체납누계액 : 2015년 미수납액* - 2015년 자동차세(주행분) 미수납액                      ※ 자동차세(주행분) 체납액은 산정에서 제외</p> <p>2.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 =  <math display="block">\frac{2015\text{년도 체납누계액} - 2014\text{년도 체납누계액}}{2014\text{년도 체납누계액}} \times 100(\%)</math>                     ※ 2014년 체납누계액 : 2014년 다음연도 이월액 - 2014년 자동차세(주행분) 다음연도 이월액                      ※ 자동차세(주행분) 체납액은 산정에서 제외                      * 미수납액(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기준으로 작성 (단, 결손처분액은 제외)</p>															
측정시점(기간)	2014~2015회계연도 결산	<b>자료산출 (외부통계)</b>	지방세시스템(위택스)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연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p>1.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3">2015년도 말 현재 체납누계액</th> <th rowspan="2">세입 결산액 (B)</th> <th rowspan="2">지표값 (A/B) ×100</th> </tr> <tr> <th>반영액 (A=a-b)</th> <th>체납 누계액 (a)</th> <th>자동차세(주행분) 체납누계액 (b)</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직접입력</b></td> <td></td> <td></td> </tr> </tbody> </table>			2015년도 말 현재 체납누계액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A/B) ×100	반영액 (A=a-b)	체납 누계액 (a)	자동차세(주행분) 체납누계액 (b)			<b>직접입력</b>		
2015년도 말 현재 체납누계액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A/B) ×100												
반영액 (A=a-b)	체납 누계액 (a)	자동차세(주행분) 체납누계액 (b)														
		<b>직접입력</b>														

제출서식	2.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						
	(단위 : 원)						
	2015년도 말 현재 체납누계액			2014년도 말 현재 체납누계액			
	반영액 (A=a-b)	체납 누계액 (a)	자동차세 (주행분) 체납 누계액 (b)	반영액 (B=c-d -e)	체납 누계액 (c)	결손 처분액 (d)	자동차세 (주행분) 체납 누계액 (e)
		<b>직접입력</b>				<b>직접입력</b>	지표값 (%) {(A-B)/B} × 100
검증자료	2014~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b>연락처</b>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지방세 체납액, 체납징수액 ▶ 연도말 체납누계액 확인					<b>작성자 (작성부서)</b>	

※ 실제 지방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3.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지표유형	효율성	지표내용	세입																																		
개요(정의)	자치단체의 경상세외수입의 증대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																																				
해석 및 특징	경상세외수입 확충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경상세외수입비율과 증감률의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산정공식	1. 경상세외수입비율 = $\frac{2015\text{년도 기준 } 3\text{년 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2015\text{년도 세입결산액}} \times 100(\%)$ 2.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 $\frac{2015\text{년 기준 } 3\text{년 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2014\text{년 기준 } 3\text{년 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2014\text{년도 기준 } 3\text{년 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times 100(\%)$ ※ 경상적세외수입(210) - 이자수입(216)을 제외하여 작성																																				
측정시점(기간)	2012~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연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1. 경상세외수입비율 (단위 :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8">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A)</th> <th rowspan="2">세입 결산액 (B)</th> <th rowspan="2">지표값 (A/B) ×100</th> </tr> <tr> <th rowspan="2">평균 (A)</th> <th colspan="3">2013</th> <th colspan="2">2014</th> <th colspan="2">2015</th> </tr> <tr> <th>소계</th> <th>경상세외 수입(a)</th> <th>이자수 입(b)</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A)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A/B) ×100	평균 (A)	2013			2014		2015		소계	경상세외 수입(a)	이자수 입(b)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A)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A/B) ×100																												
평균 (A)	2013			2014		2015																															
	소계	경상세외 수입(a)	이자수 입(b)																																		

<b>제출서식</b>	<b>2. 경상세외수입 증감률</b>													(단위 : 원)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A)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B)					지표값(%) {(A-B)/B}× 100	
	평균	2013			2014		2015		평균	2012		2013		2014	
		소계	경상세외 수입(a)	이자수입 (b)											
<b>검증자료</b>	※ <u>현장검증시 확인사항(✓)</u>								연락처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세입세출총괄 설명의 가. 세입결산총괄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지방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14. 세외수입채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표유형	효율성	지표내용	세입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채납액 축소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외수입 채납액의 연도별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채납액이 감소할수록 채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산정공식	<p>1. 세외수입채납액 관리비율 =  <math display="block">\frac{2015\text{년 말 세외수입 채납누계액}}{2015\text{년도 세입결산액}} \times 100(\%)</math>           ※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 임시세외수입</p> <p>2. 세외수입 채납액 증감률 =  <math display="block">\frac{2015\text{년도 말 채납누계액} - 2014\text{년도 말 채납누계액}}{2014\text{년도 말 채납누계액}} \times 100(\%)</math>           ※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 임시세외수입            ※ 미수납액(결손처분 + 다음연도 이월액) 기준으로 작성            (단, 2014년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제외)</p>		
측정시점(기간)	2014~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연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1. 세외수입채납액 관리비율 (단위 : 원)		
	2015년도말 현재 세외수입 채납누계액(A)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A/B) ×100

제출서식	2.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					(단위 : 원)
	2015년도말 현재 체납 누계액(A)	2014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B)				지표값(%) {(A-B)/B} × 100
		반영액 (B=c-d-e)	체납 누계액(c)	납기미도래미 징수액(d)	결손 처분액(e)	
				아래 e호조 값 2014년도 직접입력		
검증자료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연락처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세입세출총괄 설명의 가. 세입결산 총괄			작성자 (작성부서)		

- ※ 실제 지방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세입관리-결의관리-징수부관리-납기미도래미수납 내역 출력 (납기미도래미수납 내역서) 금액을 그대로 입력
  - 부과일자 : 2014.1.1. ~ 2014.12.31.
  - 회계일자 : 2014.1.1. ~ 2015.2.28.
  - 감액일자 : 2014.1.1. ~ 2015.2.28.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예시>

## 15.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지표유형	효율성	지표내용	세입	
개요(정의)	자치단체가 자체세입 확충을 위해 과세자주권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할수록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가 감소한 경우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낮은 것을 의미			
산정공식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2015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2015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평균점수를 부여			
측정시점(기간)	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직접입력 및 근거자료 제출 세입세출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연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단위 : 원)			
	탄력세율 적용세목	2015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A)	2015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B)	지표값 A/B
	총계	직접입력	직접입력※	
	※ 주민세 균등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세율관련 조례를 참조하여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에서 매년 조사하는 양식의 총합으로 직접 입력할 것.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일괄조사 대응 부서에 문의하여 작성.			
검증자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지방세수입의 징수액 ▶ 지방세 세율관련 조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지방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6.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표분류	효율성	지표내용	세출										
개요(정의)	세출결산 대비 지방보조금의 비율로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재정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출결산액에 대한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1. \text{지방보조금비율} = \frac{\text{지방보조금 결산액}}{\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2. \text{지방보조금증감률} = \frac{(\text{2015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 \text{2014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text{2014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times 100$ <p>※ 지방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 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 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2014년 과목 : 민간경상보조(307-02), 사회단체보조(307-03), 민간행사보조(307-04),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 평가시 사회복지보조(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제외</p>												
측정시점(기간)	2014~2015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연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1. 지방보조금비율 (단위 : 원)												
	지방보조금 결산액(A)							세출 결산액 (B)	지표값 (%) (A/B) ×100				
	계 (A=a+b +c+d+e+f)	민간경상 사업보조 (a)	민간단체 법정운영 비보조 (b)	민간행사사 업보조(c)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 보조(d)	사회복지 사업보조 (e)	민간자본 사업보조 (f)						
일반회계													
	기타특별												
	2. 지방보조금증감률 (단위 : 원)												
2015 회계연도 지방보조금결산액(A)		2014 회계연도 지방보조금결산액(B)					지표값 (%) {(A-B) /B} ×100						
계 (A= a+b +c+d+ e+f)	민간 경상사 업보조 (a)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b)	민간 행사사 업보조 (c)	사회 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d)	사회 복지 사업 보조 (e)	민간 자본 사업 보조 (f)		계 (B= g+h+i +j+k)	민간 경상 부조 (g)	사회 단체 보조 (h)	민간 행사 부조 (i)	사회 복지 부조 (j)	민간 자본 부조 (k)
일반 회계													
	기타 특별												
검증자료	2014~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세출결산서 상의 지방보조금 항목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지표분류	효율성	지표내용	세출																																																																										
개요(정의)	출자·출연·전출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출결산액에 대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p>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 <math>\frac{\text{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text{세출결산액}} \times 100(\%)</math></p> <p>2.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 <math>\frac{(2015\text{년도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2014\text{년도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2014\text{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times 100</math></p> <p>※ 출자·출연·전출금: 출자금(502), 출연금(306), 전출금(309),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701-02),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701-03)</p> <p>※ 2014년도 출자·출연·전출금: 출자금(502), 출연금(306), 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p> <p>※ 전출금(309)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309-03)은 제외</p>																																																																												
측정시점(기간)	2014~2015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																																																																												
제출서식	<p>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계 (A=a+b+c+d+e+f)</th> <th colspan="6">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A)</th> <th rowspan="2">세출 결산액 (B)</th> <th rowspan="2">지표값 (%) (A/B) ×100</th> </tr> <tr> <th>출자금 (a)</th> <th>출연금 (b)</th> <th>전출금 (c)</th> <th>공사공단 자본전출 금(d)</th> <th>공기업특 별경상전 출금(e)</th> <th>공기업특 별자본전 출금(f)</th> </tr> </thead> <tbody> <tr> <td>일반회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특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공기업특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금</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계 (A=a+b+c+d+e+f)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A)						세출 결산액 (B)	지표값 (%) (A/B) ×100	출자금 (a)	출연금 (b)	전출금 (c)	공사공단 자본전출 금(d)	공기업특 별경상전 출금(e)	공기업특 별자본전 출금(f)	일반회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기금																															
	계 (A=a+b+c+d+e+f)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A)						세출 결산액 (B)	지표값 (%) (A/B) ×100																																																																				
출자금 (a)		출연금 (b)	전출금 (c)	공사공단 자본전출 금(d)	공기업특 별경상전 출금(e)	공기업특 별자본전 출금(f)																																																																							
일반회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기금																																																																													
<p>2.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계 (A=a+b+c+d+e+f)</th> <th colspan="6">2015 회계연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A)</th> <th colspan="4">2014 회계연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B)</th> <th rowspan="2">지표값(%) {(A-B)/B} ×100</th> </tr> <tr> <th>출자금 (a)</th> <th>출연금 (b)</th> <th>전출금 (c)</th> <th>공사공단 자본전출 금(d)</th> <th>공기업특 별경상전 출금(e)</th> <th>공기업특 별자본전 출금(f)</th> <th>계 (B=g+h+i+j)</th> <th>출자금 (g)</th> <th>출연금 (h)</th> <th>전출금 (i)</th> <th>공기업특 별자본전 출금 (j)</th> </tr> </thead> <tbody> <tr> <td>일반회계</td> <td></td> </tr> <tr> <td>기타특별</td> <td></td> </tr> <tr> <td>공기업특별</td> <td></td> </tr> <tr> <td>기금</td> <td></td> </tr> </tbody> </table>			계 (A=a+b+c+d+e+f)	2015 회계연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A)						2014 회계연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B)				지표값(%) {(A-B)/B} ×100	출자금 (a)	출연금 (b)	전출금 (c)	공사공단 자본전출 금(d)	공기업특 별경상전 출금(e)	공기업특 별자본전 출금(f)	계 (B=g+h+i+j)	출자금 (g)	출연금 (h)	전출금 (i)	공기업특 별자본전 출금 (j)	일반회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기금												
계 (A=a+b+c+d+e+f)	2015 회계연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A)						2014 회계연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B)				지표값(%) {(A-B)/B} ×100																																																																		
	출자금 (a)	출연금 (b)	전출금 (c)	공사공단 자본전출 금(d)	공기업특 별경상전 출금(e)	공기업특 별자본전 출금(f)	계 (B=g+h+i+j)	출자금 (g)	출연금 (h)	전출금 (i)		공기업특 별자본전 출금 (j)																																																																	
일반회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기금																																																																													
검증자료	2014~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연락처																																																																										
	<p>※ 현장검증시 확인사항(✓)</p> <p>▶ 세입세출결산서 상의 출자금, 출연금, 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확인</p>		작성자 (작성부서)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지표분류	효율성	지표내용	세출				
개요(정의)	유형고정자산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출결산에서의 비중을 측정하는 지표로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측정						
해석 및 특징	유형고정자산 대비 자산유지관리비용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함						
산정공식	1.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 $\frac{\text{자본시설유지비용}}{\text{유형고정자산}} \times 100(\%)$ 2.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 $\frac{(\text{2015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 \text{2014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text{2014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times 100$ ※ 자본시설유지비용 : 수선유지비, 연료비, 전기요금 ※ 유형고정자산 : 일반유형자산(토지 제외), 주민편의시설(토지 제외)						
측정시점(기간)	2014~2015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복식부기 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1.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회계구분) (단위 : 원)						
	자본시설유지비용(A)		유형고정자산(B)				
	계 (A=a+b+c)	수선 유지비(a)	연료비 (b)	전기요금 (c)	계 (B=d+e)	일반유형 자산(토지 제외)(d)	주민편의 시설(토지 제외)(e)
2.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회계구분없이 총계) (단위 : 원)							
2015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A)		2014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B)		지표값 {(A-B)/B} ×100			
계 (A=a+b+c)	수선 유지비(a)	연료비 (b)	전기요금 (c)	계 (B=d+e+f)	수선 유지비(d)	연료비 (e)	전기요금 (f)
검증자료	복식부기 재무제표 전기요금은 e호조에서 확인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수선유지비, 연료비, 전기요금 확인 일반유형자산(토지 제외)과 주민편의시설(토지 제외)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9. 인건비 절감노력도

지표유형	효율성	지표내용	세출		
개요(정의)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총액인건비(2014년 3월 이후 기준인건비) 기준액과 비교하여 기준인건비를 실제 얼마나 절감하였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노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산정공식	$\text{인건비 절감 노력도} = \{1 - (\text{인건비 결산액} / \text{기준인건비 기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액인건비 기준액 : 2014년 말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시달한 기준인건비 기준액(기준인건비 기준액 :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통보)</li> <li>2014년 3월 법 개정으로 “기준인건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음</li> <li>※ 소방직 인건비는 제외</li> <li>※ 기준인건비 대상 과목(7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li> </ul> </li> </ul>				
측정시점(기간)	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직접입력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연계지표 ※ 기준인력을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값이 양호해도 인센티브 적용 제외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출서식	<b>인건비 절감 노력도</b> (단위 : 원)				
	2015년도 인건비 결산 반영액(A)		2015년도 기준인건비 기준액(B)		지표값 {1-(A/B)}
	반영액 (A=a-b)	인건비 결산액 (a)	반영액 (B=c-d)	기준인건비 (c)	
		소방직 인건비 (b)		소방직 기준인건비(d)	
일반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공기업특별			
검증자료	2015회계연도 행정자치부 시달 기준인건비 기준액 자료		연락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준인건비 기준액과 기준인건비 결산액 확인 ▶ 소방직 인건비 현황 등 확인		작성자 (작성 부서)		

※ 실제 지방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0.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지표유형	효율성	지표내용	세출																																							
개요(정의)	지방의회경비에 대한 절감 노력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가 지방의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얼마나 절감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산정공식	$\text{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1 - \frac{\text{지방의회경비 결산액}}{\text{지방의회경비 기준액}}$ <p>※ 지방의회 경비 중 3개 과목                      -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원운영무추진비(205-06)                      ※ 지방의회경비 기준액은 2015.12.31 기준 의원 정원수를 기준</p>																																									
측정시점(기간)	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직접입력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평가지표, 보통교부세 연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b>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b> (단위 :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5">지방의회경비 결산액(A)</th> <th colspan="4">지방의회경비 기준액(B)</th> <th rowspan="2">지표값 1-(A/B)</th> </tr> <tr> <th>소계 (A=at+bc+d)</th> <th>의원 국외 여비(a)</th> <th>의정 운영 공통 경비 (b)</th> <th>의원 운영 업무 추진비 (c)</th> <th>예외사항으로 편성되어 집행된 국외여비 (d)</th> <th>소계 (B=bc+ef)</th> <th>의원 국외여비 (d)</th> <th>의정운영 공통경비 (e)</th> <th>의원운영 업무추진비 (f)</th> </tr> </thead> <tbody> <tr> <td>일반</td> <td></td> <td></td> <td></td> <td>직접입력</td> <td>일반</td> <td>직접입력</td> <td>직접입력</td> <td>직접입력</td> <td></td> </tr> <tr> <td>기타특별</td> <td></td> <td></td> <td></td> <td>직접입력</td> <td>기타 특별</td> <td>직접입력</td> <td>직접입력</td> <td>직접입력</td> <td></td> </tr> </tbody> </table> <p>※ 기준액은 자치단체 직접입력, 결산액은 e호조로 산출</p>			지방의회경비 결산액(A)					지방의회경비 기준액(B)				지표값 1-(A/B)	소계 (A=at+bc+d)	의원 국외 여비(a)	의정 운영 공통 경비 (b)	의원 운영 업무 추진비 (c)	예외사항으로 편성되어 집행된 국외여비 (d)	소계 (B=bc+ef)	의원 국외여비 (d)	의정운영 공통경비 (e)	의원운영 업무추진비 (f)	일반				직접입력	일반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타특별				직접입력	기타 특별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지방의회경비 결산액(A)					지방의회경비 기준액(B)				지표값 1-(A/B)																																	
소계 (A=at+bc+d)	의원 국외 여비(a)	의정 운영 공통 경비 (b)	의원 운영 업무 추진비 (c)	예외사항으로 편성되어 집행된 국외여비 (d)	소계 (B=bc+ef)	의원 국외여비 (d)	의정운영 공통경비 (e)	의원운영 업무추진비 (f)																																		
일반				직접입력	일반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타특별				직접입력	기타 특별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5회계연도 행정자치부 시달 지방의회경비 기준액과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증빙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준금액 관련 지방의회 의원정수, 상임위원회의 수 등 확인 결산서 부속서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지방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1.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지표유형	효율성	지표내용	세출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 중 업무추진비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해석 및 특징	기관운영이나 시책추진에 필요한 추진비용을 기준금액 대비 얼마나 절감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산정공식	$\text{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 1 - \frac{\text{업무추진비 결산액}}{\text{업무추진비 기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부 업무추진비 중 2개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li> </ul> </li> <li>※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대상 직위 현황은 2014. 12. 31 기준이며, 2015년 중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분은 증빙자료 제출시 추가로 반영</li> <li>※ 2015년도 조직개편 내용 증빙자료 미제출시 2014.12.31 기준으로 산출</li> </ul>					
측정시점(기간)	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직접 입력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평가지표, 보통교부세 연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b>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b> (단위 : 원)					
	업무추진비 결산액(A)			업무추진비 기준액(B)		
	소계 (A=a+b)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a)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b)	소계 (B=c+d)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c)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d)
						지표값 1-(A/B)
	일반회계			일반회계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타특별		기타특별	직접입력	직접입력	
※ 기준액은 자치단체 직접 입력, 결산액은 e호조로 산출						
검증자료	2015회계연도 행정자치부 시달 업무추진비 기준액과 업무추진비 결산액 증빙자료				연락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준금액 관련 업무추진비 편성직위의 적합성 기준금액 관련 2015년 중 조직개편에 대한 증빙자료, 결산서 부속서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작성자 (작성 부서)	

※ 실제 지방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2. 행사·축제경비 비율(증감률)

지표유형	효율성	지표내용	세출																																																									
개요(정의)	행사·축제를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절감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및특징	총 예산 중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1. \text{행사·축제경비비율} = (\text{행사·축제경비} / \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2. \text{행사·축제경비 증감률} = \frac{(\text{2015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text{2014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text{2014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times 100(\%)$																																																											
	※ 행사·축제 관련 4개 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민간행사보조 금액 포함), 행사관련시설비(401-04) ※ 기재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 문체부가 인정하는 축제행사, 전국체전·전국소년체전·전국장애인체전 및 행사부 인정 행사축제 제외 : 증빙자료 첨부(단, 사후평가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행사는 포함) - 기재부 인정 국제행사, 문체부 인정 축제행사 목록은 행사부에서 통보 - 기타 행사·축제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 ※ 2015년 결산은 정부 또는 시·도 정책에 협조하여 개최하는 전국(시도)규모 순회행사(박람회, 도민체육대회 등) 등*은 행사·축제 산정상 예외로 인정 * 부산 ITU 전권회의, 부산 아세안특별정상회의, 강원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등 ※ 2016년 결산부터는 금년도에 도입예정인 행사·축제 총액한도제와 연계하여 기재부, 문체부에서 인정한 행사·축제 외에 전국(시도) 규모 순회행사(박람회, 도민체육대회 등) 등은 행사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하여 총액한도에서 제외 ※ 일몰제가 적용되어 비용이 발생한 축제의 경우, 점수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전년도 데이터에 기초하여 점수 새로 산정. 다만, 새로 전국축제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전년도 데이터에서도 삭제하여 차이 점수 산정 ex) 2013년도까지 계산 제외대상 축제였다가, 2014년도에 일몰제 적용을 받아 계산축제가 되었으나, 다시 2015년 심사에서 계산 제외대상 축제가 된 경우 2014년도 점수 산정시= 2013년도에 제외되었던 축제금액을 포함한 다음 2014년도 축제금액과의 차액을 이용하여 점수 산정 2015년 점수 산정시= 2014년도에 포함되었던 축제금액을 제외한 다음 2015년 축제금액과의 차액을 이용하여 점수 산정 ※ 2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축제가 시행된 경우, 점수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이전 축제년도(2년 혹은 3년 전) 데이터에 기초하여 점수 새로 산정																																																											
측정시점(기간)	2013~2015회계연도 결산 (3년 추세 파악)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직접입력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주민관심지표, 보통교부세 연계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1. 행사·축제경비 비율 (단위: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4">2015년 행사·축제경비(a)</th> <th rowspan="2">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 (b)</th> <th rowspan="2">2015년 세출 결산액(c)</th> <th rowspan="2">지표값 A=(a-b)/c ×100</th> </tr> <tr> <th>계 (a)</th> <th>201-03 (행사 운영비)</th> <th>301-09 (행사실비보 상금)</th> <th>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th> <th>401-04 (행사관련 시설비)</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h colspan="4">2014년 행사·축제경비(d)</th> <th rowspan="2">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 (e)</th> <th rowspan="2">2014년 세출 결산액(f)</th> <th rowspan="2">지표값 B=(d-e)/f ×100</th> </tr> <tr> <th>계 (d)</th> <th>201-03 (행사 운영비)</th> <th>301-10 (행사실비 보상금)</th> <th>307-04 (민간행사 보조)</th> <th>401-04 (행사관련 시설비)</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h colspan="4">2013년 행사·축제경비(g)</th> <th rowspan="2">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 (h)</th> <th rowspan="2">2013년 세출 결산액(i)</th> <th rowspan="2">지표값 C=(g-h)/i ×100</th> </tr> <tr> <th>계 (g)</th> <th>201-03 (행사 운영비)</th> <th>301-10 (행사실비 보상금)</th> <th>307-04 (민간행사 보조)</th> <th>401-04 (행사관련 시설비)</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2015년 행사·축제경비(a)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 (b)	2015년 세출 결산액(c)	지표값 A=(a-b)/c ×100	계 (a)	201-03 (행사 운영비)	301-09 (행사실비보 상금)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2014년 행사·축제경비(d)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 (e)	2014년 세출 결산액(f)	지표값 B=(d-e)/f ×100	계 (d)	201-03 (행사 운영비)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2013년 행사·축제경비(g)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 (h)	2013년 세출 결산액(i)	지표값 C=(g-h)/i ×100	계 (g)	201-03 (행사 운영비)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2015년 행사·축제경비(a)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 (b)	2015년 세출 결산액(c)	지표값 A=(a-b)/c ×100																																																						
계 (a)	201-03 (행사 운영비)	301-09 (행사실비보 상금)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2014년 행사·축제경비(d)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 (e)	2014년 세출 결산액(f)	지표값 B=(d-e)/f ×100																																																						
계 (d)	201-03 (행사 운영비)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2013년 행사·축제경비(g)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 (h)	2013년 세출 결산액(i)	지표값 C=(g-h)/i ×100																																																						
계 (g)	201-03 (행사 운영비)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제출서식		2.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단위 : 원)								
	2015년 행사·축제경비(a)					제외대상 행사축제경 비(b)	2015년 세출 결산액 (c)	$A=(a-b)/$ $c \times 100$	지표값	
	계 (a)	201-03 (행사 운영비)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2014년 행사·축제경비(d)					제외대상 행사축제경 비(e)	2014년 세출 결산액 (f)	$B=(d-e)/f$ $\times 100$	$\{(A-B)/B\}$ $\times 100$	
	계 (d)	201-03 (행사 운영비)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2013년 행사·축제경비(g)					제외대상 행사축제경 비(h)	2013년 세출 결산액 (i)	$C=(g-h)/i$ $\times 100$	$\{(B-C)/C\}$ $\times 100$	
	계 (g)	201-03 (행사 운영비)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검증자료	2013~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연락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재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 문체부가 인정하는 축제 행사, 행사부 인정 축제행사 및 전국체전·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등 제외 경비 확인 (단, 사후평가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행사는 포함)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지방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는 시스템에 다음과 같이 나누어 반영되어 있음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b, e, h)				
계	기재부 인정	문체부 인정	전국체전/소년체전/장애인체전	행사부 인정
b				
e				
h				

###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신규>

지표유형	효율성	지표내용	세출	
개요(정의)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경비의 절감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및특징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frac{\text{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text{2014년도 민간위탁금비율}} \times 100(\%)$ $\frac{(\text{2015년도 민간위탁금비율} - \text{2014년도 민간위탁금비율})}{\text{2014년도 민간위탁금비율}} \times 100(\%)$ ※ 민간위탁금(307-05)			
측정시점(기간)	2014~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직접입력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b>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b>			
	(단위 : 원)			
	2015년도 민간위탁금비율(A=a/b)		2014년도 민간위탁금비율(B=c/d)	지표값 {(A-B)/B}
	2015년 민간위탁금 (307-05)(a)	2015년 세출결산액 (b)	2014년 민간위탁금 (307-05)(c)	2014년 세출결산액 (d)
일반 회계		일반 회계		
기타 특별		기타 특별		
검증자료	2014~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세출결산서 상의 민간위탁금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4. 재정법령 준수 <신규>

지표유형	책임성	지표내용	페널티												
개요(정의)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위반 사례 파악														
해석및특징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 시 지방재정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법령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페널티 부여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수부여 기준 : 법령위반 (-45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평가내용</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가?</td> <td>-45점</td> </tr> <tr> <td>- 지방재정법 위반</td> <td>-15점</td> </tr> <tr> <td>-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td> <td>-15점</td> </tr> <tr> <td>- 사회보장기본법 위반</td> <td>-15점</td> </tr> <tr> <td>-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음</td> <td>0점</td> </tr> </tbody> </table> </li> <li>• 점수산정 : 결산연도 기준 최근2년(2014, 2015) 위반법령단위 평균 × (-15점)</li> </ul>			평가내용	배점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가?	-45점	- 지방재정법 위반	-15점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5점	-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15점	-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음	0점
	평가내용	배점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가?	-45점														
- 지방재정법 위반	-15점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5점														
-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15점														
-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음	0점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위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위반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 부적정, 세출 예산 집행부적정, 자활기금 이상환용자금 관리 부적정 등</li> <li>- 보조금관리에관한법을 위반 : 국고보조금 목적외 사용,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집행 및 관리부적정 등</li> <li>-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조정 의무 위반 등</li> </ul> </li> <li>* 정부합동 감사(감사실시연도 기준),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연도 기준) 수감시 재정관련 법령위반사항 목록은 행자부에서 통보</li> <li>*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판결이 확정된 해당연도의 재정분석 지표값에 반영</li> </ul>														
측정시점(기간)	2015, 2014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감사결과 법령위반 자료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준법지표, 책임성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법령 의무규정 이행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지방재정 관련 법령 위반														
	구분	법령위반 총 건수 (A+B+C)	지방재정법 위반 건수(A)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B)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건수(C)										
	2015년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2014년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 현실사시 시 3개 법령 위반사항 점검														
검증자료	2015, 2014 회계연도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법령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검증시 확인사항(✓)</li> <li>▶ 해당 3개 법령위반 관련 처분요구서 등 자료 확인</li> </ul>		작성자 (작성부서)												

###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지표유형	책임성	지표내용	페널티																						
개요(정의)	법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확보 여부 파악																								
해석및특징	법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며 법정 금액 미확보시 페널티 점수 부여																								
산정공식	$\text{재난관리기금전출금비율} = \frac{\text{2015년도 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text{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2011, 2012, 2013) 평균}} \times 100(\%)$ <p>※ 보통세(111)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 2015년 예산 작성 시 2014년 결산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2013년부터 최근 3년 계산</p> <p>※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비율이 1%가 되지 않는 경우 페널티 부여</p> <p>※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li> <li>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li> </ol>																								
측정시점(기간)	2012-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세시스템(위택스)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준법지표, 책임성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1%가 법정기준임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p><b>재난관리기금전출금비율</b> (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2015회계연도 적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th> <th colspan="4">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th> <th rowspan="2">지표값 (%)  (A/B) × 100</th> </tr> <tr> <th>평균</th> <th>2013회계연도</th> <th>2012회계연도</th> <th>2011회계연도</th> </tr> </thead> <tbody> <tr> <td>A</td> <td>B = (a+b+c)/3</td> <td>보통세(111) a</td> <td>보통세(111) b</td> <td>보통세(111) c</td> <td></td> </tr> <tr> <td>직접입력</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2015회계연도 적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지표값 (%)  (A/B) × 100	평균	2013회계연도	2012회계연도	2011회계연도	A	B = (a+b+c)/3	보통세(111) a	보통세(111) b	보통세(111) c		직접입력					
2015회계연도 적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지표값 (%)  (A/B) × 100																				
	평균	2013회계연도	2012회계연도	2011회계연도																					
A	B = (a+b+c)/3	보통세(111) a	보통세(111) b	보통세(111) c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1, 2012,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세출결산서 상의 보통세 금액 ▶ 부속서류의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26.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지표유형	책임성	지표내용	페널티								
개요(정의)	법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 확보 여부 파악(서울, 인천, 경기)										
해석및특징	법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서울, 인천, 경기)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며 법정 금액 미확보시 페널티 점수 부여										
산정공식	$\text{상생발전기금전출금비율} = \frac{\text{2015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text{2015년도 지방소비세 실제 수납액(111-08)의 5\%}} \times 100(\%)$ <p>※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비율이 35%가 되지 않는 경우 페널티 부여</p> <p>※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p> <p>※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그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p>										
측정시점(기간)	2015회계연도 결산 2016년 6월 30일 기준 추가정산액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세시스템(위택스)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준법지표, 책임성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35%가 법정기준임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b>상생발전기금전출금비율</b> (단위: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2015회계연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 (A)</td> <td>2016년 6월 30일까지 추가 정산액 (B)</td> <td>2015회계연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의 5% (C)</td> <td>지표값 (%) {(A+B)/C} × 100</td> </tr> <tr> <td>직접입력 (서울, 인천, 경기)</td> <td>직접입력 (서울, 인천, 경기)</td> <td></td> <td></td> </tr> </table>			2015회계연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 (A)	2016년 6월 30일까지 추가 정산액 (B)	2015회계연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의 5% (C)	지표값 (%) {(A+B)/C} × 100	직접입력 (서울, 인천, 경기)	직접입력 (서울, 인천, 경기)		
2015회계연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 (A)	2016년 6월 30일까지 추가 정산액 (B)	2015회계연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의 5% (C)	지표값 (%) {(A+B)/C} × 100								
직접입력 (서울, 인천, 경기)	직접입력 (서울, 인천, 경기)										
검증자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세출결산서 상의 지방소비세실제수납액 ▶ 부속서류의 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인 ▶ 2016년 6월 30일까지 추가정산액 확인		<b>연락처</b>  <b>작성자 (작성부서)</b>								

27. 재정공시 노력도 <신규>

지표유형	책임성	지표내용	인센티브
개요(정의)	지방재정공시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활동을 평가		
해석 및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인센티브 부여		
평가방법	<b>재정공시 노력도 (15점)</b>		
	평가내용		배점
	1.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 보도자료 배포, 일간지, 리플릿, 공보,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홍보실적		10점
	- 4개 이상		10점
	- 3개		8점
	- 2개		6점
	- 1개		2점
	2.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5점
	- 문서 가공이 가능한 한글, 엑셀 파일 등으로 제공		2점
- 홈페이지 상 재정공시 질의·답변 코너 설치 또는 국민신문고 등 연계		2점	
- 홈페이지 상 용어해설 제공		1점	
※ 현지실사 시 재정공시 평가항목을 점검 ※ 2015년 결산 재정공시 기준			
측정시점(기간)	2015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재정공시 자료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책임성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재정공시의 주민 접근성 향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b>재정공시 노력도</b>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 노력	점수
	직접입력 (공시방법, 수단)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5회계연도 재정공시 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재정공시 노력도 평가항목 관련 서류 준비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28. 재정분석 대응도 &lt;신규&gt;

지표유형	책임성	지표내용	페널티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에 대한 대응 정도를 파악		
해석및특징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자료입력의 신속성·정확성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 이행을 유도하며,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페널티 부여		
평가방법	<b>재정분석 대응도 (-10점)</b>		
	평가내용		배점
	1. 자료입력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5점
	- 준수		0점
	- 미준수		-5점
2. 입력된 자료가 누락, 오류 없이 정확한가?		-5점	
- 예		0점	
- 아니오* *의회경비오류, 직접입력지표 통계누락, 세출결산액 누락, 입력기한 외 수정요청 등		-5점	
※ 현실사 시 자료입력기한 준수여부 및 자료누락, 오류 사항 점검			
측정시점(기간)	2015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재정분석 입력자료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책임성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재정분석 자료입력 기한 준수 및 정확성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b>재정분석 대응도</b>		
	자료입력 기한 준수 여부	입력 자료의 누락, 오류 사항	점수
	직접입력 (준수/ 미준수 기재)	직접입력 (누락, 오류 사항 기재)	
※ 현실사 시 자료 입력사항 점검			
검증자료	2015회계연도 재정분석 데이터 입력 자료		연락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자료입력 기한 준수 여부 및 입력데이터의 누락, 오류 내역 확인		작성자 (작성부서)

## 2. 재정분석 참고지표

1. 지방채무잔액지수
2. 지방채무상환비율
3. 장래세대부담비율
4.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5. 예산집행률
6. 정책사업투자비비율
7.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8.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9. 유동비율
10. 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11. 경상자원비율
12. 총예산대비 자체수입증가율
13. 지방세수입 대비 인건비비율
14. 부채증가액(증감률)
15. 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16. 관리채무부담비율
17. 관리채무상환비율
18. 의무지출비율
19. 자본시설지출비율
20. 지방보조금 절감노력도
21.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

### 1. 지방채무잔액지수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일반재원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저량(stock) 지표																																																																														
해석및특징	지방채무의 절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을 의미																																																																														
산정공식	$\text{지방채무잔액지수} = \frac{\text{지방채무 잔액}}{\text{일반재원 결산액}} \times 100(\%)$ <p>※ 지방채무잔액은 (구)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산정식(12년 한도 산정 까지 적용)에 따른 잔액임                  ※ 일반재원 : 결산서상 세입 결산부문의 실제수납액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                  ⇒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부동산교부세를 모두 포함                  * 재정자주도 작성시 분자에 해당하는 일반재원과 동일한 범위를 포괄                  ※ 지방채무 잔액 : 채무결산보고서 작성기준의 지방채무 범위와 동일                  ⇒ 지방채 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                  ⇒ 시·도의 경우 지역개발채권 발행액도 지방채무의 범위에 포함                  ⇒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도 포함                  ⇒ 지방채무 잔액은 원금기준으로 작성</p>																																																																														
측정시점(기간)	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호 채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지방채무잔액지수 (구분가능한 회계까지만 구분) (단위: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4">2015 지방채무 잔액(A)</th> <th colspan="5">2015 일반재원 결산액(B)</th> <th rowspan="2">지표값 (%) (A/B) × 100</th> </tr> <tr> <th>계 A = (a+b+c)</th> <th>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 (a)</th> <th>채무 부담 행위 (b)</th> <th>보증 채무 이행액 (c)</th> <th>계 B = (e+f+g+h+i)</th> <th>지 방 세 (e)</th> <th>세 외 수 입 (f)</th> <th>지 방 교 부 세 (g)</th> <th>자 치 구 조 정 교 부 금 (h)</th> <th>시 군 조 정 교 부 금 (i)</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td> </tr> <tr> <td>일반회계</td> <td></td> </tr> <tr> <td>기 타 특별회계</td> <td></td> </tr> <tr> <td>공 기 업 특별회계</td> <td></td> </tr> <tr> <td>기 금</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2015 지방채무 잔액(A)				2015 일반재원 결산액(B)					지표값 (%) (A/B) × 100	계 A = (a+b+c)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 (a)	채무 부담 행위 (b)	보증 채무 이행액 (c)	계 B = (e+f+g+h+i)	지 방 세 (e)	세 외 수 입 (f)	지 방 교 부 세 (g)	자 치 구 조 정 교 부 금 (h)	시 군 조 정 교 부 금 (i)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 기 업 특별회계											기 금										
구 분	2015 지방채무 잔액(A)				2015 일반재원 결산액(B)					지표값 (%) (A/B) × 100																																																																					
	계 A = (a+b+c)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 (a)	채무 부담 행위 (b)	보증 채무 이행액 (c)	계 B = (e+f+g+h+i)	지 방 세 (e)	세 외 수 입 (f)	지 방 교 부 세 (g)	자 치 구 조 정 교 부 금 (h)		시 군 조 정 교 부 금 (i)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 기 업 특별회계																																																																															
기 금																																																																															
검증자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채무결산보고서의 채무현황과 일치여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2. 지방채무상환비율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일반재원 대비 과거4년 및 미래4년 간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																																																																																				
해석 및 특징	채무상환에 따른 단기적 재정운영의 안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함																																																																																				
산정공식	$\frac{\text{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text{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times 100(\%)$ <p>                     ◀ 과거4년 : 2012, 2013, 2014, 2015년, 미래4년 : 2016, 2017, 2018, 2019년                      ※ 채무상환액 및 일반재원결산액은 (구)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산정식(14년 한도 산정 까지 적용)에 따른 값임                      ※ 일반재원 : 결산서상 세입 결산부문의 실제수납액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                      →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부동산교부세를 모두 포함                      * 재정자주도 작성시 분자에 해당하는 일반재원과 동일한 범위를 포괄                      ※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은 조기상환액, 차환액, 국·도비 채무상환액 제외                 </p>																																																																																				
측정시점(기간)	2012~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외부통계)	e호조 채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b>지방채무상환비율</b> (단위 : 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3">계 A=(1+d)</th> <th colspan="5">과거4년+미래4년간 지방채무상환액(A)</th> <th colspan="5">과거4년+미래4년간 일반재원결산액(B)</th> <th rowspan="3">지 표 값 (%) (A/B)×100</th> </tr> <tr> <th colspan="2">과거4년</th> <th rowspan="2">국비지원상환액(b)</th> <th rowspan="2">시비지원상환액(c)</th> <th rowspan="2">미래4년 지방채무상환액(d)</th> <th colspan="5">과거 4년</th> </tr> <tr> <th>채무상환액(1)</th> <th>조기상환액(2)</th> <th>지방세(e)</th> <th>세외수입(f)</th> <th>지방교부세(g)</th> <th>자치구조정교부금(h)</th> <th>시군조정교부금(i)</th> <th>미래4년 일반재원결산액(j)</th> </tr> </thead> <tbody> <tr> <td></td> <td>가</td> <td>가</td> <td>가</td> <td>*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한</td> <td>한</td> <td>한</td> <td>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정</td> <td>정</td> <td>정</td> <td>정</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우</td> <td>우</td> <td>우</td> <td>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계 A=(1+d)	과거4년+미래4년간 지방채무상환액(A)					과거4년+미래4년간 일반재원결산액(B)					지 표 값 (%) (A/B)×100	과거4년		국비지원상환액(b)	시비지원상환액(c)	미래4년 지방채무상환액(d)	과거 4년					채무상환액(1)	조기상환액(2)	지방세(e)	세외수입(f)	지방교부세(g)	자치구조정교부금(h)	시군조정교부금(i)	미래4년 일반재원결산액(j)		가	가	가	*가										한	한	한	한										정	정	정	정										우	우	우	우								
계 A=(1+d)	과거4년+미래4년간 지방채무상환액(A)					과거4년+미래4년간 일반재원결산액(B)					지 표 값 (%) (A/B)×100																																																																										
	과거4년		국비지원상환액(b)		시비지원상환액(c)	미래4년 지방채무상환액(d)	과거 4년																																																																														
	채무상환액(1)	조기상환액(2)		지방세(e)			세외수입(f)	지방교부세(g)	자치구조정교부금(h)	시군조정교부금(i)		미래4년 일반재원결산액(j)																																																																									
	가	가	가	*가																																																																																	
	한	한	한	한																																																																																	
	정	정	정	정																																																																																	
	우	우	우	우																																																																																	
검증자료	2012~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내용과 일치 여부		연락처 작성일자(작성부서)																																																																																		

### 3. 장래세대부담비율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현재 형성된 사회자본과 후세대의 채무부담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지표																																																																																				
해석및특징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합계의 비율을 측정하는 재정 건전성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text{장래세대부담비율} = \frac{\text{부채합계}}{\text{유형고정자산}} \times 100(\%)$ <p>※ 유형고정자산 : 일반유형자산 + 주민편의시설 + 사회기반시설                      ※ 부채합계 : 복식부기 재정상태표 상의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                      ※ 기타비유동부채는 통계량만 파악</p>																																																																																				
측정시점(기간)	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복식부기 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b>장래세대부담비율</b> (단위: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4">부채총액(A)</th> <th colspan="4">유형고정자산(B)</th> <th rowspan="2">지표값 (A/B)× 100</th> </tr> <tr> <th>계 A= a+b</th> <th>유동 부채 (a)</th> <th>장기 차입 부채 (b)</th> <th>기타 비유동 부채</th> <th>계 B= c+d+e</th> <th>일반 유형 자산 (c)</th> <th>주민 편의 시설 (d)</th> <th>사회 기반 시설 (e)</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회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 타 특별회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공기업 특별회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금회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내부거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기타비유동부채는 통계관리 목적상 자료입력 요망</p>								구분	부채총액(A)				유형고정자산(B)				지표값 (A/B)× 100	계 A= a+b	유동 부채 (a)	장기 차입 부채 (b)	기타 비유동 부채	계 B= c+d+e	일반 유형 자산 (c)	주민 편의 시설 (d)	사회 기반 시설 (e)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구분	부채총액(A)				유형고정자산(B)					지표값 (A/B)× 100																																																																											
	계 A= a+b	유동 부채 (a)	장기 차입 부채 (b)	기타 비유동 부채	계 B= c+d+e	일반 유형 자산 (c)	주민 편의 시설 (d)	사회 기반 시설 (e)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검증자료	2015회계연도 복식부기 결산서(재정상태표)			연락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재정상태표의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확인			작성자 (작성부서)																																																																																	

#### 4.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지표분류	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사업비의 당해연도 사업예산 반영 비율					
해석및특징	재정운영의 거시적 계획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frac{\text{최종세출예산서의 정책사업비}}{\text{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 \times 100(\%)$ <p>※ 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14년도에 수립·확정한 중기지방재정계획(2015~2019)의 2015년 사업예산총액(예비비포함)</p> <p>※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없이 긴급시설 복구비를 집행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정</p>					
측정시점(기간)	2015회계연도 최종예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직접입력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100% 달성 및 근접할수록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출서식	<b>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b>					
	(단위 : 원)					
	최종세출예산서의 정책사업비(A)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B)		
	계 A=(a-b)	정책사업비 (a)	천재,재해 (b)	계 B=(c+d)	정책사업비 (c)	예비비 (d)
	일반회계	직접입력	직접입력	일반회계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타특별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타특별	직접입력	직접입력	
공기업	직접입력	직접입력	공기업	직접입력	직접입력	
<p>※ (b)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없이 긴급시설 복구비를 집행한 경우 작성</p> <p>※ 공기업특별회계 정책사업비 = 총예산-총액인건비-(201-01~02, 202-01~02, 720, 730, 220)</p>						
검증자료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연락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2015~2019)		작성자 (작성부서)			

5. 예산집행률

지표분류	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자치단체의 당해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집행된 예산의 비율			
해석및특징	예산집행률이 높을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text{예산집행률} = \frac{\text{세출결산액}}{\text{예산현액}} \times 100(\%)$ <p>※ 세출결산액 : 세출지출액</p>			
측정시점(기간)	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목표 (바람직한 상태)	100% 달성 및 근접할수록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출서식	<b>예산집행률</b> (단위 : 원)			
	회계명	회계수	세출결산액 (A)	예산현액 (B)
	총계			비율(% (A/B)×100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검증자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연락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세출결산서 상 예산현액, 세출결산액 확인		작성자 (작성부서)	

## 6. 정책사업투자비비율

지표분류	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정책사업비에서 시설비·자산취득비 등 투자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해석및특징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text{정책사업투자비비율} = \frac{\text{투자지출액}}{\text{정책사업비 결산액}} \times 100 \%$ <p>* 투자지출액: 자본지출(400) + 용자및출자(500) *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제외</p>												
측정시점(기간)	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출서식	<b>정책사업투자비비율 (회계구분 추가)</b> (단위 : 원)												
	회계 구분	투자지출액(A)									정책 사업 비 결산 액(B)	지표 값( %) (A/B) ×1 00	
		소계 (A=a+ b-c)	자본지출(a) (400)			용자및출자(b) (500)			공사공단 자본전출금(c) (404)				
			계	행정 운영 비	재무 활동	정책 사업	계	행정 운영 비	재무 활동	정책 사업			계
일반													
기타 특별													
공기 업													
	※ 투자지출액 : 자본지출(400)+용자및출자(500) ※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제외 ※ 정책사업비 : 결산서 부속서류의 사업구분별 정책사업비												
검증자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연락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자본지출(400), 용자및출자(500),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정책사업비 확인		작성자 (작성부서)										

## 7.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지표분류	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투융자심사를 받아 추진되는 사업 중 당초 예산편성 계획액 대비 실제 예산편성된 금액의 비율		
해석및특징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산정공식	<p>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제외) =</p> $\left\{ \frac{\sum(2015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016년 실제 예산편성액)}{\sum(2015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016년 예산편성 계획액)} \times 70(\%) \right\} + \left\{ \frac{\sum(2015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016년 실제 예산편성건수)}{\sum(2015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016년 예산편성 계획건수)} \times 30(\%) \right\}$ <p>* 투융자심사 : 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사업에 한함(부적정, 재검토, 반려 제외) 단, 재심사사업은 제외 * 광역 : 중앙심사, 기초 : 중앙, 시도심사분을 작성 * 민자사업비 부분 제외 * 2015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2016.9.25일까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만 인정</p> <p>2.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포함) =</p> $\left\{ \frac{\sum(2015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016년 실제 예산편성액)}{\sum(2015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016년 예산편성 계획액)} \times 70(\%) \right\} + \left\{ \frac{\sum(2015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016년 실제 예산편성건수)}{\sum(2015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016년 예산편성 계획건수)} \times 30(\%) \right\}$ <p>* 투융자심사 : 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사업에 한함(부적정, 재검토, 반려 제외) 단, 재심사사업은 제외 * 의뢰심사(중앙심사, 시도심사)와 자체심사 모두 포함 * 민자사업비 부분 제외 * 2015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2016.9.25일까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만 인정</p>		
측정시점(기간)	2016회계연도 예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직접입력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100% 달성 및 근접할수록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b>제출서식</b>	<b>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제외)</b> (단위: 원)						
	계획대비 예산편성액 비율(A)			계획대비 예산편성 건수 비율(B)			지표값(% (A*0.7)+ (B*0.3)
	편성액 비율 (A=a/b ×100)	실제 예산 편성액(a)	투융자 심사시 예산편성계 획(b)	건수비율 (B=c/d ×100)	실제 예산편성건 수(c)	투융자 심사시 예산편성계 획건수 (d)	
		<b>직접입력</b>	<b>직접입력</b>		<b>직접입력</b>	<b>직접입력</b>	
<b>제출서식</b>	<b>2.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포함)</b> (단위: 원)						
	계획대비 예산편성액 비율(A)			계획대비 예산편성 건수 비율(B)			지표값(% (A*0.7)+ (B*0.3)
	편성액 비율 (A=a/b ×100)	실제 예산 편성액(a)	투융자 심사시 예산편성계 획(b)	건수비율 (B=c/d ×100)	실제 예산편성건 수(c)	투융자 심사시 예산편성계 획건수 (d)	
		<b>직접입력</b>	<b>직접입력</b>		<b>직접입력</b>	<b>직접입력</b>	
<b>검증자료</b>	해당년도 세입세출예산서, 투융자심사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투융자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전통보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2015년 투·융자심사 결과(중앙·시·도심사)문서 ▶ 2015년 투융자심사의뢰서 ▶ 2016년 예산편성결과(예산서 사본) ▶ 광역 시도에서는 투융자심사 사업에 대한 연도별 재원투자 계획을 참고 하여 시군구별 입력자료 대사					<b>연락처</b>	
						<b>작성자</b>	

### 8.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지표분류	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부서관리비용의 적정비율 및 연도간 증감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해석 및 특징	행정운영에 있어서 인력 및 부서운영을 위한 비용이 낮을수록 경비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1. 행정운영경비비율 = $\frac{\text{행정운영경비 결산액}}{\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 $\frac{(\text{2015년도 행정운영경비결산액} - \text{2014년도 행정운영경비결산액})}{\text{2014년도 행정운영경비 결산액}} \times 100$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의 합계																						
측정시점(기간)	2014~2015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1. 행정운영경비비율 (단위: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3">행정운영경비 결산액(A)</th> <th rowspan="2">세출결산액 (B)</th> <th rowspan="2">지표값(%) (A/B)×100</th> </tr> <tr> <th>계 (A=a+b)</th> <th>인력운영비 (a)</th> <th>기본경비 (b)</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행정운영경비 결산액(A)			세출결산액 (B)	지표값(%) (A/B)×100	계 (A=a+b)	인력운영비 (a)	기본경비 (b)												
	행정운영경비 결산액(A)			세출결산액 (B)	지표값(%) (A/B)×100																		
계 (A=a+b)	인력운영비 (a)	기본경비 (b)																					
	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단위: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3">2015 회계연도 행정운영경비결산액(A)</th> <th colspan="3">2014 회계연도 행정운영경비결산액(B)</th> <th rowspan="2">지표값(%) {(A-B)/B} ×100</th> </tr> <tr> <th>계 (A=a+b)</th> <th>기본경비 (a)</th> <th>인력운영비(b)</th> <th>계 (B=c+d)</th> <th>기본경비 (c)</th> <th>인력운영비 (d)</th> </tr> </thead> <tbody> <tr> <td> </td> </tr> </tbody> </table>			2015 회계연도 행정운영경비결산액(A)			2014 회계연도 행정운영경비결산액(B)			지표값(%) {(A-B)/B} ×100	계 (A=a+b)	기본경비 (a)	인력운영비(b)	계 (B=c+d)	기본경비 (c)	인력운영비 (d)							
2015 회계연도 행정운영경비결산액(A)			2014 회계연도 행정운영경비결산액(B)			지표값(%) {(A-B)/B} ×100																	
계 (A=a+b)	기본경비 (a)	인력운영비(b)	계 (B=c+d)	기본경비 (c)	인력운영비 (d)																		
검증자료	2014~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사업예산 결산서 상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 조직 및 정·현원 현황표 ▶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기준지침 및 관련자료																						

### 9. 유동비율

지표분류	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복식부기 재정상태표의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								
해석 및 특징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지표								
산정공식	$\text{유동비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 결산서 중 재정상태표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측정시점(기간)	2015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복식부기 결산서 (재정상태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자치단체 학습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유동비율 (단위 :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유동자산(A)</th> <th>유동부채(B)</th> <th>지표값(%) (A/B) × 100</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유동자산(A)	유동부채(B)	지표값(%) (A/B) × 100			
유동자산(A)	유동부채(B)	지표값(%) (A/B) × 100							
검증자료	2015 회계연도 결산서(재정상태표)		연락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재정상태표의 유동자산, 유동부채 항목 확인		작성자 (작성부서)						

10. 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지표분류	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이 점하는 비중 및 증감상황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고정순자산은 지역사회 기반시설 등 고정자본 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판단할 수 있음		
산정공식	1. 고정순자산비율 = $\frac{\text{고정순자산}}{\text{순자산 총계}} \times 100(\%)$ 2. 고정순자산증감률 = $\frac{2015\text{년도 고정순자산} - 2014\text{년도 고정순자산}}{2014\text{년도 고정순자산}} \times 100(\%)$ ※ 2015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고정순자산 ※ 2014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고정순자산		
측정시점(기간)	2014~2015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복식부기 결산서 (재정상태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1. 고정순자산비율 (단위 : 원)		
	2015년 고정순자산(A)	2015년 순자산 총계(B)	지표값(%) (A/B) × 100
	2. 고정순자산증감률 (단위 : 원)		
	2015년 고정순자산(A)	2014년 고정순자산(B)	지표값(%) {(A-B)/B} × 100
※ 2015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고정순자산 ※ 2014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고정순자산 ▶ 고정순자산증감률			
		연도	고정순자산 증감률
		2015년	
		2014년	
검증자료	복식부기 결산서 중 재정상태표		연락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복식부기 재정상태표 상의 2014년과 2015년의 고정순자산 확인		작성자 (작성부서)

### 11. 경상재원비율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세입결산액에 대한 경상재원(일반재원-경상비용)의 비율																																															
해석 및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상적 재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며,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 여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text{경상재원비율} = \frac{\text{경상재원(경상일반재원-경상비용)}}{\text{세입결산액}} \times 100(\%)$ <p>※ 경상일반재원:지방세(지방교육세제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기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 경상비용:인건비+운영비+자치기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p>																																															
측정시점(기간)	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 복식부기 재정운영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을수록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출서식	<p style="text-align: center;"><b>경상재원비율</b>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경상재원(A)</th> <th colspan="4">일반재원(a)</th> <th colspan="4">경상비용(b)</th> <th rowspan="2">세입결산액(B)</th> <th rowspan="2">지표값(A/B) × 100</th> </tr> <tr> <th>계</th> <th>지방세</th> <th>경상세외수입</th> <th>지방교부세</th> <th>계</th> <th>인건비</th> <th>운영비</th> <th>자치기구조정교부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A= a-b</td> <td>a=</td> <td>①</td> <td>②</td> <td>③</td> <td>b=</td> <td>⑥</td> <td>⑦</td> <td>⑧(광역)</td> <td rowspan="3"></td> <td rowspan="3"></td> </tr> <tr> <td>①+②+③+④+⑤</td> <td>자치기구조정교부금</td> <td colspan="2">시군조정교부금</td> <td>⑥+⑦+⑧+⑨+⑩</td> <td>시군조정교부금</td> <td colspan="2">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td> </tr> <tr> <td>(4)기초</td> <td colspan="2">(5)기초</td> <td>⑩</td> <td>⑨(광역)</td> <td colspan="2">⑩(광역)</td> </tr> </tbody> </table>			경상재원(A)	일반재원(a)				경상비용(b)				세입결산액(B)	지표값(A/B) × 100	계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계	인건비	운영비	자치기구조정교부금	A= a-b	a=	①	②	③	b=	⑥	⑦	⑧(광역)			①+②+③+④+⑤	자치기구조정교부금	시군조정교부금		⑥+⑦+⑧+⑨+⑩	시군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4)기초	(5)기초		⑩	⑨(광역)	⑩(광역)	
경상재원(A)	일반재원(a)				경상비용(b)				세입결산액(B)	지표값(A/B) × 100																																						
	계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계	인건비	운영비	자치기구조정교부금																																								
A= a-b	a=	①	②	③	b=	⑥	⑦	⑧(광역)																																								
	①+②+③+④+⑤	자치기구조정교부금	시군조정교부금		⑥+⑦+⑧+⑨+⑩	시군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4)기초	(5)기초		⑩	⑨(광역)	⑩(광역)																																										
검증자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복식부기 재정운영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세출결산서의 일반재원 및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의 경상비용 내역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12. 총예산대비 자체수입증가율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총예산 증가액에 대한 자체수입 증가액의 비율로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및특징	총예산 증가에 비해 자체수입 증가 정도를 측정하는 재정 건전성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함																													
산정공식	<p>총예산대비 자체수입증가율</p> $= \frac{(2015년\ 자체수입액 - 2014년\ 자체수입액)}{(2015년\ 총예산액 - 2014년\ 총예산액)} \times 100(\%)$ <p>※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p>																													
측정시점 (기간)	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세입세출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p><b>총예산 대비 자체수입 증가율</b>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자체수입 증가액(A)</th> <th colspan="3">총예산 증가액(B)</th> <th rowspan="2">지표값 (A/B) ×100</th> </tr> <tr> <th>계 A=a-b</th> <th>2015년 자체수입 (a)</th> <th>2014년 자체수입 (b)</th> <th>계 B=c-d</th> <th>2015년 총예산 (c)</th> <th>2014년 총예산 (d)</th> </tr> </thead> <tbody> <tr> <td>일반회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특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자체수입 증가액(A)			총예산 증가액(B)			지표값 (A/B) ×100	계 A=a-b	2015년 자체수입 (a)	2014년 자체수입 (b)	계 B=c-d	2015년 총예산 (c)	2014년 총예산 (d)	일반회계							기타특별						
자체수입 증가액(A)			총예산 증가액(B)			지표값 (A/B) ×100																								
계 A=a-b	2015년 자체수입 (a)	2014년 자체수입 (b)	계 B=c-d	2015년 총예산 (c)	2014년 총예산 (d)																									
일반회계																														
기타특별																														
검증자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2014, 2015년 자체수입액(지방세, 세외수입) 확인 ▶ 2014, 2015년 총예산액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13. 지방세수입대비 인건비비율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지방세수입액 대비 인건비의 비율로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및특징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총당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재정 건전성 지표로 이 지표 비율이 낮을수록 지방세수입의 인건비 총당능력이 높아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text{지방세수입대비 인건비비율} = \frac{\text{인건비 결산액}}{\text{지방세수입액}} \times 100(\%)$ ※ 지방세수입(100) 세입결산서 ※ 인건비(100) 세출결산서			
측정시점(기간)	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세입세출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지방세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단위 : 원)			
	인건비 결산액(A)	지방세수입액(B)	지표값(%) (A/B)×100	
검증자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연락처	
	▶ 인건비(100) 결산액 확인 ▶ 지방세 수입액(100) 확인		작성자 (작성부서)	

14. 부채증가액(증감률)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부채총액의 증가액과 증감률로 부채 관리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및특징	부채관리 능력을 측정하는 재정 건전성 지표로 그 증가액이나 비율이 낮을수록 부채관리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부채증가액 = 2015년도 부채총액 - 2014년도 부채총액 $\text{부채증감률} = \frac{\text{부채증가액}(2015\text{년도 부채총액} - 2014\text{년도 부채총액})}{2014\text{년도 부채총액}} \times 100(\%)$ ※ 부채총액 : 복식부기 재정상태표 상의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기타비유동부채										
측정시점(기간)	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복식부기 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b>부채증가(액, 율)</b> (단위:원)										
	구분	2015년도 부채총액(A)				2014년도 부채총액(B)				지표값	
		계 (A)	유동 부채	장기 차입 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계 (B)	유동 부채	장기 차입 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증가규모 (A-B)	증가율 ((A-B)/B)×100
	합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											
검증자료	2015회계연도 복식부기 결산서(재정상태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부채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5. 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해당연도 세입예산(당초) 대비 채무지급보증 총액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및특징	세입예산(혹은 결산) 대비 채무지급보증 총액을 측정하는 재정 건전성 지표로 그 값(비율)이 낮을수록 향후 재정위험이 낮아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text{세입예산대비채무보증액비율} = \frac{\text{채무보증 총액}}{\text{세입예산(당초)}} \times 100(\%)$ <p>※ 회계범위 : 일반, 특별(기타, 공기업), 기금                      ※ 보증범위 : 지방재정법상 지급보증 및 예산외 부담 포함</p>				
측정시점(기간)	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 조 복식부기 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b>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b>				
	(단위:원)				
	우발채무총액(A=a+b)	보증채무액(a)	예산외의무부담액(부지매입확약/토지리턴제/기타)(b)	세입예산(B)	2015년도 지표값(A/B*100)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현황실태조사 자료 입력				
검증자료	2015회계연도 복식부기 결산서 및 별도 파악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결산서 확인 ▶ 지급보증, 예산외 부담 등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6. 관리채무부담비율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경상일반재원 대비 지방채무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량(stock) 지표												
해석및특징	지방채무의 절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을 의미												
산정공식	$\text{관리채무부담비율} = \frac{\text{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text{경상일반재원}} \times 100(\%)$ <p>※ 2015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산정방식과 동일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조정교부금+시군조경교부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 지방채무 잔액                      → 지방채 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                      → 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기금이 그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상환하는 금액은 제외                      → 지방채무 잔액은 원금기준으로 작성                      ※ BTL 지급액                      → 준공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p>												
측정시점(기간)	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 조 채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관리채무부담비율 (단위:원)												
	구 분	2015 지방채무 잔액(A)				2015 경상일반재원 결산액(B)				지표값 (%) (A/B) × 100			
		계 A = (a)+b +c+d +e)	지방 채 증 권 a)	차 입 금 b)	채 무 부 담 행 위 c)	보 증 채 무 이 행 액 d)	BTL 지 급 액 e)	계 B= (f)+g+ (h)+i +j)	지 방 세 f)		경 상 세 외 수 입 g)	지 방 교 부 세 h)	자 치 구 조 정 교 부 금 i)
	합 계												
	일 반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기 금													
검증자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연락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채무결산보고서의 채무현황과 일치여부		작성자 (작성부서)										

17. 관리채무상환비율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경상일반재원 대비 미래4년의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		
해석 및 특징	채무상환에 따른 단기적 재정운영의 안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함		
산정공식	$\frac{\text{관리채무상환비율} = \frac{\text{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text{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times 100(\%)$ <p>                     ※ 미래 4년 : 2016, 2017, 2018, 2019년                      ※ 2015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산정식과 동일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지급액 총액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은 조기상환액, 차환액, 국·도비 채무상환액 제외                      ※ 평균 관리채무상환액 및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계산식                      ⇒ 미래4년 상환할 평균채무액 : 미래 4년 관리채무상환액* / 4년                      * 기준일 현재 지방채무 잔액을 기준으로 미래 4년 관리채무상환액 산정, 이자액은 과거 4년 평균 이자액을 미래 4년간 관리채무상환액에 합산                      ⇒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 미래 4년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 4년                      * 직전연도의 경상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 경상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                 </p>		
측정시점(기간)	2016~2019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채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b>관리채무상환비율</b> (단위 : 원)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A)		미래 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B)
	미래 4년		
	계 A=(1)	순지방비(a=1+2+3) 국비 자원 상환 (b) 시도비 자원 상환 (c)	계 B=e+f+g+h+i
	채무 상환액 (1)	조기 상환액 (2) 차환액 (3)	지방 세 (e) 경상 세외 수입 (f) 지방 교 부 세 (g) 자치 구 조 정 교 부 금 (h) 시군 조 정 교 부 금 (i)
		*기초단 체 만 해당	
검증자료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내용과 일치 여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8.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지표분류	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세출결산 대비 의무지출의 비율로 재정운영의 경직도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출결산액에 대한 의무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1. 의무지출비율 = $\frac{\text{의무지출}}{\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2. 의무지출증감률 = $\frac{(\text{2015년도 의무지출 결산액} - \text{2014년도 의무지출 결산액})}{\text{2014년도 의무지출 결산액}} \times 100$ ※ 의무지출: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국도비사업비(지방비부담 포함), 의회비(205), 채무상환비(차입금원금상환(601)+차입금이자상환(311)), 법정경비(자치구조정교부금(308-03)(광역), 시군조정교부금(308-04)(광역), 상생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전출금)																																							
측정시점 (기간)	2014~2015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1. 의무지출비율 (단위: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계 (A=a+b+c+d+e+f+g+h+i+j)</th> <th colspan="5">의무지출 결산액(A)</th> <th rowspan="2">세출결산액(B)</th> <th rowspan="2">지표값 (%) (A/B) × 100</th> </tr> <tr> <th>인력운영비(a)</th> <th>기본경비(b)</th> <th>국도비사업비(c)</th> <th>의회비(d)</th> <th>차입금원금상환(e)</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직접입력</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차입금이자상환(f)</td> <td>시군조정교부금(광역)(g)</td> <td>자치구조정교부금(광역)(h)</td> <td>상생발전기금(광역)(i)</td> <td>재난관리기금전출금(j)</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직접입력</td> <td>직접입력</td> <td></td> <td></td> </tr> </tbody> </table>			계 (A=a+b+c+d+e+f+g+h+i+j)	의무지출 결산액(A)					세출결산액(B)	지표값 (%) (A/B) × 100	인력운영비(a)	기본경비(b)	국도비사업비(c)	의회비(d)	차입금원금상환(e)				직접입력						차입금이자상환(f)	시군조정교부금(광역)(g)	자치구조정교부금(광역)(h)	상생발전기금(광역)(i)	재난관리기금전출금(j)							직접입력	직접입력		
계 (A=a+b+c+d+e+f+g+h+i+j)	의무지출 결산액(A)					세출결산액(B)	지표값 (%) (A/B) × 100																																	
	인력운영비(a)	기본경비(b)	국도비사업비(c)	의회비(d)	차입금원금상환(e)																																			
			직접입력																																					
	차입금이자상환(f)	시군조정교부금(광역)(g)	자치구조정교부금(광역)(h)	상생발전기금(광역)(i)	재난관리기금전출금(j)																																			
				직접입력	직접입력																																			

		2. 의무지출증감률 (단위:원)									
		2015 회계연도 의무지출 결산액(A)					2014 회계연도 의무지출 결산액(B)				
제출서식	인력 운영 비 (a)	기본 경비 (b)	국도 비사 업비 (c)	의회 비 (d)	차입 금상 환(e)	인력 운영 비 (k)	기본 경비 (l)	국도비 사업비 (m)	의회비 (n)	차입금 원금상 환(o)	
	계 (A=a+b+c+d+e+f+g+h+i+j)		<b>직접 입력</b>			계 (B=k+l+m+n+o+p+q+r+s+t)		<b>직접 입력</b>			
	차입 금이 자상 환(f)	시군 조정 교부 금(광 역) (g)	자치 구조 정교 부금(광 역) (h)	상생 발전 기금(광 역) (i)	재난 관리 기금 전출 금(j)	차입 금이 자상 환(p)	시군 조정 교부 금(광 역) (q)	자치구 조정 교부금 (광역) (r)	상생발 전기금(광 역) (s)	재난관 리기금 전출금 (t)	
				<b>직접 입력</b>	<b>직접 입력</b>				<b>직접 입력</b>	<b>직접 입력</b>	
검증자료	2014~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연락처				
	▶ 세입세출결산서 상의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국도비사업비, 의회비, 채무상환비(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금이자상환), 시군조정교부금(광역), 자치구조정교부금(광역), 상생발전기금(광역),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인						작성자 (작성부서)				

19.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지표분류	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정책사업비 대비 자본시설지출의 비율로 사회기반시설 형성을 통한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정책사업비에 대한 시설비지출액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1. 자본시설지출비율 = $\frac{\text{시설비지출액}}{\text{정책사업비}} \times 100(\%)$ 2.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 $\frac{(\text{2015년도 시설비지출액} - \text{2014년도 시설비지출액})}{\text{2014년도 시설비지출액}} \times 100$ ※ 시설비지출액 : 시설비 및 부대비(401)		
측정시점(기간)	2014~2015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1. 자본시설지출비율 (단위 : 원)		
	시설비지출액(A)	정책사업비(B)	지표값(%) (A/B)×100
	2.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단위 : 원)		
	2015년도 시설비지출액(A)	2014년도 시설비지출액(B)	지표값(%) {(A-B)/B}×100
검증자료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정책사업비 확인 ▶ 시설비및부대비(401)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20. 지방보조금 절감노력도

지표유형	재정운영노력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경비의 절감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및특징	총 예산 중 지방보조금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도 = $\{1 - (2015년도 지방보조금비율 / 2014년도 지방보조금비율)\}$ ※ 지방보조금비율 =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지방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2014년 과목 : 민간경상보조(307-2), 사회단체보조(307-03), 민간행사보조(307-04), 사회복지보조 (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측정시점(기간)	2014~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b>지방보조금 절감 노력도</b> (단위 : 원)									
	2015년 지방보조금 결산액(a)							세출 결산액 (b)	A= (a/b) ×100	지표값 1- (A/B)
	소계 (a)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307-10 (사회복 지시설 법정운영 비보조)	307-11 (사회복 지사업 보조)	402-01 (민간자 본사업 보조)			
	2014년 지방보조금 결산액(c)							세출 결산액 (d)	B=(c/d) ×100	
소계 (c)	307-02 (민간 경상 보조)	307-03 (사회 단체 보조)	307-04 (민간 행사 보조)	307-10 (사회 복지 보조)	402-01 (민간 자본 보조)	-				
검증자료	2014~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연락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 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 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금액 확인			작성자 (작성부서)						

21.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

지표유형	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세입결산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을 측정하는 저장(stock) 지표																																																														
해석및특징	세입결산액 대비 현금지급의무가 있는 금융부채의 비중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을 의미																																																														
산정공식	$\text{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 = \frac{\text{금융부채*}}{\text{세입결산액}} \times 100(\%)$ <p>* 금융부채 : 지방채발행잔액 + 미지급금 + 채무부담행위(발생) + 보증채무부담(확정액)</p> <p>※ 지방채발행잔액 : 지방채증권+차입금          미지급금 : BTL지급액 및 재정지원금 미지급금 등          → 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기금이 그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상환하는 금액은 제외          → 지방채발행잔액은 원금기준으로 작성</p> <p>※ BTL 지급액          → 준공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p> <p>※ BTL 지급액 및 재정지원금 미지급금 등은 행정자치부 통합부채 합동작성 자료 활용</p>																																																														
측정시점(기간)	2015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채무결산보고서 복식부기 재정상태표 통합부채현황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p><b>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b> (단위: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6">2015 금융부채(A)</th> <th rowspan="2">2015 세입 결산액 (B)</th> <th rowspan="2">지표값 (%) (A/B)× 100</th> </tr> <tr> <th>계(A = a+b+c +d+e)</th> <th>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a)</th> <th>BTL 지급액 (b)</th> <th>재정지원 금미지급 금등 (c)</th> <th>채무부 담행위 (발생) (d)</th> <th>보증채 무부담 (확정 액)(e)</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회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 타 특별회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공 기 업 특별회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 금</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BTL 지급액 및 재정지원금 미지급금 등은 행정자치부 통합부채 합동작성 자료 활용</p>			구 분	2015 금융부채(A)						2015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 (A/B)× 100	계(A = a+b+c +d+e)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a)	BTL 지급액 (b)	재정지원 금미지급 금등 (c)	채무부 담행위 (발생) (d)	보증채 무부담 (확정 액)(e)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 기 업 특별회계									기 금								
구 분	2015 금융부채(A)						2015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 (A/B)× 100																																																							
	계(A = a+b+c +d+e)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a)	BTL 지급액 (b)	재정지원 금미지급 금등 (c)	채무부 담행위 (발생) (d)	보증채 무부담 (확정 액)(e)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 기 업 특별회계																																																															
기 금																																																															
검증자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복식부기 재정상태표, 통합부채현황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금융부채 항목 금액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